

# 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 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 연구진

---

**김정숙**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재용**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금창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재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연구 요약

##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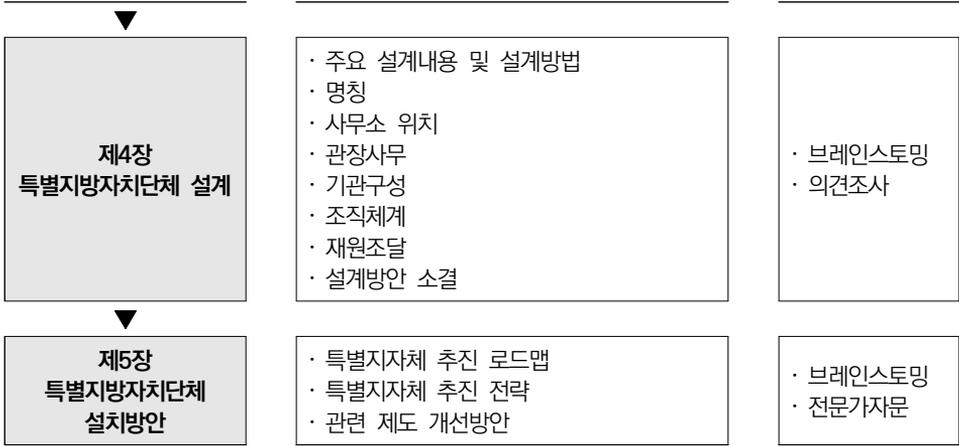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대구·경북 지역의 사회환경을 고려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광역사무를 도출함
-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등 조직규모 및 조직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을 구체화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방식을 마련하고 관련된 제도를 개선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방식과 지방의회를 운영하는 방식을 정하고, 이에 맞는 제도를 마련함

### □ 연구의 흐름 및 방법

- 이 연구의 주요 흐름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그림 1〉 연구 흐름 및 방법

순서	연구내용	방법
제1장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li> <li>· 연구의 범위 및 방법</li> </ul>	-
제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지자체 개념 및 목적</li> <li>· 특별지자체 필요성</li> <li>· 특별지자체 추진현황</li> <li>·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적용가능성</li> </ul>	· 문헌연구
제3장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사무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사무 발굴 논거 및 방식</li> <li>· 1단계 분석을 통한 광역사무 발굴</li> <li>· 2단계 분석을 통한 광역사무 타당성 분석</li> <li>· 3단계 분석을 통한 세부사무 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레인스토밍</li> <li>· 전문가자문</li> <li>· 실태조사</li> </ul>



## 2. 특별지방자치단체 고찰

### □ 특별지방자치단체 개념 및 필요성

- 특별지방자치단체(special purpose local autonomous entities)는 “자치행정상의 정책적 관점에서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거나 특수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또는 행정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자치단체”임(정세욱, 2005: 443)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 것으로, 1) 일반지방자치단체의 능력 보완, 2) 광역적인 행정수요 대응, 3) 일반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및 갈등 해결의 세 가지 이유에서 설치·운영됨(금창호 외., 2005; 금창호, 2018)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김길수, 2008: 437; 최용환, 2019: 55-65; 강인호, 2019: 24-25; 조성호 외., 2020; 재인용)
  -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권한과 업무 범위를 넘어서 광역성을 통한 행정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킴(조성호 외., 2020)

- 둘째,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구성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사무·조직·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조성호 외., 2020)
  - 셋째, 저출산·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지역산업·경제 침체 등 지역의 난해한 정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을 마련함
  - 넷째,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체계 형태 중 하나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을 법률적 근거로 하며, 그 목적,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는 기본법 성격으로서 규약을 두고, 그 안에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 또한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는 법인격이며, 의회와 집행기관의 기관대립형 형태를 지님

####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적용 가능성

- 대구광역시 1981년 대구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경북으로부터 분리되었으나, 과거 오랜 기간동안 하나의 경제·사회·역사·문화권을 형성해 오<sup>1)</sup>
  - 과거 행정분리 시기에는 경제성장기에 힘입어 대구의 법적 지위를 상승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행정분리 이후 뉴노멀 시기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면서 비수도권 지역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대구·경북의 광역적 행정수요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짐
- 지난 1972년 시작된 국토종합계획은 5차에 이른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권역, 다핵, 광역, 광역경제권 등 권역별 개발계획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균형발전계획에서 생활권 및 권역별 지

1)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2021). “대구경북 행정통합 필요성 및 비전”

역발전계획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음

- 그러나 이제까지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집행하는 행정체계가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지역개발계획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따라, 최근 들어 비수도권 위기 심화를 타개하기 위해 광역행정체제를 구축하여 지역개발계획을 수행하는 흐름이 나타남
- 대구와 경북은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를 확보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하였고,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적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리됨
- 행정통합의 사전단계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상정하고, 광역사무 도출 시 현재의 협력 필요성, 광역추진의 효과성, 해당 사무의 가시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발굴할 필요가 있음

### 3.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사무 발굴

#### □ 광역사무 발굴 절차

-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사무 발굴 절차는 아래와 같음

〈그림 2〉 광역사무 발굴 방식 도식화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기능 및 사무 군 발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기능 및 사무 군 타당성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사무 도출</li> </ul>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역적 방식</li> <li>• 귀납적 방식</li> <li>• 사례분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 연구진 검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사무실태 조사</li> </ul>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교통, 광역관광 등 협력사무</li> <li>• 선행연구 검토</li> <li>• 국내외 사례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성: 상호협력, 분쟁조정</li> <li>• 효율성: 규모경제, 범위경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협력사무: 예시) 광역교통, 광역관광 등</li> </ul>

## □ 1단계 분석을 통한 광역사무 발굴

-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사무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규모의 경제, 상호협력, 분쟁조정 등 세 가지를 사무발굴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광역사무 대상군은 17개로 요약됨
  - 이는 경찰, 공유수면, 관광, 관세, 교육, 교통, 기능배분, 보건위생, 소방, 연구개발, 의료, 일반행정, 지역개발, 지역경제, 행정구역, 혐오시설, 환경임
-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은 7대 분야,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은 6대 분야 광역사무를 수행함
  -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이 관장하는 사무는 광역방재, 광역관광 및 문화진흥, 광역산업진흥, 광역의료, 광역환경보전, 자격시험/면허, 광역직원연수 등을 수행함
  -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의 광역사무는 지역개발, 지역공원 및 녹지개발, 대중교통, 폐기물처리,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관광 등임(홍재우 외., 2021)
- 이제까지 선행연구와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관장사무로 논의된 것은 산업경제, 교통, 물류, 재난안전, 문화관광, 교육, 보건의료, 환경, 지역개발, 경찰, 소방, 복지, 조세, 행정 및 기타 등 14개 대분야임

## □ 2단계 분석을 통한 광역사무 타당성 분석

-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사무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은 광역성과 효율성임
  - 광역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연관된 기능 및 사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효율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사무를 수행할 때 효율성을 거둘 수 있음
- 위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타당성 분석에 근거하여 도출된 광역사무는 광역

교통, 광역관광, 광역문화, 통합 신공항 사무임

□ 세부사무 도출을 위한 원칙과 방향

-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 범위는 광역교통, 광역관광, 광역문화, 통합 신공항 사무에 한정함
- 또한 광역사무 판단 기준은 사업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프로젝트 기반으로 함

□ 3단계 분석을 통한 세부사무 도출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현재 교통물류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통합신공항 건설, 광역교통, 광역관광, 문화정책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앞서 세부사무 도출의 기준인 프로젝트 기반을 고려하여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사무를 고려함
-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사무의 세부사무를 도출하기 위해 사무수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협력사업과 연계된 사무를 파악함
  - 크게 전문연구진 검토와 해당 부서장 검토를 통해 연관사무 내역을 파악함
- 이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세부사무로 협력사업, 협력사업+연관사무(전문연구진 검토), 협력사업+연관사무(해당 부서장 검토), 4대 기능 관장부서 사무의 4가지 대안을 도출함

## 4. 특별지방자치단체 설계

### □ 기관구성 방안 요약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명칭으로 도출될 수 있는 대안은 크게 4가지이며, 각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표 1〉 명칭 대안별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구역 명확</li> <li>• 법적 지위 명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칭이 길어 추후 약식 명칭 필요</li> </ul>
대구경북 광역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구역 명확</li> <li>• 광역자치단체 간 연합 의미 담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법적 지위 불명확</li> <li>• 광역연합 명칭 인지도 낮음</li> </ul>
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구역 명확</li> <li>• 법적 지위 명확</li> <li>• '대경' 명칭 인지도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칭이 길어 추후 약식 명칭 필요</li> </ul>
대경 광역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구역 명확</li> <li>• 광역자치단체 간 연합 의미 담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법적 지위 불명확</li> <li>• 광역연합 명칭 인지도 낮음</li> </ul>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위치 대안은 크게 4가지이며, 각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표 2〉 사무소 위치 대안별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대구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인지도가 높아 주민 편의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북 지역 주민들 불편</li> </ul>
경상북도 (안동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인지도가 높아 주민 편의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 지역 주민들 불편</li> </ul>
분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추진력 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소하나, 각 지역 주민들의 불편 발생 가능</li> </ul>
통합신공항 부지(군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지자체 주요 사업의 상징성 확보</li> <li>• 접근성 좋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 내 일부 지역 주민들 불편</li> <li>• 단기간 내 사무소 설치 어려움</li> </ul>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 대안은 크게 4가지이며, 각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표 3〉 관장사무 대안별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협력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 및 조직·인력·재정 사항 분리 용이</li> <li>• 현재 추진하던 협력과제 중심 이관으로 변화적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몇 안되는 기능으로 특별지자체 설치·운영의 비판</li> <li>• 한부리 상생위원회 간 차별성 적음</li> </ul>
협력사무 + 연관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슷한 기능을 포괄하여 범위의 경제 실현</li> <li>• 조직·인력·재정 효율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확치않은 사무로 인한 시행착오 가능성</li> <li>• 민원인 불편 심화</li> </ul>
4대 기능 부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인 불편 최소화</li> <li>• 범위의 경제 실현 가능</li> <li>• 조직·인력·재정 효율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의 의사결정 범위 혼란: 구성 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분리</li> <li>•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없는 사무 다수</li> </ul>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대안과 각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표 4〉 기관구성 대안별 장단점

기관	구분	장점	단점	
의회	임기	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 구성 비용 낮음</li> <li>• 의원들의 이해도가 높고 지속성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겸직 의원들의 부담 높음</li> </ul>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겸직 의원들의 부담 낮음</li> <li>• 순환방식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구성자치단체 의원에게 기회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 구성 비용 증가</li> <li>• 의원들의 이해도가 낮고 지속성 낮음</li> </ul>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균등할 1명 + (대구와 경북 총 인구 약 516만명/인구할100만명) 5명 + 보정인원 1명</li> <li>• 총 8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동일 의원수로 형평성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결정 시 비효율성 가능(지역별 동수 의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균등할 1명 + (대구와 경북 총 인구 약 51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결정 시 효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지역이 1명 더 많아 의결 주도 가능성</li> </ul>

기관		구분	장점	단점
		만명/인구할 100만명) 5명 • 총 7명		(현 263만)
단체장	임기	4년	• 업무 지속성 높음	• 겸직 시 단체장 부담 높음
		2년	• 겸직 시 단체장 부담 낮음	• 업무 지속성 낮음
	선출 방식	겸직	• 지역 정책 이해 높음	• 겸직 단체장 부담 높음
		외부인사	• 구성 단체장 부담 낮음	• 지역 정책 이해 낮음 • 외부인사 후보군 선정 비용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직체계 대안은 크게 4가지이며, 각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표 5〉 조직체계 대안별 장단점

구분	내용	장점	단점
1국 4개 과	총무과, 통합신공항과, 광역교통과, 광역문화관광과	• 기능 동질성 중간 수준 (문화와 관광 결합) • 통솔 적정성 높음	• 광역교통 업무 과다 가능 • 문화관광 업무 과다 가능
1국 6개 과	총무과, 통합신공항과, 광역철도과, 광역도로과, 광역문화과, 광역관광과	• 기능 동질성 높음	• 문화관광 업무 과소 가능 • 통솔 적정성 낮음
1국 5개 과	총무과, 통합신공항과, 광역철도과, 광역도로과, 광역문화관광과	• 기능 동질성 중간 수준 • 통솔 적정성 높음	• 향후 문화관광 기능 분리 필요
1실 2국 11개 과	1) <b>기획실:</b>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통합신공항정책과 2) <b>교통국:</b> 교통정책과, 버스운영과, 도로과, 철도과 3) <b>문화관광국:</b> 문화	• 기능 동질성 높음 • 통솔 적정성 높음	• 구성 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 간 분리 불명확 • 실·국 기구 수 제한 • 구성 자치단체 조직 재설계 가능성

구분	내용	장점	단점
	예술정책과, 문화유산과,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과, 동해안정책과		

### 5.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 □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로드맵

○ 대경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표 6〉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로드맵

구분	기반 및 추진체계 마련	광역사업 및 내·외부 환경 조성	특별지자체 출범
내용	-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 단(안) 구성	-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 단(안) 운영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 단체 준비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 단체 설립·운영
세부과제	- 한시기구 승인	-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규 약(안) 준비 -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조 직체계 구성	- 광역사업 추진

#### □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전략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계변수별 실행방안을 살펴보면, 구성 자치단체에서 이 관된 관장사무와 함께 광역교통 분야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을 필요가 있음
- 또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별도의 광역사무 발굴 절차를 거친 것처럼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관련 정밀한 준비를 위해 별도의 검토과정이 필요함
  - 관장사무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후 수행할 초광역협력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별 사업현황 조사·분석, 실무부서 간 회의·조정 과정을

### 필요로 함

- 조직체계의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광역행정기획단(안) 운영 및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구·인력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음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해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사무국으로 전환함
  - 추후 중앙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필요로 하는 실·국 및 기준인건비 조정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크게 자체수입과 중앙의 지원으로 구성됨
  - 자체수입은 추후 자원분담 방식 논의가 필요하며, 중앙의 지원은 큰 틀에서 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내의 재정지원을 구체화함

### □ 관련 제도 개선방안

- 관계법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내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시 기구·인력 지원과 관련 별도의 명시가 필요함
- 구성 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운영 시 연관성 있는 조례와 향후 검토 필요성이 있는 조례를 다음과 같이 도출함

〈표 7〉 관련 조례 검토

구분	연관성 있는 조례	향후 검토 필요성 있는 조례
대구광역시	- 76개	- 57개
경상북도	- 88개	- 26개

###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정책제언

- 중앙정부는 지난 10월 14일 발표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구체화하여, 지

원방안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음

- 우선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분야에서는 국가위임사무의 이양 절차를 명시하여 현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는 지역에 일괄적으로 사무 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 인력 분야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기획단(안) 등을 추진하는 지역에 한시기구 승인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추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시 기구·인력의 지원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는 실제 지역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계를 미리 준비하는 데에서 필수적임
-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야에서는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사업군’ 지원과 특별교부세 지원의 범위를 명시하여 실제 관장사무 수행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는 구성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초광역협력을 이룰 수 있는 필수 전략요인임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운영 단계에서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광역행정기획단(안) 내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는 방안으로서 구성 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논의하는 틀을 필요로 함
- 또한 향후 「지방이양일괄법」 추진과정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중앙으로부터 위임받을 권한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의 사무 위임 논의를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제1장 |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2. 연구목적 .....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8
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8

## 제2장 | 특별지방자치단체 고찰

제1절 특별지방자치단체 개념 및 목적 .....	11
1. 특별지방자치단체 개념 .....	11
2. 특별지방자치단체 목적 .....	13
제2절 특별지방자치단체 필요성 .....	16
1.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 현황 .....	16
2. 특별지방자치단체 필요성 .....	20
제3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현황 .....	22
1. 정부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정책 경과 .....	22
2. 특별지방자치단체 법적 근거 .....	23
제4절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적용가능성 .....	29
1. 대구·경북 사회경제적 여건 .....	29
2. 대구·경북 통합 추진 현황 .....	40
3.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적정성 .....	40
4.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의의 .....	41

## 제3장 |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사무 발굴

제1절 광역사무 발굴 논거 및 방식 .....	45
1. 관련 선행연구 검토 .....	45

2. 광역사무 발굴 논거 .....	46
3. 광역사무 발굴 방식 .....	52
제2절 1단계 분석을 통한 광역사무 발굴 .....	54
1. 선행연구 검토 .....	54
2. 설치목적 검토 .....	58
3. 국내·외 사례 검토 .....	59
제3절 2단계 분석을 통한 광역사무 타당성 분석 .....	74
1. 타당성 분석 방식 .....	74
2. 타당성 분석 .....	75
3. 타당성 분석 결과 .....	76
제4절 세부사무 도출을 위한 원칙과 방향 .....	77
1.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 .....	77
2.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기준 .....	77
제5절 3단계 분석을 통한 세부사무 도출 .....	79
1. 세부 협력사무 현황 .....	79
2. 사무수행 실태조사를 통한 세부사무 도출 .....	81

## 제4장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계

제1절 주요 설계내용 및 설계방법 .....	143
1. 설계변수 선정 .....	143
2. 설계변수 분석방법 .....	144
제2절 명칭 설계 .....	146
1. 법제분석 .....	146
2. 기존 사례 .....	146
3. 국내 사례 분석 .....	147
4. 해외 사례 분석 .....	148

---

5. 검토대안 및 소결 .....	149
제3절 사무소 위치 설계 .....	150
1. 법제분석 .....	150
2. 기존 사례 .....	150
3. 국내·외 사례 분석 .....	151
4. 검토대안 및 소결 .....	153
제4절 관장사무 설계 .....	154
1. 법제분석 .....	154
2. 국내 사례 분석 .....	154
3. 해외 사례 분석 .....	157
4. 검토기준 .....	161
5. 검토대안 및 소결 .....	165
제5절 기관구성 설계 .....	181
1. 법제분석 .....	181
2. 국내 사례 분석 .....	182
3. 해외 사례 분석 .....	183
4. 검토기준 .....	187
5. 검토대안 및 소결 .....	188
제6절 조직체계 설계 .....	191
1. 법제분석 .....	191
2. 국내 사례 분석 .....	191
3. 해외 사례 분석 .....	193
4. 중앙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을 통한 기구·인력 지원 .....	199
5. 기구 및 인력구성 .....	199
6. 검토대안 및 소결 .....	202
제7절 자원조달 설계 .....	207

1. 법제분석 .....	207
2. 국내 사례 분석 .....	208
3. 해외 사례 분석 .....	208
4. 중앙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을 통한 재정지원 .....	211
5. 검토기준 .....	212
6. 검토대안 및 소결 .....	213
제8절 설계방안 소결 .....	219
1. 기관구성 방안 요약 .....	219

**제5장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제1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로드맵 .....	235
1.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로드맵 .....	235
2. 세부 추진 로드맵 실행전략 .....	238
제2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전략 .....	249
1. 특별지방자치단체 설계변수별 실행방안 .....	249
제3절 관련 제도 개선방안 .....	260
1. 관계법령 개정방향 .....	260
2. 관련조례 개정 .....	262
제4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정책제언 .....	273
1. 중앙정부의 지원방안 .....	273
2. 지속적인 중앙-특별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틀 마련 .....	274

<b>【참고문헌】</b> .....	277
---------------------	-----

**【부 록】**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	283
------------------------	-----

〈표 1-1〉 2047년 국내 인구 전망	4
〈표 2-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	12
〈표 2-2〉 일반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 간 특성 비교	13
〈표 2-3〉 특별지방자치단체 일반적 설치목적	14
〈표 2-4〉 협력제도 비교	16
〈표 2-5〉 역대 정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정책	23
〈표 2-6〉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 규정	24
〈표 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	25
〈표 2-8〉 수도권 대비 대구·경북 주민등록인구 변화 추세	30
〈표 2-9〉 수도권 대비 대구·경북 1인당 GRDP 변화	31
〈표 2-10〉 수도권 대비 대구·경북 순인구이동 현황	32
〈표 2-11〉 수도권 대비 대구·경북 소멸위험지수	35
〈표 2-12〉 수도권 대비 대구·경북 기초자치단체 소멸위험지수	36
〈표 2-13〉 국토종합계획 내 권역별 개발 내용	37
〈표 2-14〉 국가균형발전계획 내 권역별 발전 내용	38
〈표 3-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 현황	49
〈표 3-2〉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 세부 내역	50
〈표 3-3〉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주요 사업 광역성 검토	51
〈표 3-4〉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사무 발굴 시 검토요인	52
〈표 3-5〉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56
〈표 3-6〉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사무 대상군	57
〈표 3-7〉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국가위임사무 이관 필요 사항	61
〈표 3-8〉 행정안전부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발굴(안)	66
〈표 3-9〉 간사이광역연합의 수행기능	69
〈표 3-10〉 1단계 검토를 통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 대상군	72
〈표 3-11〉 광역사무 도출 결과	76
〈표 3-12〉 협력계획 현황	79

〈표 3-13〉 협력사무 현황	80
〈표 3-14〉 대구 4개 분야 담당조직 및 사무분장 현황	82
〈표 3-15〉 경북 4개 분야 담당조직 및 사무분장 현황	103
〈표 3-16〉 대구 4개 분야 사무 중 협력사업과 연계 사무 현황	114
〈표 3-17〉 경북 4개 분야 사무 중 협력사업과 연계 사무 현황	116
〈표 3-18〉 대구 협력사업 연계 사무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적절성 검토	120
〈표 3-19〉 경북 협력사업 연계 사무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적절성 검토	122
〈표 3-20〉 대구 4개 분야 사무 관련 국가위임사무 수요	124
〈표 3-21〉 경북 4개 분야 사무 중 관련 국가위임사무 수요	124
〈표 3-22〉 대구경북 협력과제 세부내용	125
〈표 3-23〉 협력사업+연관사무: 전문연구진 검토 결과	127
〈표 3-24〉 협력사업+연관사무: 해당 부서장 검토 결과	133
〈표 3-25〉 4개 기능 및 구성 자치단체 부서	139
〈표 4-1〉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관련 규약 명시사항	144
〈표 4-2〉 설계변수 분석틀	145
〈표 4-3〉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명칭 판단기준	148
〈표 4-4〉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명칭 판단기준	149
〈표 4-5〉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 - 구성 자치단체 사무	155
〈표 4-6〉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 - 특행기관 및 대도시광역권교통위원회 사무	156
〈표 4-7〉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최종 관장사무	157
〈표 4-8〉 간사이 광역연합 수행 기능 분야 및 사무내용	158
〈표 4-9〉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관장사무	160
〈표 4-10〉 1단계 검토를 통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 대상군	161
〈표 4-11〉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 분야	163
〈표 4-12〉 협력사업 현황	164
〈표 4-13〉 현재 협력사업 현황	166

〈표 4-14〉 협력사무+연관사무: 전문연구진 검토 .....	168
〈표 4-15〉 협력사무+연관사무: 해당 부서장 검토 .....	174
〈표 4-16〉 4개 기능 부서 관장사무 .....	180
〈표 4-17〉 국내외 사례 요약 .....	187
〈표 4-18〉 검토대안별 판별 결과 - 의회의원 .....	189
〈표 4-19〉 검토대안별 판별 결과 - 단체장 .....	190
〈표 4-20〉 간사이 광역연합 사무국 구성 현황 .....	194
〈표 4-21〉 기준인건비제 산정방식 .....	200
〈표 4-22〉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국 구성 방안 .....	204
〈표 4-23〉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원확보 방안 .....	208
〈표 4-24〉 간사이광역연합의 예산분담금액 산정 기준 .....	210
〈표 4-25〉 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원확보 방안 .....	215
〈표 4-26〉 대구 경북 분담금 구조 .....	218
〈표 4-27〉 명칭 대안별 장단점 .....	220
〈표 4-28〉 사무소 위치 대안별 장단점 .....	222
〈표 4-29〉 관장사무 설계 대안별 장단점 .....	223
〈표 4-30〉 기관구성 설계 대안별 장단점 .....	226
〈표 4-31〉 조직체계 설계 대안별 장단점 .....	229
〈표 4-32〉 재원조달 설계 요약 .....	230
〈표 4-33〉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계 요약 .....	231
〈표 5-1〉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로드맵 .....	235
〈표 5-2〉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규정 .....	239
〈표 5-3〉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사항 및 근거법률 .....	240
〈표 5-4〉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 .....	241
〈표 5-5〉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계(안) .....	247
〈표 5-6〉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국가위임사무 중 광역교통 관련 사무 .....	250
〈표 5-7〉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 중 국가위임사무 .....	253

〈표 5-8〉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	257
〈표 5-9〉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관계법령 .....	261
〈표 5-10〉 대구광역시 조례 구성 .....	262
〈표 5-11〉 경상북도 조례 구성 .....	263
〈표 5-12〉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조례명-대구 .....	264
〈표 5-13〉 향후 운영 시 검토 필요 조례명-대구 .....	266
〈표 5-14〉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조례명-경북 .....	268
〈표 5-15〉 향후 운영 시 검토 필요 조례명-경북 .....	271
〈표 5-16〉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	273

---

〈그림 1-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변화	4
〈그림 1-2〉 연구 흐름도	8
〈그림 2-1〉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절차	28
〈그림 2-2〉 연령대별 수도권으로의 순이동(2009-2019)	33
〈그림 2-3〉 연령대별 인구증감(2000-2019)	34
〈그림 3-1〉 광역사무 발굴 방식 도식화	53
〈그림 3-2〉 구성지자체 현황	68
〈그림 3-3〉 간사이 광역연합 사무소 위치	152
〈그림 3-4〉 맨체스터 지역연합 사무소 위치	152
〈그림 4-1〉 간사이광역연합 조직도	196
〈그림 4-2〉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조직도	198
〈그림 4-3〉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직체계-1국 4개 과	204
〈그림 4-4〉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직체계-1국 6개 과	205
〈그림 4-5〉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직체계-1국 5개 과	205
〈그림 4-6〉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직체계-1실 2국 12개 과	206
〈그림 5-1〉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세부 추진 로드맵	237
〈그림 5-2〉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 조직체계	238



## 제1장

#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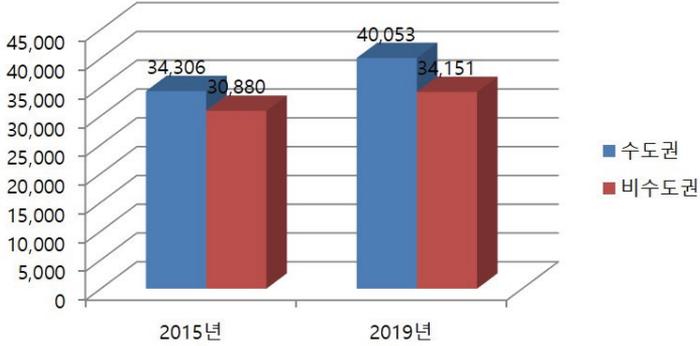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연구의 배경

#### □ 인구감소, 지역경제활력 저하 등 지역위기 심화

- 인구, 경제산업, 사회문화인프라 등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강화되고 있음
  - 한국은 기존 인구구조가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 사회였다면, 2017년을 기점으로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사회로 진입함(박진경 외, 2019)
    - \* 인구 보너스: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증가
    - \* 인구 오너스: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
  - 이와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강화됨
    - \* 2019년 기준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50%를 넘어섰으며(OECD 국가 중 1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된 인구는 약 8만 3천명임(박진경 외., 2020)
  -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으며,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음
  - 인구, 지역경제활력과 함께 각종 경제산업 및 사회문화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음

〈그림 1-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변화



- 수도권 집중 현상 강화와 더불어 비수도권 지역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 지역내총생산, 지방세수입, 사업체 수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악화되고 있음
  - 대구와 경북의 경우 인구 증가율이 (-)로 돌아선 상태이며, 실제 주민등록 인구 역시 감소하고 있음
  - 생산가능인구 비율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증가하여 향후 경제전망 역시 부정적임
  - 2047년 인구 전망을 살펴보면, 대구와 경북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감소율이 높은 수준임

〈표 1-1〉 2047년 국내 인구 전망

구분	2017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47년	17년 대비 '47년	
									증감	증감률 (%)
전국	5,136	5,178	5,191	5,193	5,163	5,086	4,957	4,891	-245	-4.8
대구	246	242	235	228	222	214	204	200	-46	-18.6
경북	268	266	262	259	256	250	242	238	-29	-10.9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19.6.27.,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

- 지역 인구감소, 일자리 부족, 경제활력 저하 등 전반적인 지역사회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시급함
  - 현재 비수도권에 속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감소, 일자리 부족, 경제활력 저하 등 공통적인 지역문제를 맞이하여 이를 대응하고자 함
  - 이러한 지역문제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특징을 지님. 예를 들어 일자리 정책의 경우 직장 과 정주지역이 분리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인근 지방자치단체까지 연계되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따라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력하여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 □ 지역별 광역행정 대응체제 구축

- 동남권, 충청권 등 다수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광역연합을 구축하여 인구감소를 비롯한 지역 위기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하고자 함
  - 부산, 울산, 경남으로 구성된 동남권 지역은 ‘동남권 메가시티’ 출범을 추진하고 있으며, 3개 광역자치단체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자 추진 중임.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3월 ‘동남권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를 수행한 결과 2021년 ‘동남권 광역특별연합’(가칭)을 출범하고자 함(김예성·하혜영, 2021)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4개의 충청권 광역자치단체 역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광역교통협의회’를 구축하여 광역행정 대응체제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2020년 11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구축 관련 합의문을 채택하고, 행정수도 및 혁신도시 완성, 초광역 자율주행자동차 특구 및 충청권 실리콘밸리 조성, 충청권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의 협력을 합의함(김예성·하혜영, 2021)
- 대구·경북은 광역연합 행정체제의 필요성에 따라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2022년 지방선거 이후 행정통합을 상정하고 중장기적인 준비 과정

에 있음

- 대구·경북의 광역연합체계 구축과정은 중장기적 행정통합을 상정했다는 점에서 타 광역자치단체들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정과 상이함

## 2) 연구의 필요성

### □ 지역경쟁력 제고를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 및 주민의 삶의 질 제고

- 비수도권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함
  - 2020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인구 천만 이상 도시가 30개로 늘어난 상황에서 세계는 이미 대도시권 경쟁체제에 들어섬
  - 광역연합형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을 갖추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음
  - 광역행정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지며, 이는 기존보다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을 의미함
  - 광역행정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기존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체제를 마련하여 행정운영 효율화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특정 행정구역을 벗어난 행정수요 대응체제를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
  - 저출산, 교육, 일자리 등 특정 행정구역에 한정되지 않는 지역문제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이같은 전략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음

###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실현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행·재정적 역량을 갖추 수

있음

-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지역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 구축은 필수적임
- 효과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을 위해 지방행정을 관할하는 행정구역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나, 현재 행정자치권과 지역생활권은 분리된 현상을 보이고 있어 효율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광역연합형 행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에 맞는 적절한 행·재정적 역량을 확보함

## 2. 연구목적

### □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사무 도출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대구·경북 지역의 사회환경을 고려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광역사무를 도출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목적은 지역경쟁력 강화와 광역행정 대응체계 구축임
  - 이를 고려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도출하고, 이 중 대구·경북 지역에 적절한 기능을 취사선택함. 예를 들어 모든 광역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들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동일사무를 도출하는 방안이 필요함

###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모색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등 조직규모 및 조직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을 구체화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방식을 마련하고 관련된 제도를 개선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방식과 지방의회를 운영하는 방식을 정하고, 이에 맞는 제도를 마련함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주요 흐름과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그림 1-2〉 연구 흐름도

순서	연구내용	방법
제1장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li> <li>· 연구의 범위 및 방법</li> </ul>	-
제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지자체 개념 및 목적</li> <li>· 특별지자체 필요성</li> <li>· 특별지자체 추진현황</li> <li>·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적용가능성</li> </ul>	· 문헌연구
제3장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사무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사무 발굴 논거 및 방식</li> <li>· 1단계 분석을 통한 광역사무 발굴</li> <li>· 2단계 분석을 통한 광역사무 타당성 분석</li> <li>· 3단계 분석을 통한 세부사무 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레인스토밍</li> <li>· 전문가자문</li> <li>· 실태조사</li> </ul>
제4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설계내용 및 설계방법</li> <li>· 명칭</li> <li>· 사무소 위치</li> <li>· 관장사무</li> <li>· 기관구성</li> <li>· 조직체계</li> <li>· 자원조달</li> <li>· 설계방안 소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레인스토밍</li> <li>· 의견조사</li> </ul>
제5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지자체 추진 로드맵</li> <li>· 특별지자체 추진 전략</li> <li>· 관련 제도 개선방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레인스토밍</li> <li>· 전문가자문</li> </ul>

## 제2장

# 특별지방자치단체 고찰

- 제1절 특별지방자치단체 개념 및 목적
- 제2절 특별지방자치단체 필요성
- 제3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현황
- 제4절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적용가능성



## 1. 특별지방자치단체 개념

### □ 특별지방자치단체 개념

- 특별지방자치단체(special purpose local autonomous entities)는 “자치행정상의 정책적 관점에서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거나 특수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또는 행정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자치단체”임(정세욱, 2005; 443)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부의 사안 또는 지역 간 협력·갈등·조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 특별구(special district), 공공위원회(joint committee), 임시특별구(ad hoc authority) 등을 설치한 데서 기원함(조성호 외., 2020)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능적 차원으로 접근할 때 “특수하거나 제한된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뜻하며(금창호, 2018; 11), 행정구역을 고려할 때 “기존의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설치되는 특수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로 정의함(김길수, 2008; 12)
-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해외 선행연구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특수한 기능 및 운영방식을 지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계층 중 하나로 보고 있음
  - Humes와 Martin(1969)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단일 또는 다수의 기능을 수행하며 독립적인 행·재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보통지방자치단체와 구분되는 체계로 정의함
  - 이외의 선행연구들에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기능적 측면, 운영적 특

성, 관할구역 등에서 각각 제한적 기능, 행·재정적 독립성, 단일 또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 범위 등으로 정의함

〈표 2-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

학자	개념
S. Humes and E. Martin (1969)	• 일반지방자치단체와 달리 하나 또는 수개의 기능만을 수행하며, 자체의 직원과 예산을 보유하고, 단일 또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 영역의 전부 내지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며, 통상적 행정계층구조 밖에 존재함
정부간관계 자문위원회(ACIR)	• 독립적이며, 제한된 목적을 지닌 정부단위로 일반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행/재정적 독립성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Nathaniel Preston	• 과세권이 없는 정부기관으로 모정부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실체이며, 자체 예산을 결정하고 요금을 결정하는 정도의 재정적 자율성을 가지며, 법에 규정되거나 규제위원회가 정한 일반적인 제한 사항들에만 구속되는 자치단체임

자료: 금창호, 2018a; 11

- 일반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원, 자치권, 기능, 설립주체, 운영방식, 관할구역 등의 측면에서 차이를 지님
  - 구성원 측면에서 일반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주민과 설치기관(구성 지방자치단체)을 구성원으로 함
  - 자치권의 경우 일반지방자치단체가 포괄적인 반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제한적임
  - 기능 측면에서 일반지방자치단체는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전문적 기능을 수행함. 예를 들어 상·하수도, 하천관리, 소방, 도서관, 공원, 주택, 방역 등임
  - 설립주체 측면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필요에 따라 중앙정부, 상급 지방자치단체, 복수의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설립함
  - 운영방식 측면에서 일반지방자치단체는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을 선출하는 반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등 결정기구를 통해 운영진을 선임함

- 관할구역 측면에서 일반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을 관할한다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을 포괄함

〈표 2-2〉 일반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 간 특성 비교

구분	일반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원	일반주민	일반주민 설치기관
자치권	포괄적	제한적
기능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종합적 기능 수행	전문적이고 특정한 기능 ex) 상·하수도, 하천관리, 소방, 도서관, 공원, 주택, 방역 등
설립주체	해당 지역	중앙정부 상급 지방자치단체 복수의 지방자치단체
운영방식	직접선거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 및 단체장 선출	다양한 방식에 따라 운영진 선임 ex)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관할구역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고정적/경직적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포괄 -가변적/탄력적

자료: 강인호, 2019: 23-24; 금창호, 2018: 13; 연구자 재구성

## 2. 특별지방자치단체 목적

### □ 특별지방자치단체 목적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서 설치·운영됨(금창호 외., 2005; 금창호, 2018)
  - 첫째, 일반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운영됨. 일반지방자치단체가 행·재정적 능력 부족이나 둘 이상의 일반지방자치단체가 공동사무로 다뤄야 하는 경우,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특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운영함

- 둘째, 광역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운영됨. 정보통신 및 교통 발전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광역화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함
  - 셋째, 일반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운영됨. 도시화와 생활권 확대로 인해 생활권과 행정구역 간 불일치가 커져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운영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은 일반적 설치 목적과 특화적 설치 목적으로 구분됨(금창호, 2018)
- 일반적 설치목적은 크게 수요적 측면과 대응적 측면으로 구분됨(금창호, 2018)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수요적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광역행정 대응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함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대응적 측면에서 공간분할의 한계 보완 및 자율적 운영체제 확보를 목적으로 함

〈표 2-3〉 특별지방자치단체 일반적 설치목적

구분	내용
수요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모경제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규모를 증가시킴에 따라 서비스 단위의 생산비용이 감소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규모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li> </ul> </li> <li>■ 광역행정 대응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의 합병·통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한 광역행정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li> </ul> </li> </ul>
대응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분할의 한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의 실시와 분권회의 촉진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구역과 서비스구역의 불일치를 기능 중심으로 보완하기 위한 목적</li> </ul> </li> <li>■ 자율적 운영체제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사무, 인사, 재원 등의 운영 체제를 통해 신속한 서비스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li> </ul> </li> </ul>

자료: 금창호, 2018a; 15

- 특화적 설치목적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설치목적과 달리,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및 형태에 따라 특화된 목적을 미함(금창호, 2018)
-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경쟁력 강화와 광역행정 대응이 설치 목적임
-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권 발전계획 및 시행이 목적임 (조성호 외., 2020)

## 제2절 특별지방자치단체 필요성

### 1.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 현황

####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 유형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로는 협력사업,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자치단체 조합, 자치단체 협의체가 있음  
 <표 2-4> 협력제도 비교

협력제도	의미	주요 사례	근거	조항내용
협력사업	업무의 광역성으로 단독처리가 곤란한 경우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처리하는 사업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김천, 구미, 칠곡) 장사시설 공동이용 사업(공주, 부여, 청양) 세종대왕 할망100리길 조성 지역관광자원 연계활용, 취업정보의 교차제공, 인접 지자체 간 버스이용 편의제공 등 경기도 교외선 운행재개 및 복선전철화 사업 등	지방자치법 제147조	자치단체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사무위탁	업무중복 방지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타 지자체에 위탁하여 처리	사업용 자동차 운수 종사자 위탁교육 실시(충남, 세종)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 밀양댐 상수원 수질 보전 관리 하수처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환경기초시설 슬러지 위탁처리	지방자치법 제151조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협력제도	의미	주요 사례	근거	조항내용
행정 협의회	2개 이상의 지자체 관련 특정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협의기구로 공법인의 지위는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금강권 맨 유역 공동발전협의회 백제문화권 관광 벨트협의회	지방자치법 제152~15 8조	<p>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 받는 지방자치단체</li> <li>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li> <li>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li> <li>4.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li> <li>5.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사무위탁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과 협의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1항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규약에 다르게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p>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여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p>

협력제도	의미	주요 사례	근거	조항내용
<p>자치단체 조합</p>	<p>없음</p> <p>2개 이상의 지자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법인체</p>	<p>경제자유구역청 지리산관광개발조합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수도권 교통본부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강원 남부권 관광개발 조합</p>	<p>지방자치법 제159-16 4조</p>	<p>하여야 한다.</p> <p>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 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 · 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 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p>
<p>지방자치 단체장 등 협의체</p>	<p>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은 상호간 교류와 협력증진,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전국적 협의체 설립</p>	<p>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구성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회의장협의회, 시군구청장 협의회 등</p>	<p>지방자치법 제165조</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 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도지사</li> <li>2. 시·도의회 의장</li> <li>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li> <li>4. 시·군·자치구의회 의장</li> </ol>

자료: 조성호 외., 2020: 26; 박재희 외., 2021: 12

##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한계

- 이제까지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님
  - 협력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장들 간 MOU를 통해 해당 사업들을 규정·운영할 수밖에 없어 강제력과 구속력이 필요한 협력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움. 또한 전담기구나 재원마련 방안 등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체계가 미비하여 정기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음(최용환, 2019: 35; 조성호 외., 2020)
  - 사무위탁의 경우 사무위탁을 수행하기 위한 행·재정적 방안인 위탁방법, 사무범위, 사무집행방법, 경비조달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모든 사안을 협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음(김길수, 2008: 432; 조성호 외., 2020: 30; 재인용)
  - 행정협의회의 경우 상설기구가 아니며, 실무 추진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마련되지 않아 집행력이 부족하며, 행정협의회 내 결정사항에 대한 구속력이 낮아 실제 협력 추진이 어려움(최용환, 2019: 17; 조성호 외., 2020: 30; 재인용)
  - 자치단체조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독립적인 법인 지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의결기관을 갖지 못하며, 이로 인해 조합구성 시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계를 지님(김길수, 2008: 434; 조성호 외., 2020: 33; 재인용)

## □ 지방자치단체 협력제도와 차별성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행정 업무의 범위와 내용에서 광역성과 특수성을 가지는 사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보다는 기존 협력제도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짐(조성호 외., 2020)
-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된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집행기구 부재로 인한 집행

력과 구속력의 한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간 MOU 체결방식 및 사안별 협의방식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조성호 외., 2020)

-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협력제도와 달리 의회 구성을 통한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상시적 집행체계를 갖추며 협의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가짐

## 2. 특별지방자치단체 필요성

### □ 특별지방자치단체 필요성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김길수, 2008: 437; 최용환, 2019: 55-65; 강인호, 2019: 24-25; 조성호 외., 2020; 재인용)
  -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권한과 업무 범위를 넘어서 광역성을 통한 행정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킴(조성호 외., 2020)
    -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 광역 단위 행정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조성호 외., 2020)
  - 둘째,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구성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사무·조직·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조성호 외., 2020)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다른 협력제도와 달리 집행기관 및 의결기관을 구성하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의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집행력과 구속력을 갖추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운영을 통해 전문인력의 충원·배치 및 재정운용 방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사무 처리 및 관리에서 탄력성과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음(조성호 외., 2020)
  - 셋째, 저출산·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지역산업·경제 침체 등 지역의 난해한 정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을 마련함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인구·일자리·산업경제·교통관광 정책 등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

- 만이 대응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넷째,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체계 형태 중 하나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광역행정체계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계 유형으로서 활용가능함

### 제3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현황

#### 1. 정부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정책 경과

##### □ 역대 정부별 정책 경과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은 역대 정부별로 상의하게 이루어짐
  -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방분권특별법」 제16조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정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및 활용을 적시하였으나, 분권정책 내에 이 사항을 포함하지는 않았음(금창호, 2018b)
  -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정립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도입 및 활용을 명시하였고, 분권정책의 일환으로 이 사안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여 수행함(금창호, 2018b)
  -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정립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도입 및 활용을 명시하였으나 분권정책에 이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았음(금창호, 2018b)
  -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정립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도입 및 활용을 명시하였고, 분권정책의 일환으로 이 사안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여 수행함(금창호, 2018b)

〈표 2-5〉 역대 정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정책

구분	관련 법령	관련 정책
노무현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분권특별법」</li> <li>- 제1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지방간 협력체제 강화</li> <li>• 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li> <li>• 중앙-지방, 지방간 분쟁 조정기능 강화</li> </ul>
이명박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li> <li>- 제1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강화</li> <li>• 분쟁조정기능 강화</li> <li>•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활용</li> </ul>
박근혜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li> <li>- 제1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li> <li>•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력체제 정립</li> </ul>
문재인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li> <li>- 제1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li> <li>• 광역연합제도 도입</li> <li>• 자치단체와 특행기관 간 협업 강화</li> <li>• 자율적인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조정 지원</li> <li>• 사회혁신적 갈등관리제도 확산</li> </ul>
입법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자유구역청 운영한계 보완</li> <li>- 이한구 의원 등 의원발의(2005)</li> <li>-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2006)</li> </ul>	

자료: 금창호, 2018b; 21-22

## 2. 특별지방자치단체 법적 근거

### □ 「지방자치법」 및 기타 법률적 규정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을 법률적 근거로 하며, 그 목적,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과 제4항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명시하였고,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함을 규정함
  - 다만 「지방자치법」 제2조 제4항에 기술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아 형식적 조항에 머물러 있음(조성호 외., 2020)
- 또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의 도입·활용이 가능함을 규정함

〈표 2-6〉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 규정

구분	내용
「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b>특별지방자치단체</b> 를 설치할 수 있다. ④ <b>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b>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3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에 관한 제반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기 위하여 <b>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b> 를 도입·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료: 금창호, 2018b; 19; 연구자 재구성

###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규약

-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는 기본법 성격으로서 규약을 두고, 그 안에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 또한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구체적으로 규약 내에 목적, 명칭, 구성 지자체, 관할구역, 사무소 위치, 사무, 지방의회 조직, 운영 및 의원 선임방법, 집행기관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방법, 운영 및 사무처리 경비 부담 및 지출방법을 담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는 법인격이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2장을 근거로 함
  -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주체에게 권리 의무가 있으며, 제한된 범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또한 보통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조례제정의 권한을 인정하며, 구속력을 토대로 구성지방자치단체 합의의 전제조건을 마련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구성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합한 것이나, 일부만을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함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기관대립형 형태를 지님
  - 의회의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원 및 장은 직접선거 또는 간접선거로 선출함(금창호, 2018b)
  - 집행기관의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를 통해 선출하고 직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 파견공무원으로 구성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국가·시도 위임사무로 구성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광역연합의회(의결기관)과 광역연합위원회(집행기관)으로 구성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크게 분담금, 이용자 사용료 또는 수수료로 확보함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표 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

장	절	조항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1절 설치	제199조(설치)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규약에 대하여 승인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장	절	조항
		<p>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⑤ 포함된 규약에 대하여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p> <p>⑥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규약의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p> <p>제200조(설치 권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가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p> <p>제201조(구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에만 관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p>
제2절	규약과 기관 구성	<p>제202조(규약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li> <li>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li> <li>3. 구성 지방자치단체</li> <li>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li> <li>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위치</li> <li>6.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li> <li>7.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li> <li>8.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임방법</li> <li>9.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방법</li> <li>10.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li> <li>1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개시일</li> <li>12.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li> </ol> <p>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19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p> <p>③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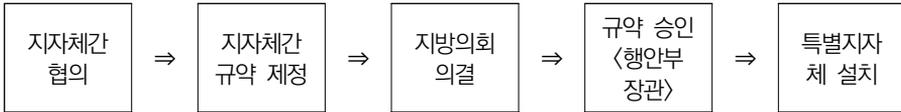
장	절	조항
		<p>제203조(기본계획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결을 거쳐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204조(의회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제1항의 지방의회의원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p> <p>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의결하여야 할 안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의결의 결과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p>
		<p>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p> <p>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p> <p>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p>
	제3절 운영	<p>제206조(경비의 부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p> <p>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경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또는 시·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07조(사무처리상황 등의 통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리 상황 등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시·군 및 자치구만)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08조(가입 및 탈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입 또는 탈퇴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또는 탈퇴의 신청을 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p>

장	절	조항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입하거나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는 제199조를 준용한다. 제209조(해산) ①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하여야 한다.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 시·도, 시·군·구 등 보통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법인격을 부여하며, 구성원인 자치단체장 간의 협의를 통해 규약을 정하여 각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후,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함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설치 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2-1〉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절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시행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구성원인 자치단체가 분담하며, 국가 또는 시·도 사무위임 시 재정적으로 지원함

## 제4절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적용가능성

### 1. 대구·경북 사회경제적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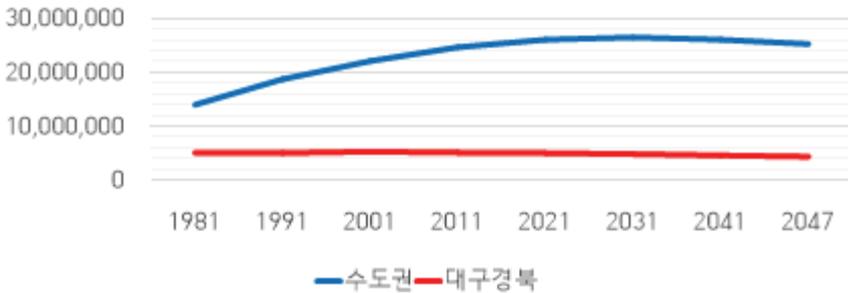
#### □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입 이후 뉴노멀, 지능정보기술 발달, 일자리·경제·산업 전반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뉴노멀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를 뜻하는 개념으로(이광형 외., 2016: 25), 뉴노멀의 두드러진 특징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높은 실업률임
  -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토대로 한 초연결성, 초지능성, 융복합화를 핵심 특징으로 함(김정숙·이재용, 2020)
  - 기술·산업 측면에서 산업구조 변화와 새로운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 창출, 일자리 및 노동시장 측면에서 고용구조 변화, 인적 역량 측면에서 직무역량(Skills & Abilities) 변화 등이 일어나고 있음(김진하, 2016; 김정숙·이재용, 2020; 재인용)

□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경쟁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50%를 넘어서면서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섬<sup>2)</sup>
  - 1981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 인구가 약 1,206만 명 증가하는 동안 대구·경북의 인구는 약 508만 명에서 약 505만 명으로 약 3만 명 감소함
  -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2047년까지 약 2,525만 명이 되는 반면, 대구·경북 인구는 약 438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됨

〈표 2-8〉 수도권 대비 대구·경북 주민등록인구 변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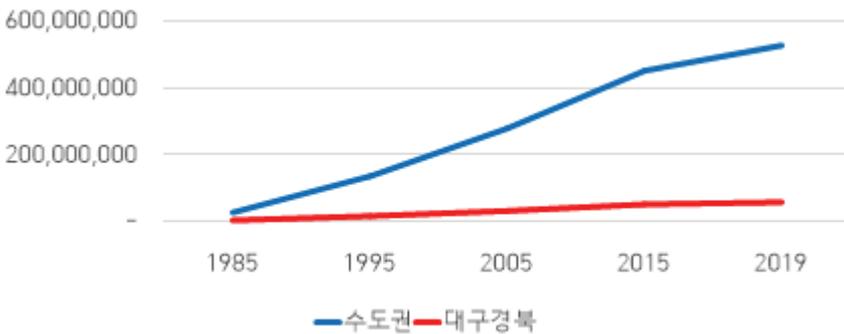
구분	1981년	1991년	2001년	2011년	2021년	2031년	2041년	2047년	1981년 대비 2047년	
									증감	증감률 (%)
수도권	13,986,598	18,735,055	22,093,135	24,652,284	26,054,097	26,492,753	26,056,958	25,254,392	11,267,794	80.6
대구·경북	5,079,185	5,064,710	5,292,340	5,128,108	5,050,468	4,856,295	4,605,755	4,382,968	-696,217	-13.7

자료: 국가통계포털

2)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약 2,604만명, 비수도권 인구는 약 2,579만명임

- 또한 1985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 GRDP가 약 27조에서 약 526조로 증가하는 동안 대구·경북의 GRDP는 약 3조에서 약 58로 증가함
- 동일 시기 증감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1,823% 증가한 반면, 대구·경북은 1,374% 증가함

〈표 2-9〉 수도권 대비 대구·경북 1인당 GRDP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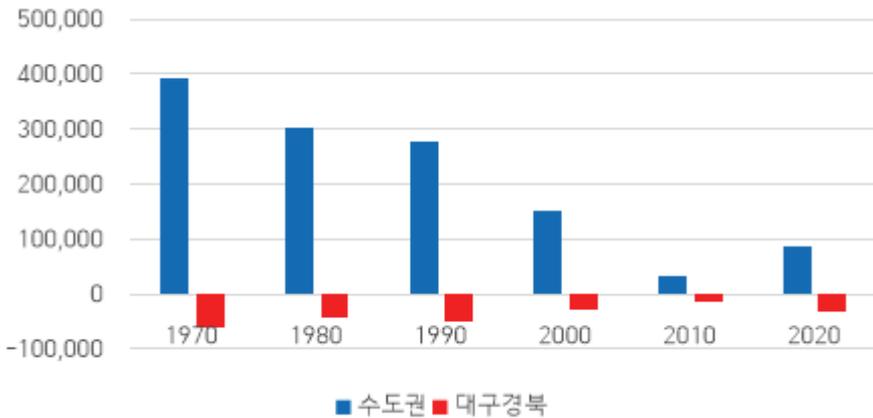


구분	1985년	1995년	2005년	2015년	2019년	1985년 대비 2019년	
						증감	증감률 (%)
수도권	27,345,142	135,595,850	278,241,313	450,305,755	525,968,189	498,623,048	1,823
대구·경북	3,940,278	16,708,963	32,139,726	51,822,116	58,094,801	54,154,523	1,374

자료: 국가통계포털

- 수도권과 대구·경북 지역의 순이동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1970년에서 2020년까지 계속 인구가 유입되는 추세이나, 순인구이동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고, 대구·경북의 경우 동일시기에 꾸준히 인구가 유출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0년 수도권은 약 39만 명 유입된 반면, 대구·경북은 약 6만 명 유출되었고, 2020년 수도권은 약 9만 명 유입된 반면, 대구·경북은 약 3만 명 유출됨

〈표 2-10〉 수도권 대비 대구·경북 순인구이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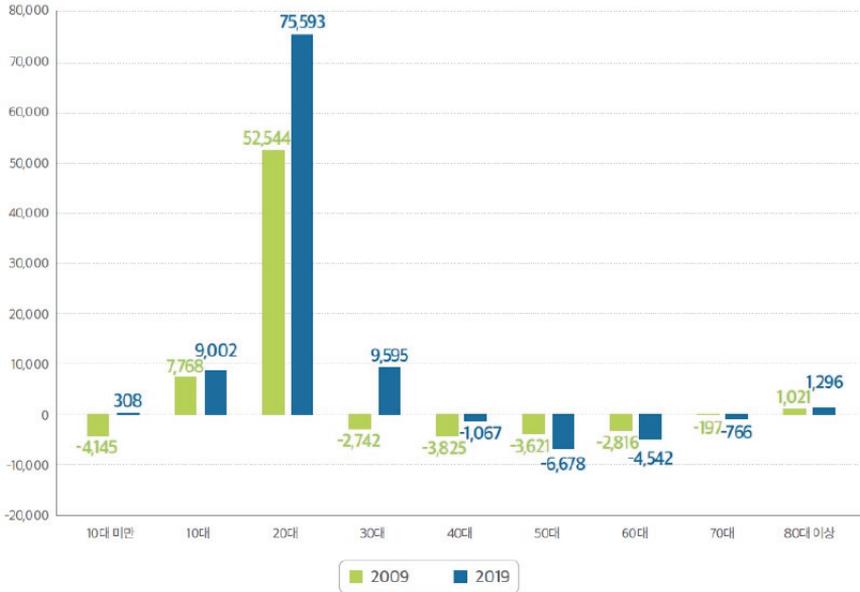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수도권	392,353	302,352	276,204	150,252	31,026	87,775
대구·경북	-62,499	-42,492	-51,430	-29,058	-15,392	-33,813

자료: 국가통계포털

- 연령대별로 살펴볼 때 20대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대비 2019년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청년층 인구가 더욱 커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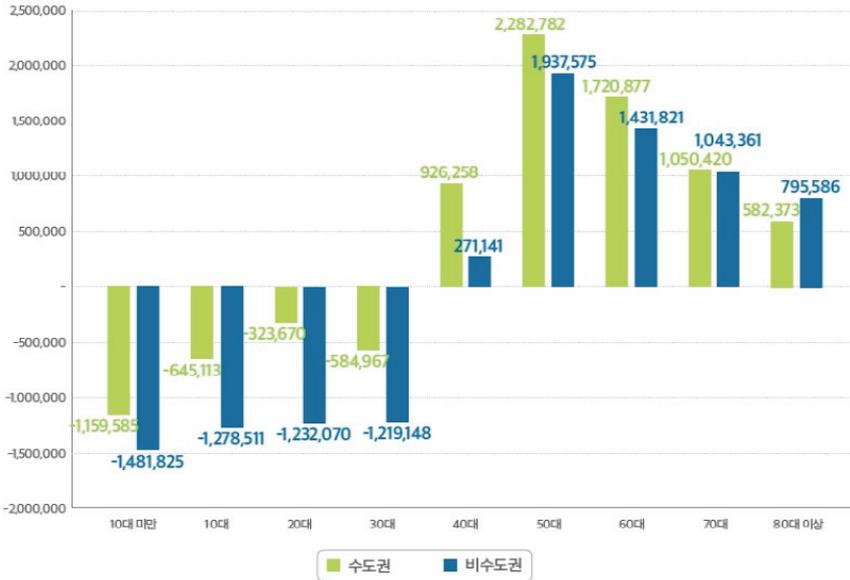
〈그림 2-2〉 연령대별 수도권으로의 순이동(2009-2019)



자료: 국토연구원, 2020

- 연령대별 인구증감 현황을 살펴볼 때 2000년부터 2019년까지 30대 이하 인구는 감소한 반면, 40대 이상 인구는 증가함
  - 다만, 50대 이상 인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증가한 반면, 30대 이하 인구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감소폭이 매우 큼

〈그림 2-3〉 연령대별 인구증감(2000-2019)



자료: 국토연구원, 2020

- <한국의 지방소멸 2018(이상호, 2018)>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도가 모두 1 이상을 보인 반면, 대구와 경북은 1이하로 낮아져서 소멸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임<sup>3)</sup>
  - 특히 대구는 2013년 1.18에서 2018년 0.87로 낮아지고, 경북은 동일 시기 0.71에서 0.55로 낮아져서 다른 지역에 비해 소멸위험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11〉 수도권 대비 대구·경북 소멸위험지수

	소멸위험지수						'18. 6월 인구(천명)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20-39세 여성	65세 이상	전체
서울	1.42	1.33	1.26	1.20	1.14	1.09	1,513	1,388	9,814
대구	1.18	1.09	1.02	0.98	0.92	0.87	310	357	2,470
인천	1.51	1.43	1.35	1.30	1.22	1.15	408	354	2,954
경기	1.51	1.43	1.35	1.30	1.23	1.18	1,776	1,511	12,975
경북	0.71	0.67	0.64	0.62	0.58	0.55	286	523	2,68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8

- 특히 기초자치단체 상황을 볼 때 대구·경북의 소멸위험지수는 심각해진 상황임
  - 경북 기초지자체 23곳 중 19곳이 소멸위험지수 0.5 미만임
  - 즉, 경북 기초지자체 중 83%가 소멸위험지역임을 알 수 있음

3) 소멸위험지수: 해당 지역의 20-39세 여성인수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수 수로 나눈 값으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정의함

〈표 2-12〉 수도권 대비 대구·경북 기초자치단체 소멸위험지수<sup>1)</sup>

구분	시군구	'18. 6월 인구(천명)			소멸위험지수					
		전체	20-39세 여성	65세 이상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대구광역시	서구	188,705	20,911	35,540	0.955	0.860	0.784	0.726	0.651	0.588
대구광역시	남구	151,890	18,893	31,804	0.869	0.788	0.724	0.681	0.634	0.594
대구광역시	중구	78,530	11,208	15,557	0.747	0.724	0.739	0.734	0.706	0.720
대구광역시	동구	351,892	43,651	60,569	0.946	0.888	0.843	0.810	0.761	0.721
대구광역시	수성구	435,468	50,871	60,168	1.144	1.076	1.001	0.954	0.896	0.845
대구광역시	북구	440,142	55,864	55,711	1.399	1.290	1.204	1.135	1.057	1.003
대구광역시	달서구	575,120	73,864	69,302	1.598	1.467	1.373	1.275	1.166	1.066
대구광역시	달성군	247,870	34,338	28,006	1.266	1.172	1.115	1.174	1.229	1.226
경상북도	의성군	53,166	3,112	20,567	0.199	0.187	0.176	0.168	0.158	0.151
경상북도	군위군	24,386	1,522	9,008	0.198	0.199	0.189	0.178	0.174	0.169
경상북도	청송군	25,874	1,642	8,921	0.233	0.219	0.213	0.209	0.195	0.184
경상북도	영양군	17,482	1,137	6,074	0.232	0.222	0.210	0.203	0.196	0.187
경상북도	청도군	43,171	2,913	15,008	0.256	0.238	0.226	0.215	0.206	0.194
경상북도	봉화군	33,177	2,171	11,012	0.251	0.238	0.223	0.214	0.204	0.197
경상북도	영덕군	38,381	2,617	13,248	0.251	0.234	0.222	0.214	0.203	0.198
경상북도	상주시	100,217	7,783	28,905	0.341	0.323	0.303	0.297	0.282	0.269
경상북도	성주군	44,745	3,500	12,996	0.343	0.330	0.310	0.300	0.284	0.269
경상북도	예천군	52,068	4,291	15,777	0.251	0.236	0.221	0.231	0.228	0.272
경상북도	고령군	33,360	2,601	9,299	0.392	0.364	0.337	0.320	0.295	0.280
경상북도	문경시	72,608	5,873	20,180	0.402	0.382	0.363	0.344	0.319	0.291
경상북도	울진군	50,454	4,194	12,981	0.376	0.370	0.359	0.353	0.340	0.323
경상북도	영천시	100,312	8,643	26,400	0.428	0.396	0.377	0.364	0.346	0.327
경상북도	영주시	107,578	9,172	26,087	0.486	0.453	0.419	0.400	0.377	0.352
경상북도	울릉군	10,010	877	2,268	0.540	0.493	0.461	0.431	0.375	0.387
경상북도	안동시	162,720	16,267	36,586	0.580	0.550	0.535	0.518	0.485	0.445
경상북도	경주시	257,137	25,571	51,809	0.674	0.623	0.586	0.557	0.519	0.494
경상북도	김천시	141,978	14,860	29,989	0.567	0.529	0.530	0.541	0.524	0.496
경상북도	포항시	511,188	57,822	75,131	1.118	1.033	0.959	0.909	0.836	0.770
경상북도	경산시	259,219	32,659	39,131	1.088	1.013	0.980	0.936	0.877	0.835
경상북도	칠곡군	119,620	14,933	16,461	1.242	1.183	1.135	1.095	1.020	0.907
경상북도	구미시	422,239	61,739	34,698	2.495	2.349	2.207	2.082	1.905	1.779

주 1) 소멸위험지수 0.5 미만 볼드처리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8

## □ 대구·경북 행정 대응 측면

- 대구광역시는 1981년 대구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경북으로부터 분리되었으나, 과거 오랜 기간동안 하나의 경제·사회·역사·문화권을 형성해 왔음<sup>4)</sup>
  - 과거 행정분리 시기에는 경제성장기에 힘입어 대구의 법적 지위를 상승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행정분리 이후 뉴노멀 시기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면서 비수도권 지역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대구·경북의 광역적 행정수요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짐
- 지난 1972년 시작된 국토종합계획은 5차에 이른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권역, 다핵, 광역, 광역경제권 등 권역별 개발계획 내용을 포함함
  - 특히 제3차 국토종합계획 내 9개 지역계획권역에 대구·경북권이 명시되어 있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의 5+2 경제권역에는 대경권을 들었음

〈표 2-13〉 국토종합계획 내 권역별 개발 내용

구분	권역 구분
제1차 국토종합계획	4대권, 8중권
제2차 국토종합계획	28개 지역생활권
제3차 국토종합계획	지역경제권
제4차 국토종합계획	10대 광역권 3개 연안축 및 3개 동서축
제4차 국토종합 수정계획	3가지 개방형(π형) 국토발전축, 다핵연계형 7+1 경제권역
제4차 국토종합 재수정계획	3차원 지역발전전략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도권, 지방대도시권, 중소도시권

자료: 국토연구원, 2020

4)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2021). “대구경북 행정통합 필요성 및 비전”

- 또한 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균형발전계획에서 생활권 및 권역별 지역발전계획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음
  - 2000년 노무현 정부 시기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전환을 맞이한 후 기업도시 설치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의 성장거점을 형성하여 권역별 성장을 도모하였고,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육성이나 박근혜 정부의 지역생활권 육성, 문재인 정부의 광역협력권 등 권역별 발전계획이 지속되고 있음

〈표 2-14〉 국가균형발전계획 내 권역별 발전 내용

정부	정책공간	핵심시책
노무현 정부 (‘04-’08)	행정구역: 시·도	- 공공기관 지방이전 - 행복·혁신·기업도시 - 4+9 지역전략산업 - 신활력사업 지역
이명박 정부 (‘09-’13)	기능권: 7개 광역 경제권	- 광역경제권 육성 - 30대 선도 프로젝트 - 연계협력사업
박근혜 정부 (‘14-’17)	행정구역: 시·도 · 기능권역(지역생활권)	- HOPE 프로젝트 - 지역생활권육성 - 선도산업 육성 - 새들마을 사업
문재인 정부 (‘17-현재)	행정구역: 시·도	- 사람중시 정책 - 광역협력권 - 산업위기지역 - 지역균형뉴딜

자료: 김현호, 2019: 70; 연구자 재구성

- 그러나 이제까지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집행하는 행정체계가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지역개발계획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따름
  - 특히 권역별 발전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러한 협력제도가 갖는 불안정성과 낮은 구속력으로 인해 안정적이고 중장기적 발전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최근 들어 비수도권 위기 심화를 타개하기 위해 광역행정체제를 구축하여 지역개발계획을 수행하는 흐름이 나타남
  - 2020년 이후부터 동남권, 충청권, 광주·전남 등에서 광역행정체제 및 광역화방안 구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구·경북 지역 역시 행정통합을 구상하고 추진하게 됨
- 현재 이루어지는 광역화 방안은 현 정부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분권화와 결합되어 시너지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됨
  - 즉,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기점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운영이 구체화되었고,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광역행정대응체제로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해외의 광역행정체제 사례를 살펴보면 광역행정체제는 중앙을 대상으로 분권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지역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분권화 시책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 광역경제권 구축 경험

- 대구·경북은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2008년) 5개 광역경제권 구상으로서 에너지, 전자, 섬유를 중심으로 한 대구 경북 지역의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고자 노력함
  - 대구·경북 지역이 보유한 여건 및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광역경제권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 내 산업 간 효율적 연계를 추구함
- 지난 2019년에는 초광역경제권 조성사업으로서 경북의 관광 분야 사업과 대구의 교통 분야 사업을 추진함
  - 경북은 환동해신복합 관광벨트 조성사업, 환동해 해양헬스케어 관광융합 벨트 사업이 선정됨. 대구는 달빛내륙철도(대구~광주),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업으로 선정됨

## 2. 대구·경북 통합 추진 현황

### □ 대구경북 행정통합 구상

- 1981년 행정분리 이후 인구, 지역경제, 산업 등에서 효과가 저조한 상황임
-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를 확보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함
  - 지난 2020년 9월 21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여 행정통합 관련 시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는 과정을 거침
- 지역주도형 행정통합을 통해 자치분권, 균형발전,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구경북 특별광역시” 수립을 추진함

### □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 결과

-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적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리됨
  - 권역별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수행한 결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이 40.2%, 반대가 38.8%이며, 통합 추진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63.7%임

## 3.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적정성

### □ 적정 요인

- 행정통합 준비 과정을 통해 광역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내·외부적 기반이 조성됨
  -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대구와 경북 간 광역행정체제를 통해 현재 지역문제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해야 한다는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됨

- 대구·경북 이외의 지역에서도 행정통합 추진의 과정 및 향후 방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향후 중앙정부, 언론 등을 대응하는 데에서도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음

- 완전한 행정통합의 전 단계를 경험함으로써 실효성있는 통합 준비가 가능함
  - 시도민이 행정통합의 전단계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경험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통합준비가 가능함

#### □ 부정적 요인

- 행정통합 전단계로서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정책수단이며, 그 이후 단계는 행정통합이라 볼 수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행정통합의 과정이 유사한 상황에서 두 가지를 분리하여 진행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광역행정 추진의 효과가 단기간에 드러나지 않을 경우 시도민은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될 수 있음

### 4.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의의

#### □ 추진 방향

- 행정통합의 사전단계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상정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명칭, 기관구성 등을 고려할 때 행정통합 시의 구상을 최대한 적용하여 유사하게 설계
-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사무 도출 시 현재의 협력 필요성, 광역추진의 효과

- 성, 해당 사무의 가시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발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행정통합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도민에게 효과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광역사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제3장

#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사무 발굴

- 제1절 광역사무 발굴 논거 및 방식
- 제2절 1단계 분석을 통한 광역사무 발굴
- 제3절 2단계 분석을 통한 광역사무 타당성 분석
- 제4절 세부사무 도출을 위한 원칙과 방향
- 제5절 3단계 분석을 통한 세부사무 도출



## 제1절 광역사무 발굴 논거 및 방식

## 1. 관련 선행연구 검토

## □ 광역사무 발굴 관련 선행연구

- 이제까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논거 및 도입방안 설계, 도입방안에 대한 지역 적용으로 구분됨
-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논거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여타의 협력제도에 비해 장점이 있음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입법화 방안 및 설계내용을 제시함
  - 금창호(2018)의 연구에서는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행정체제로서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개념을 설명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입법형식과 입법내용으로서 설립주체, 설립절차, 구역설정, 사무처리, 내부규약, 기관구성 등의 사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함
  - 강인호(2019.07)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 및 협력사업들을 설명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제도들에 비해 우위를 지닌다고 설명함
  - 정재화(2006)는 광역행정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실질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설명함
- 이에 비해 광역단위 행정수요가 아닌 기초단위 행정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논거 및 지역 적용을 시도한 연구들의 경우 지역을 특정 지역권에 따라 구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함
  - 조성호 외(2020)의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

안으로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4대 권역별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과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기능과 사무를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연구들은 전반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계방안 및 적용가능성을 파악하였으나, 실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광역사무를 발굴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구조 및 기관구성 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진한 상황임
-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 광역사무를 발굴하는 과정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를 상정하고 이들이 수행할 광역사무를 도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역적, 귀납적, 사례적용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발굴할 필요가 있음

## 2. 광역사무 발굴 논거

### □ 광역사무 발굴의 기본적 방향

-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경우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지역에 걸쳐 협력해야 할 사무나 연관된 사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또한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할구역이 사실상 권역과 일치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의 재조정을 필요로 함
-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근거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사무 발굴은 크게 다섯 가지의 기본방향 하에서 이루어짐
  - 첫째, 현재 구성 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는 사무를 기본으로 포함함
  - 둘째, 현재 구성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중 필요한 사무를 포함함
  - 셋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목적 및 전략을 토대로 필요한 사무를 도출함

- 넷째, 특별지방행정기관이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사무 중 필요한 사무를 발굴·도출함
  - 다섯째, 경제자유구역청 등 지방자치단체 조합 사무 중 이관이 필요한 사무가 있는지 검토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광역사무 내에 포함되는 세부 사무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광역성과 효율성의 두 가지 판단기준에 따라 대상 사무를 판별함
- 광역성과 효율성의 두 가지 판단기준에 따라 대상 사무를 판별한 결과 둘 중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검토대상에 포함함
  - 구체적으로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중 정책의 결과가 미치는 범위 또는 사무의 수행 범위가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광역사무로서 검토함
  - 실질적으로 두 지역에 걸쳐 있는 사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역 주민의 편의와 행정서비스 전달에서 효율적이라면 광역사무로서 검토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필요한 사무가 달라질 수 있음
-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형태는 광역연합형이며, 이들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 다만, 지역별 행정환경 및 조건의 차이로 인해 행정통합의 디딤돌로서 상정하거나 행정통합에 준하는 정도의 다수 기능을 수행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상 편차를 지님
-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사무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국가 사무를 위임할 것을 요청하는 과정과 맞물려있음
- 현재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는 국가 사무이며, 이를 권역 단위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기능 재조정을 통해 사무를 이관할 경우, 중앙정부에 별도의 사무 위임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 경제자유구역청은 단일 사무 중심의 협력을 위해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일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하에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함
  - 경제자유구역청 관장사무의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무의 판별기준인 광역성과 효율성에 근거하여 검토함

□ 검토결과

- 상호협력 관련 검토 결과 현행 협력사무 또는 협력계획을 가진 사무를 모두 포함함
- 구성 자치단체 사무 중 광역성과 효율성에 근거하여 타당성 검토 후 사무를 도출함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목적에 고려할 때 중장기적 행정통합을 위한 전 단계로서 생활체감형 광역사무를 도출함
  - 대구·경북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통합신공항 중심 1시간 생활권·경제권 조성, 낙동강 중심 문화관광벨트 등 생활체감형 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을 수립함
-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재조정의 경우 중장기적 행정통합을 상정할 때 단시간 내 기능 재조정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기능 재조정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이 적절함
  -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판별을 위해 2015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내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 방식을 검토함
  -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7대 지방이양 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중소기업, 국토하천, 해양항만, 노동, 보훈, 산림 등의 분야에서 총 183개 기관을 선정함(주재복·우병창, 2017)

〈표 3-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 현황

분야	기관수	1차 기관명(수)	2·3차 기관명(수)
합계	183	51	132
중소기업	14	지방중소기업청(11)	사무소(3)
국토관리	32	지방국토관리청(5)	국토관리사무소(18) 국토관리사무소 출장소(9)
해양항만	25	지방해양항만청(11)	해양사무소(9) 해양사무소 출장소(5)
노동	47	지방고용노동청(6)	지방고용노동지청, 출장소(41)
환경	9	지방유역환경청, 대기환경청(8)	출장소(1)
보훈	24	지방보훈청(5)	보훈지청(19)
산림	32	지방산림청(5)	국유림관리소(27)

자료: 주재복·우병창, 2017: 22

- 이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 지방이양 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7개 기관으로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지방노동사무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보훈지청임
- 구체적으로 소기능을 기준으로 이관 검토한 결과, 이관대상사무로 총 458건임
  - 국토관리사무 8개 분야 92건
  - 노동위원회사무 1개 분야 4건
  - 환경사무 4개 분야 4건
  - 보훈사무 8개 분야 122건
  - 해양수산사무 13개 분야 131건
  - 중소기업사무 4개 분야 8건
  - 고용사무 11개 분야 97건

〈표 3-2〉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 세부 내역

기관명	기존정원(명)		예산이체액 (억원)	이관사무	미이관사무 (주요사무)
	이관정원	실제 이체인원			
	합 계	238			
	126				
제주지방 국토관리청	49		334	국토관리사무 8개 분야 92건	-
	49				
	44				
제주지방 노동위원회	9		3	노동위원회사무 1개 분야 4건	-
	9				
	9				
제주 환경출장소	8		-	환경사무 4개 분야 4건	국가측정망 (대기, 토양, 지하수)
	2				
	8				
제주 보훈지청	23		4	보훈사무 8개 분야 122건	국가유공자 등록·결정사무
	23				
	21				
제주지방 해양수산청	99		400	해양수산사무 13개 분야 131건	해상안전사무 (IMO국제협약)
	35				
	36				
제주지방 중소기업청	17		4	중소기업사무 4개 분야 8건	시험·분석사무 (고도의 전문기술 및 전국 통일성)
	12				
	11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33		13	고용사무 11개 분야 97건	근로감독사무 (ILO국제협약)
	10				
	3				

자료: 주재복·우병창, 2017: 22

- 2015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내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중복사무를 통합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는데 있음
- 따라서 단일 또는 다수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와 달리 광범위한 기능을 지방에 이양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이양대상사무를 발굴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를 고려하는 데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대상사무의 경우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단계적으로 이양대상사무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라 설립된 행정기구로서 대구와 경북 단체장의 협의 하에 설치·운영됨
  -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생활체감형 관장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의 관장사무는 현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음

〈표 3-3〉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주요 사업 광역성 검토

구분	지역	광역성
대구테크노플리스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유기읍 일원	×
수성의료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일원	×
신서첨단의료지구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신서혁신도시 내	×
국제패션디자인지구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일원	×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경상북도 영천시 채신동, 본촌동, 금호읍 구암리 일원	×
경산지식산업지구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원	×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경상북도 영천시 녹전동, 화산면 일원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일원	×

자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연구자 재구성

- 따라서 대구경북 내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단계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내 기능 이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단, 이 때 대구경북의 경우 중장기적인 행정통합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중장기 로드맵 하에서 이루어져야 함

○ 위의 다섯 가지 검토요인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3-4〉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사무 발굴 시 검토요인

구분	검토방식	검토결과
상호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협력사무 또는 협력계획을 가진 사무 검토</li> <li>• 광역성과 효율성 중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광역사무 대상군에 포함</li> </ul>	현행 협력사무 또는 협력계획을 가진 사무 모두 포함
구성 자치단체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구성 자치단체 수행 사무 검토</li> <li>• 정책의 결과가 미치는 범위 또는 사무의 수행 범위가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검토대상</li> </ul>	광역성과 효율성에 근거하여 타당성 검토 후 사무 도출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경쟁력 강화와 광역행정 효율화를 위해 수행해야 할 광역사무</li> <li>• 지역경쟁력 강화</li> <li>• 행정통합의 디딤돌</li> </ul>	중장기적 행정통합 이전 생활체감형 광역사무 도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 이상의 광역단위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li> <li>• 광역특별지방행정기관과 특별지방자치단체 간 어떤 주체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li> </ul>	중장기적 행정통합 상정할 때 단시간 내 기능 재조정보다는 단계적으로 기능 재조정 분야 확대
지방자치단체 조합 (경제자유구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체감형 관장사무 해당 여부</li> <li>• 중장기적 이양대상사무 여부</li> </ul>	단시간 내 기능 재조정보다는 중장기적 행정통합 로드맵과 연관하여 기능 재조정 필요

### 3. 광역사무 발굴 방식

#### □ 광역사무 발굴 절차

-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사무를 발굴하는 절차는 크게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짐
- 1단계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목적, 선행연구 검토, 국내외 사례 등을 통해 귀납적·연역적 방식으로 대상 기능 및 사무군을 발굴함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목적은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

쟁력 강화이며, 단계적 목적으로서 대구·경북의 중장기적 행정통합에 유리한 조건·환경 구축을 들 수 있음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광역사무 분야를 정리하고자 함
- 국내 사례의 경우 최근 설치되는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광역사무 분야를 검토하고, 해외 사례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과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사례를 검토함

○ 2단계는 1단계를 통해 도출된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사무 분야를 광역성(상호협력, 분쟁조정)과 효율성(규모경제, 범위경제)을 기준으로 판별함

- 상호협력: 대구와 경북 간 협력과제 및 협력사무
- 분쟁조정: 대구와 경북 간 권한·책임이 불명확하거나 분쟁·갈등 발생
- 규모경제: 대구와 경북 간 협력 시 비용절감으로 행정효율성 제고
- 범위경제: 대구와 경북 간 협력 시 기능연계로 행정효과성 제고

○ 3단계는 적정한 기능 및 사무군을 토대로 세부사무를 도출함

- 2단계를 통해 판별된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사무의 협력사무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협력사무 및 업무를 도출함

〈그림 3-1〉 광역사무 발굴 방식 도식화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내용	• 대상 기능 및 사무군 발굴	• 대상 기능 및 사무군 타당성 분석	• 세부사무 도출
방식	• 연역적 방식 • 귀납적 방식 • 사례분석	⇒ • 전문 연구진 검토	⇒ • 협력사무실태 조사
세부 내용	• 광역교통, 광역관광 등 협력사무 • 선행연구 검토 • 국내외 사례검토	• 광역성: 상호협력, 분쟁조정 • 효율성: 규모경제, 범위경제	• 실제 협력사무: 예시) 광역교통, 광역관광 등

## 제2절 1단계 분석을 통한 광역사무 발굴

### 1. 선행연구 검토

#### □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사무 관련 선행연구 검토

-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광역사무를 검토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대개 광역사무는 크게 규모의 경제 및 상호협력을 달성할 필요가 있거나 분쟁을 유발하는 사무들이 포함됨(금창호, 2005; 2018a; 2018b;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8; 2000)
- 금창호(2018a)의 연구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무로서 초·중·고등학교 교육, 경찰, 소방, 쓰레기수거, 학교행정, 의료 등을 들고 있음
- 또한 상호협력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사무로는 도시 및 지역계획, 교통, 혐오시설 설치·운영, 공공시설 설치·운영, 지역경제, 교육 및 연구개발, 상·하수도, 보건위생, 환경, 일반행정, 친선교류, 행사개최 등을 들고 있고, 사무의 유형으로는 주변요소의존형, 지역연결형, 기능의 지역연결형, 입지제한형, 기반규모의존형 등을 들고 있음(국토개발연구원, 198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8; 2000)
- 또한 분쟁조정이 필요한 사무로는 구역, 조직, 기능배분, 관세관리, 지하철, 교량, 항공, 혐오시설, 위험시설, 상수도, 댐, 상수원보호, 공단, 택지, 공원, 관광단지, 공유수면 등이 있음(금창호, 2018a)
- 이외에도 금창호(2005)의 연구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 광역사무로서 산업폐기물처리, 쓰레기처리, 화장장, 상·하수도, 상수원 보호, 공해대책, 종합운동장, 종합의료시설, 광역도시계획, 공원 및 위락시설, 해외시장 개척 및 관광단지 개발 등을 들고 있음
- 조성호 외(2020)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크게 접경지역권, 경기만권, 팔당상수원권, 광고산 첨단벨트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담당할 사무들을 제시함

- 접경지역권: 접경지역 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사업, 남북교류협력 계획 및 정책사업, DMZ 보전 및 관광활성화 등 평화적 활용 계획 및 정책사업,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사업, 한탄강임진강한강하구 등 여러 시군에 걸친 광역자원에 대한 보전·활용 및 지역사회 발전 정책 사업
- 경기만권: 1) 철도 및 도로 네트워크 구축: 광역철도사업, 지방도 사업 추진·관리, 국지도 사업 추진·관리, 민자도로 추진·관리, 지방도 도로공사, 도로 보수, 2) 수요 맞춤형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 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시설 확충, 국가대중교통기본계획 연계 대중교통계획 수립, 3)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 해외 항만도시와 협력 강화: 양자간·다자간 국제물류협력, 외국인 투자유치
- 팔당상수원권: 팔당상수원지역 종합대책 수립,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 시군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오염부하량 할당 및 관리, 목표수질 조정 및 오염총량관리조사 및 연구, 토지매수 및 수변 구역 관리계획 수립, 상수도 및 하수도 정비계획, 물수요관리시행계획
- 광교산 첨단벨트권: 1) 광역 고용 및 노동지원 활성화: 지역고용정책기본 계획,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안전 분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 근로감독 등, 2) 광역 (중소)기업 지원: 광교산 첨단벨트권 중소기업 지원,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기업 활력 제고, 여성기업 지원, 3) 광역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산업단지 육성 및 지원

〈표 3-5〉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	대상	논거	분야	세부 사무
금창호 (2005)	광역	-	환경 지역개발 지역경제 관광 교육	산업폐기물처리, 쓰레기처리, 화장장, 상·하수도, 상수원 보호, 공해대책, 종합운동장, 종합의료시설, 광역도시계획, 공원 및 위락시설, 해외시장 개척 및 관광단지 개발
금창호 (2018a)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 (1988, 2000)	광역	규모의 경제	경찰 소방 환경 의료	초중고등학교 교육, 경찰, 소방, 쓰레기수거, 학교행정, 의료
		상호 협력	지역개발 환경 지역경제 교육 연구개발 보건위생 일반행정	도시 및 지역계획, 교통, 혐오시설 설치·운영, 공공시설 설치·운영, 지역경제, 교육 및 연구개발, 상·하수도, 보건위생, 환경, 일반행정, 친선교류, 행사개최
		분쟁 조정	관세 지역개발 교통 환경 관광	구역, 조직, 기능배분, 관세관리, 지하철, 교량, 항공, 혐오시설, 위험시설, 상수도, 댐, 상수원보호, 공단, 택지, 공원, 관광단지, 공유수면
조성호 (2020)	기초	-	접경지역권	접경지역 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사업, 남북교류 협력 계획 및 정책사업, DMZ 보전 및 관광활성화 등 평화적 활용 계획 및 정책사업,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사업, 한탄강임진강한강하구 등 여러 시군에 걸친 광역자원에 대한 보전·활용 및 지역사회 발전 정책사업
			경기만권	철도 및 도로 네트워크 구축, 수요 맞춤형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 해외 항만도시와 협력 강화
			팔당상수원권	팔당상수원지역 종합대책 수립,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 시군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오염부하량 할당 및 관리, 목표수질 조정 및 오염총량관리조사 및 연구,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계획 수립, 상수도 및 하수도 정비계획, 물수요관리시행계획
			광고산 첨단벨트권	광역 고용 및 노동지원 활성화, 광역 (중소)기업 지원, 광역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광역사무를 주로 규모의 경제, 상호협력, 분쟁조정 3가지 기준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 광역사무 분야에 해당하는 대상군은 규모의 경제 5개, 상호협력 8개, 분쟁조정 9개 분야로 총 22개 분야로 정리됨
- 해당 22개 대상군 중 중복 제외 후 종합한 결과 최종적으로 17개 대상군으로 요약됨
  - 이는 경찰, 공유수면, 관광, 관세, 교육, 교통, 기능배분, 보건위생, 소방, 연구개발, 의료, 일반행정, 지역개발, 지역경제, 행정구역, 혐오시설, 환경임

〈표 3-6〉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사무 대상군

구분	광역사무 대상군	종합
규모의 경제	교육 경찰 소방 환경 의료	경찰 공유수면 관광 관세 교육 교통 기능배분 보건위생 소방 연구개발 의료 일반행정 지역개발 지역경제 행정구역 혐오시설 환경
상호협력	지역개발 환경 지역경제 교육 연구개발 보건위생 일반행정 혐오시설	
분쟁조정	관세 지역개발 교통 환경 관광 행정구역 기능배분 혐오시설 공유수면	

## 2. 설치목적 검토

### □ 광역연합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

- 대구와 경북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임
  -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비전을 ‘2040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으로 삼고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함
  - 대구와 경북이 광역연합을 통해 각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지역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하고자 하며, 이러한 협력의 궁극적인 목적 또한 행정통합의 목적과 동일한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임
-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설치 목적은 지역경쟁력 강화와 광역행정 대응으로, 대구와 경북이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역시 동일함
  - 현재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목적은 대부분 유사하게 지역경쟁력 강화와 광역행정 대응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지역 환경과 역량에 따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 및 계획이 다름
  - 예를 들어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동남권 메가시티 기본구상에 따라 생활·경제·문화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메가시티의 플랫폼으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고려함
  -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의 경우 ‘충청권의 균형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보고, 산업경제, 광역인프라, 사회문화 등 3대 분야에서 9개 전략과 23개 사업을 제시함<sup>5)</sup>

### □ 중장기 행정통합의 디딤돌 역할

- 대구와 경북은 행정통합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

5) 한겨레신문.2021-07-23. "수도권 벨트 대응 전략 '충청권 메가시티' 어떻게 갈까"

기적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리됨

- 지역주도형 행정통합 방식으로서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은 일대일 대등 통합, 지방분권형 통합, 상생 및 상향식 통합 방식을 통해 이루어짐(대구 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2021)
- 통합의 4대 전략으로 행정, 산업, 연결, 글로벌 인프라 측면의 8대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3대 권역과 2대 포트 중심 네트워크 발전을 추진함(대구 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2021)

- 중장기 행정통합을 내실있게 완수하기 위해 광역행정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행정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의 집행력과 구속력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기본적인 구상과 전략이 제시되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추진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와 경북 두 자치단체들이 상시적 협력을 통해 행정통합을 준비함
  - 이러한 경우 행정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낮은 집행력 및 구속력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광역행정 대응체계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운영함

### 3. 국내·외 사례 검토

#### □ 동남권 광역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사무

- 현재 동남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생활·경제·문화공동체 형성이라는 메가시티 기본구상 하에 설계되고 있음
  - 동남권의 경우 대구·경북과 달리 중장기적 행정통합이 아닌, 동남권 지역의 광역연합을 뒷받침할 행정체계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상함
  - 따라서 동남권 메가시티의 실질적인 추진체계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때문에 관장하는 사무의 영역이 광범위함

-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무는 크게 산업경제, 교통, 물류, 재난안전, 문화관광, 교육 등임
  -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메가시티 구상, 특별지방자치단체 법제, 해외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례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위와 같은 광역사무 분야를 도출함
  - 특히 미국 광역도시권 의회, 영국 맨체스터 지역연합,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프랑스 엑스-마르세유-프로방스 메트로폴,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사례를 검토함
  - 해외 사례 검토 결과, 해당 지역의 특성과 광역연합의 설치 목적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무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 설계 시에도 메가시티 기본구상을 주축으로 관장사무를 도출함
  - 다만, 대다수 해외 사례에서 지역개발과 광역교통체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무는 구성 자치단체들이 이관하는 사무와 국가 사무 중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로 구분됨
  - 구성 자치단체들이 관장하는 사무들 중 산업경제, 교통, 물류, 재난안전, 문화관광, 교육 등에 해당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이관함
  - 또한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계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 사례와 기존 지방이관 사무 등을 검토하여 지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이관함
- 특히,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교통과 광역관광 분야에서 국가에 위임을 요청하는 사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광역교통: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심의
  - 광역관광: 국내관광 역량 강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지역 DMO 육성,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지정

〈표 3-7〉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국가위임사무 이관 필요 사항

구분	사무	근거법령	내용
광역 교통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p>- 위임 요청사무의 현재 사무수행 주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p> <p>- 위임 요청 사유: 자치단체의 권한 및 자율성 확대,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 사업 추진 기능</p>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심의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 3	<p>- 위임 요청사무의 현재 사무수행 주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p> <p>- 위임 요청 사유: 자치단체의 권한 및 자율성 확대,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 사업 추진 기능</p>
광역 교통	시계의 버스노선, 광역버스 관련 협의·인가에 관한 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p>- 위임요청사유: 인접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상충 및 조율 필요</p>
	광역교통부담금 지급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 3(사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① 시·도지사는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용계획에 대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부담금 징수액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계획에 대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구분	사무	근거법령	내용
		<p>〈개정 2012. 11. 23., 2014. 7. 29〉</p> <p>1.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p> <p>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직행좌석형·좌석형·일반형 상호 간 운행형태의 전환</p> <p>나. 관할 시·도 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변경(물 이상의 시·도지사가 공동배차 하는 노선은 제외한다)</p> <p>다. 다른 시·도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도로·다리의 개설·확충 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운행경로의 변경으로 거리가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라. 제3항에 따른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그 대책에 따른 사항</p> <p>2.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p> <p>가. 관할 시·도 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단축이나 운행경로의 변경(관계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다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해당 운행계통을 운행하고 있거나 운행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노선을 신설하거나 연장함으로써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에 기점 또는 종점이 있게 되는 경우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기점 또는 종점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다.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일반형에서 직행</p>	

구분	사무	근거법령	내용
		<p>형으로 또는 직행형에서 고속형으로 전환 라. 운행형태가 직행형·일반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 변경 (관할 시·도 구역 밖으로 운행계통이 걸쳐 있는 시내 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의 변경은 제외한다)</p>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 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p> <p>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p>	<p>- 위임요청사유: 지자체 간 협약에 의거 환승 기준 및 교통카드시 스템 개선 가능 필요</p>
	<p>대중교통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운영</p> <p>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p>		<p>- 위임요청사유: 대도 시광역교통위원회 - 위임요청사유: 광역버 스 및 2개 이상의 지 자체를 연결하는 BRT 를 신설할 경우 지자 체 간 협의 필요</p>
	<p>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수립</p> <p>간선급행버스법 제5조 제1항</p>	<p>제5조(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도 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종합계획에 따라 간선급행버스 체계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체계건설사업별로 개발계 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만, 소규모의 체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위임요청사유: 위임 요청사무의 현재 사 무수행 주체: 문화체 육관광부 - 위임 요청 사유: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 사업 추진 가능, 전국 적으로 균형있는 열린 관광 환경 조성 필요</p>
<p>광역 관광</p>	<p>국내관광 역량 강화</p> <p>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p>	<p>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지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 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 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지원사업</li> <li>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지원화사업</li> <li>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li> <li>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li> <li>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지원화 사업</li> </ol>	

구분	시무	근거법령	내용
		<p>유임 요청사무의 현재 사무수행 주체: 문화체육관광부</p> <p>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개발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동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li> <li>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li> <li>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li> <li>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li> <li>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li> </ol>	<p>- 유임 요청사무의 현재 사무수행 주체: 문화체육관광부</p> <p>- 유임 요청 사유: 국비 공모사업에 의해 선정된 지역에만 지원하기 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 추진 필요</p>
	<p>국민여가캠핑장 조성</p>	<p>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p>	<p>- 유임 요청사무의 현재 사무수행 주체: 한국관광공사</p> <p>- 유임 요청 사유: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 사업 추진 가능</p>
	<p>지역 DMO 육성</p>	<p>관광진흥법 제48조의9</p>	<p>- 유임 요청사무의 현재 사무수행 주체: 문화체육관광부</p> <p>- 유임 요청 사유: 지역 단체의 권한 및 자율성 확대,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 사업 추진 가능</p>
	<p>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지정</p>	<p>관광진흥법 제52조 제2항, 관광진흥법 제70조 제2항</p>	<p>- 유임 요청사무의 현재 사무수행 주체: 문화체육관광부</p> <p>- 유임 요청 사유: 지역 단체의 권한 및 자율성 확대,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 사업 추진 가능</p>
	<p>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p>	<p>유치 후 특별법 제정 예정</p>	<p>- 유임 요청사무의 현재 사무수행 주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원회</p>

## □ 행정안전부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사무

- 행정안전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사무를 판별하기 위해 3단계의 판별 단계를 거침(행정안전부 외., 2021)
  - 1단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사무 중에서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무 중에서 1) 공통적으로 광역적 성격의 사무, 2) 협력이 필수적인 사무, 3) 협력이 유리한 사무 등임
  - 2단계: 시도, 시군구가 수행하는 사무 중에서 (1) 지역 주민들의 요구 등 협력 필요성이 긴급하고 (2) 비용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3) 기술적, 경제규모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사무들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대상사무로 유리함
  - 3단계: 이러한 대상 사무들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또는 중앙정부에서 개별법 및 특별법으로 협력적 집행을 지정하거나 정책적, 정치적 판단으로 강제적이고 의무적으로 협력방식에 의한 집행력 확보를 하는 사무 및 기능도 있음
- 위의 3단계 과정은 신문기사 및 사례를 통해 도출한 키워드, 정부기능분류체계, 국가사무총조사 내 사무명을 검토하여 도출함(박재희 외., 2021)
  - 신문기사, 국내사례(지방자치단체 협력/갈등관리 업무 편람), 국외사례에서 키워드를 추출
  - 추출한 키워드로 협력유형-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으로 분류
  - 국가사무총조사를 통해 법령, 사무명, 사무유형 정리
-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사무 판별 기준은 정책 시급성, 협력 필요성, 협력 유용성, 사무규모임(박재희 외., 2021)
  - 정책 시급성: 법 또는 정책적으로 협력을 의무화하거나 중앙정부가 직접 협력체제 구성을 지정하는 대상이 되는 사무, 단체장 또는 지방의회가 정책적으로 결정했거나 또는 다른 중앙부처 장관의 행정명령, 권고 등에 의해 수행해야 하는 사무

- 협력 필요성: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 수행을 위해서 상호협력이 필수적인 사무
  - 협력 유용성: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규모의 경제, 비용 절감, 집행기술의 결여 등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협력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무
  - 사무 규모: 해당 사무의 행정수요의 양이 많고, 지속되는 사무
- 위의 사무 판별 단계와 판별 기준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로 광역경제권(상호의존), 인구감소, 분쟁해결, 특정 사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도출함(박재희 외., 2021)
- 광역경제권: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지방대학 육성, 광역관광 개발, 중소기업 지원
  - 인구감소: 공공의료서비스, 농어촌지역 교통서비스, 도농 인력중개서비스, 농수산물 판로 확대
  - 분쟁 해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상수원 보호 구역 관리, 공동 화장 시설 건립, 택시 영업권 조정
  - 특정 사무 수행: 지역 내 공무원 임용·교육, 가축방역 및 감염병 대응, 해양폐기물 관리, 대기환경 관리

〈표 3-8〉 행정안전부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발굴(안)

분류	특별지자체 기능(예시)	
광역경제권 (상호의존)	•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 지방대학 육성
	• 광역관광 개발	• 중소기업 지원
인구감소	• 공공의료서비스	• 농어촌지역 교통서비스
	• 도농 인력 중개 서비스	• 농수산물 판로 확대
분쟁 해결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 상수원 보호 구역 관리
	• 공동 화장시설 건립	• 택시 영업권 조정
특정 사무의 효율적 수행	• 지역 내 공무원 임용·교육 등	• 가축방역 및 감염병 대응
	• 해양폐기물 관리	• 대기환경 관리

자료: 박재희 외. 2021: 28

## □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광역사무

-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이 관장하는 사무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됨(금창호, 2018)
  - 규약에 규정된 기본수행사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특별구가 수행하는 사무로 광역에 걸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로서, 광역에 걸친 종합계획 작성, 광역계획 실시를 위한 연락조정, 광역계획의 집행 등이 포함됨(금창호, 2018: 193)
  - 상급기관에 권한 일부를 요구하는 수행사무: 1) “도도부현이 가입하는 광역연합의 장은 그 의회의 의결로 국가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광역연합의 사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해당 광역연합이 처리하기로 하도록 요청하는 것”, 2) “도도부현이 가입하지 않은 광역연합의 경우 동일한 절차로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하는 것에 의해 수행되는 사무”(금창호, 2018: 193)
  - 구성 자치단체의 별도처리요청에 의한 수행사무: “도도부현이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광역연합사무로 규정하지 않은 사무와 관련된 것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역연합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금창호, 2018: 193)
-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은 도쿄 중심의 인구 및 경제집중 현상을 해결하고 일본 광역자치단체인 부와 현의 범위를 넘어 광역 단위의 행정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2010년 12월 1일 최초로 설립된 광역연합체임(박관규·주윤창, 2021)
  - 간사이 지역은 오랜 기간 일본의 중심지라는 역사적 인식과 함께 풍부한 자연과 충실한 산업기반을 보유한 지역이나, 도쿄 중심 중앙집권으로 인해 지역의 자원 및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에 도달해 이를 해소하고자 광역연합체를 설립함(금창호, 2018)
  - 2021년 현재 간사이광역연합은 ‘2부(府) 6현(縣) 4시(市)’로 구성되어 있으며, 12개 지방자치단체의 총인구는 2,067만명(총무성, 2020년 1월 1

일 기준)임

※ 2부(府): 오사카부, 교토부

※ 6현(縣): 효고현, 도쿠시마현, 시가현,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나라현

※ 4시(市): 교토시, 오사카시, 고베시, 사카이시

〈그림 3-2〉 구성지자체 현황



자료: 홍재우 외., 2021: 19

- 간사이광역연합은 기본적으로 광역방재, 광역관광 및 문화진흥, 광역산업진흥, 광역의료, 광역환경보전, 자격시험/면허, 광역직원연수 등을 수행함
  - 간사이광역연합은 3년 단위로 광역사무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음(홍재우 외., 2021)
  - 2021년 현재 「제4기 광역계획」 추진 중으로, 11개 분야인 방재, 관광·문

화진흥, 산업진흥, 농림수산, 의료, 자격시험·면허, 환경보전, 직원연수, 스포츠, 지오파크 추진, 기획조정 등을 수행 중임(홍재우 외., 2021)

〈표 3-9〉 간사이광역연합의 수행기능

분야	사무내용
광역방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사이광역방재계획'의 책정</li> <li>• 재해발생시의 상호지원체제 강화(상호지원협정의실시요강작성운용)</li> <li>• 킨키부현 합동방재훈련의 실시</li> <li>• 방재분야의 인재육성</li> <li>• 구호물자의 공동비축 검토 실시</li> <li>• 광역적인 신종인플루엔자 대책의 검토 실시</li> <li>• 광역방재에 관한 검토 실시</li> </ul>
광역관광/문화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사이관광문화진흥계획'의 책정</li> <li>• 광역관광루트의 설정</li> <li>• 해외관광홍보 실시</li> <li>• '간사이지역한정통역안내사(가칭)'의 창설</li> <li>• '통역안내사(전국)의 등록</li> <li>• 간사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통계조사</li> <li>• 간사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표시 기준통일</li> </ul>
광역산업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사이산업비전'의 책정</li> <li>• 간사이에서의 산업클러스터 연계</li> <li>• 공설시험연구기관 연계</li> <li>• 합동프로모션 비즈니스 매칭의 실시</li> <li>• 신상품 조달인정제도의 벤처 지원</li> </ul>
광역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사이광역구급의료연계계획'의 책정</li> <li>• 광역적인 닥터헬기의 배치 및 운항</li> <li>• 광역구급 의료체제 충실의 구조화</li> </ul>
광역환경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사이광역환경보전계획'의 책정</li> <li>•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광역대응</li> <li>• 부현을 넘어서는 조수보호관리의 대응</li> </ul>
자격시험/면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리사 제과위생사에 관한 시험실시 면허교부 등</li> <li>• 중간호사에 관한 시험실시 면허교부 등</li> </ul>
광역직원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직원연수의 실시</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적인 행정추진과 관련한 정책의 기획 및 조정, 간사이의 광역적 계획의 종합조정, 교통물류 기반 정비(간사이광역교통물류기반정비계획)의 검토, 행정위원회 사무의 공동화 검토</li> </ul>

자료: 関西広域連合(<https://www.kouiki-kansai.jp/>)

### □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광역사무

- 독일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하게 광역 단위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체계는 크게 세 가지임(금창호, 2018: 131-138)
  - 주정부관구: 주정부의 중간행정관구로서, 주지사의 통솔 하에 지역의 다양한 사무를 처리함
  - 계마인데연합: 두 개 이상의 계마인데가 결합하여 자치적으로 광역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일종의 공적 연합체임
  - 란트라트: 농촌지역인 크라이스 관구의 광역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상급도농행정기관임
- 독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주정부관구, 계마인데연합, 란트라트는 서로 다른 내용의 관장사무를 수행함(금창호, 2018)
  - 주정부관구의 관장사무: 주정부의 행정사무,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조정, 관구에 속한 크라이스와 자유시에 행정적 지도와 조언 수행
  - 계마인데연합의 관장사무: 주민복리와 관련된 생존배려 사무
    - ※ 생존배려 사무: “인간의 삶을 위해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준비나 제공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담당해야 할 과업”(금창호, 2018: 143)
-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은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973년 “넥카중류광역조합”을 전신으로 하여, 1994년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 설치법에 따라 정식 출범함(홍재우 외., 2021)
  - 슈투트가르트는 오랜 기간 제조업과 수출의존형 경제구조를 유지해오다, 1991~1993년 지역의 제조업 분야의 수출이 5% 이상 감소하고 투자율이 31%까지 감소함에 따라 중소기업 도산 및 실업자 양산 등의 지역의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지역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회의를 거친 후 광역연합 설치안이 「슈투트가르트지역연합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과됨
  -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은 5개 크라이스와 173개 기초지방정부(자치시 및 계마인데)로 구성되며, 2021년 기준 인구는 약 280만 명임

※ 크라이스: Böblingen, Esslingen, Göppingen, Ludwigsburg, Rems-Murr

-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의 광역사무는 의무사무와 임의사무로 구분되며, 지역개발, 지역공원 및 녹지개발, 대중교통, 폐기물처리,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관광 등임(홍재우 외., 2021)
  - 의무사무: 지역기본계획 수립(공간이용계획, 녹지기본계획, 녹지공원계획 등), 폐기물처리(일부), 광역교통(교통계획수립, 전철·지하철·철도·광역버스 등) 운영·관리, 경제육성(산업클러스터), 관광마케팅 등
  - 임의사무: 폐기물처리(일부), 국제박람회·문화·스포츠 등의 행사유치, 사무발굴 권한 부여

#### □ 종합

- 이제까지 선행연구와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관장사무로 논의된 것은 산업경제, 교통, 물류, 재난안전, 문화관광, 교육, 보건의료, 환경, 지역개발, 경찰, 소방, 복지, 조세, 행정 및 기타 등 14개 대분야임
  - 각 대분야별 중구분과 소구분에 따라 관장사무를 구분하여 아래의 <표 3-10>로 정리함

〈표 3-10〉 1단계 검토를 통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관광사무 대상군

대구분	중구분		소구분	
	산업경제	광역산업	광역산업계획	광역산업클러스터
교통	광역고용	고용 및 기업 지원		
	광역경제	경제성장		
물류	광역교통	지역교통관리		지역교통계획
	교통물류 기반	교통물류		
재난안전	광역방재	광역방재 계획	재해발생 시 광역지원체계	합동방재훈련 광역 신종인플루엔자 계획 검토
	광역관광	지역관광 마케팅	관광단지	관광통계조사 관광통역안내 기관
문화관광	광역문화	광역문화계획		
	초중고등학교 교육	학교행정		
보건의료	광역의료	광역구급의료체계 계획		
	광역보건	식품위생(조리사, 제과위생사) 자격 시험 및 면허 교부		
환경	광역환경	지역에너지계획		
	광역대기	기후보호		기후보호
광역상하수도수질	상수도	댐		상수원보호
	광역폐기물	폐기물처리		쓰레기수거

대구분		중구분		소구분			
지역개발	광역지역계획 수립·조정·관리	광역시설관리 (지하철, 교량, 항공, 공단, 택지, 공원, 공유수면)	토지이용계획	주택건설			
경차 engchal							
소방	소방	소방					
복지	주민복지	사회연대		생의 질			
조세	관세관리	관세관리					
행정 및 기타	광역직원연수	광역행정추진	행정위원회 공동사무 검토	전산화전략	커뮤니티 개발	공설시험연구기관	

자료: 선형연구 등을 토대로 연구자 정리

## 제3절 2단계 분석을 통한 광역사무 타당성 분석

### 1. 타당성 분석 방식

#### □ 타당성 분석 기준

-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사무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은 광역성과 효율성임
  -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대부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들이 광역사무를 선정하는 데에서 주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광역성과 효율성임
  - 광역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연관된 기능 및 사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효율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사무를 수행할 때 효율성을 거둘 수 있음
- 위의 두 가지 기준인 광역성과 효율성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판별 기준을 포함함
  - 광역성: 1) 상호협력이 필요한가, 2) 분쟁조정이 필요한가
    - ※ 상호협력: 현재 협력사무가 있는가, 사업계획 상 지역 간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업이 있는가
    - ※ 분쟁조정: 갈등이 일어난 사무인가, 지역 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가
  - 효율성: 1) 규모의 경제에 해당하는가, 2) 범위의 경제에 해당하는가
    - ※ 규모경제: 둘 이상의 지역에 서비스할 때 비용이 낮아지는가
    - ※ 범위경제: 둘 이상의 연관된 기능 및 사무를 수행할 때 비용이 낮아지는가

#### □ 타당성 분석 절차

- 1단계를 통해 도출된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 대상군을 토대로 위의 광역성과 효율성을 판단하여 대구와 경북의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기에 적합한 관장사무를 도출함

- 광역성과 효율성은 각 구체적인 판별기준을 중심으로 적합도를 판정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역성을 판별하는 상호협력의 경우 현재 대구와 경북 지역이 협력하여 처리하는 사무거나 향후 협력할 계획이 있는 사무에 해당된다면 적합하다고 판단함
  - 이를 위해 현재 협력과제에 포함되거나 중장기계획을 통해 협력이 계획된 사무를 정리하여 해당 분야의 적합도를 판별하였음
  - 판별 결과, 통합 신공항, 광역교통, 광역관광, 광역문화가 해당 분야에 적합한 것으로 판별됨
- 또한 광역성 중 분쟁조정외의 경우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지역 간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난 분야에 해당된다면 적합하다고 판단함
  - 이를 위해 최근 10년(2011년-2021년) 간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일어난 갈등 사안에 대한 빅카인즈 뉴스 검색을 통해 관련 키워드를 도출함
  - ‘대구’, ‘경북’, ‘갈등’, ‘분쟁’의 네 가지 키워드 검색을 통해 도출된 뉴스 기사는 3,216건임
  - 결과적으로 빅카인즈 뉴스검색을 통해 도출된 대구와 경북의 지역 간 갈등 키워드는 통합 신공항 이전, 낙동강 취수원 및 상수원임
- 또한 효율성을 판별하는 규모의 경제과 범위의 경제 분야를 판별하기 위해 대구와 경북 지역에 걸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비용이 낮아지는지의 여부와 둘 이상의 연관된 기능 및 사무를 수행할 때 효과적인지의 여부를 판별함
  - 판별 결과 광역교통, 광역관광, 광역문화의 세 가지 분야가 적합한 것으로 도출됨

## 2. 타당성 분석

### □ 타당성 분석

- 위에서 설명한 분석방법에 근거하여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임

〈표 3-11〉 광역사무 도출 결과

대구분	중구분	광역성 적합도		효율성 적합도		종합	비고
		상호 협력	분쟁 조정	규모 경제	범위 경제		
산업경제	광역산업						
	광역고용						
	광역경제						
교통	광역교통	○		○	○	○	
물류	교통물류 기반						
재난안전	광역방재						
문화관광	광역관광	○		○	○	○	
	광역문화	○		○	○	○	
교육	초중고등학교 교육						
보건의료	광역의료						
	광역보건						
환경	광역환경						
	광역대기						
	광역상하수도수질		○				최근 환경부와 대구 간 합의 <sup>6)</sup>
	광역폐기물						
지역개발	광역지역계획 수립·조정·관리						
경찰							
소방	소방						
복지	주민복지						
조세	관세관리						
행정	광역직원연수						
기타	통합 신공항 건설	○	○			○	

### 3. 타당성 분석 결과

####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사무

- 위의 타당성 분석에 근거하여 도출된 광역사무는 광역교통, 광역관광, 광역 문화, 통합 신공항 사무임

6) 대구MBC. 2021.08.12. “해평취수원 공동이용 수용”

## 제4절 세부사무 도출을 위한 원칙과 방향

### 1.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

#### □ 사무 범위

-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 범위는 광역교통, 광역관광, 광역문화, 통합 신공항 사무에 한정함
  - 앞서 살펴본 것처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에 따라 필요로 하는 관장사무를 선정함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경우 광역연합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에 따르면 지역의 주요 사업과 생활밀착형 관장사무를 수행함으로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분야를 필요로 함
  - 따라서 현재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협력사업을 통해 수행하는 사무거나 추후 주요한 사업으로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 판별하여 광역교통, 광역관광, 광역문화, 통합 신공항 건설 사무를 포함함

### 2.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기준

#### □ 광역사무 판단 기준

- 프로젝트 기반 광역사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앞서 언급한 광역성과 효율성에 근거함
  - 광역성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걸쳐 연관된 기능 및 사무를 의미하며, 두 지역에 걸쳐 사무를 수행할 때 효율성이 높아지는 기능 및 사무를 뜻함
  - 광역성은 상호협력과 분쟁조정 필요성의 세부기준으로 구분되며, 효율성은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의 세부기준으로 구분됨

-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할 때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 광역관광, 광역문화, 통합 신공항 건설의 4가지 관장사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프로젝트 기반 광역사무 도출 이유

-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광역사무를 도출하는 이유는 사업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함임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광역연합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협력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가 뚜렷해야 함
  - 이를 위해서 해당 사업 단위와 단위별 성과 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기반의 광역사무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두 지역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광역사무를 더욱 책임감있게 수행하고, 서로 사업 수행의 권한을 조정하는 데에서도 협력 수준을 높일 수 있음
-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광역사무를 수행할 때 특별지방자치단체 내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책임성 확보 과정이 명확함
  -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는 구성 자치단체의 의회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사무 수행을 견제하며,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함
  -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 기반으로 광역사무를 수행할 때 사업 내용과 결과가 명확하여 의회의 견제에 기반한 책임성 확보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됨

## 제5절 3단계 분석을 통한 세부사무 도출

### 1. 세부 협력사무 현황

####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협력사업 계획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현재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대구경북 광역교통 철도순환망’,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및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임
  -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 대구 인근 8개 시군 대상 실시 계획
    - 환승시스템 개발비부담과 환승손실금 부담 방법 확정
  - 대구경북 광역교통 철도순환망
    - 최적의 광역교통 연계도로 및 철도순환망 구축
    - 광역경제권 연계 메가시티 모델 제시
  -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및 관광자원개발
    - 국립공원 지정건의(‘21.05)
    - 국립공원 타당성조사(‘21.06-12)
    -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22.01-03)
    - 국립공원 지정(‘22.03-06): 중앙부서 협의 및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결

〈표 3-12〉 협력계획 현황

구분	중기능	소기능	사업(과제)
교통물류	광역교통	광역철도	광역교통 철도순환망 구축
		광역환승제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시행
문화체육관광	광역관광	관광산업개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및 관광자원개발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협력사업 현황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현재 교통물류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통합신공항 건설, 광역교통, 광역관광, 문화정책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반공항건설: 대구공항 통합 이전
  - 광역철도: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도시철도 연장
  - 광역도로: 조아~동명간 광역도로 건설
  - 광역환승제: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시행
  - 관광마케팅: 대구경북 관광특별전 개최
  - 관광산업개발: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선비이야기여행 관광패스 운영, 대구경북 관광상품 성공모델 개발, 대구경북 관광통합, 대구경북 공동크루즈상품 개발
  - 문화재보존: 팔공산 석조불상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 문화정책: 한뿌리 사투리 경연대회, 문화예술사업 교류협력 추진, 대구경북 상생 시민생활체육대축전 교류참가

〈표 3-13〉 협력사무 현황

구분	중기능	소기능	사업(과제)	담당조직	
				대구	경북
교통 물류	항공 공항	일반공항 건설	대구공항 통합 이전	공항정책과	통합신공항 추진단
	광역 교통	광역철도	대구권 광역철도(1단계: 구미-경산)	철도시설과	도로철도과
			(2단계: 김천 연장)	철도시설과	도로철도과
			(3단계: 대구-경북 광역철도)	철도시설과	도로철도과
			대구도시철도 연장(1호선 하양 연장)	도시철도건 설본부/철 도시설과	도로철도과
			(1호선 금호 연장)	도시철도건 설본부/철 도시설과	도로철도과
			(3호선 동명 연장)	철도시설과	도로철도과
			(1호선 진량 연장)	철도시설과	도로철도과
			광역도로	조아~동명간 광역도로 건설	도로과
	광역 환승제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시행	버스정책과	교통정책과	

구분	증기능	소기능	사업(과제)	담당조직	
				대구	경북
문화 체육 관광	광역 관광	관광 마케팅	대구경북 관광특별전 개최	관광과	관광 마케팅과
		관광산업 개발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	관광과	관광정책과
			선비이야기여행 관광패스 운영	관광과	관광정책과
			대구경북 관광상품 성공모델 개발	관광과	관광 마케팅과
			대구경북 관광통합	관광과	관광 마케팅과
	대구경북 공동크루즈상품 개발	관광과	동해안 정책과		
	문화재보존	팔공산 석조불상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문화예술 정책과	문화유산과	
	문화정책	한부리 사투리 경연대회	문화예술 정책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사업 교류협력 추진	문화예술 정책과	문화예술과	
		대구경북 상생 시민생활체육대축전 교류참가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 2. 사무수행 실태조사를 통한 세부사무 도출

### □ 사무수행 실태조사 개요

○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사무의 세부사무를 도출하기 위해 사무수행 실태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 광역사무 내 세부사무 내역
  - 통합신공항 사업, 광역교통, 광역관광, 광역문화
- 조사내용: 대구와 경북 해당 분야 사무분장, 관련 조직, 해당 예산
- 조사방식: 전문연구진과 해당 부서 과장 검토 종합
- 조사시기: 8-9월

□ 사무수행 실태조사 과정

- 대구·경북을 대상으로 4개 분야(통합신공항 사업, 광역교통, 광역관광, 광역문화)의 담당조직 및 사무분장 내역을 정리함
- 전문연구진의 검토결과, 대구에서 4개 분야(통합신공항 사업, 광역교통, 광역관광, 광역문화)를 담당하는 조직은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철도시설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로과, 버스정책과, 관광과, 문화예술정책과이고, 해당 사무분장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14〉 대구 4개 분야 담당조직 및 사무분장 현황

관장사무	대구		
	담당 조직	사무분장	인원
통합신공항건설	통합신공항건설본부-공항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계획, 인사</li> <li>• 의회, 감사</li> <li>• 소통 관련 행사 및 사업 추진, 중앙정부 및 타시도 협력사업, 국회에 관한 사항</li> <li>•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실 및 미래공간개발본부장실 관리</li> <li>• 국서무, 예산</li> <li>• 민항활성화팀 업무 총괄</li> <li>• 통합신공항 민간단체 활동 지원 및 협력 등</li> <li>• 대구공항 활성화</li> <li>• 대외협력 업무 지원</li> <li>• 민항이전팀 업무 총괄</li> <li>• 대구 민간공항 이전</li> <li>• 통합공항(민항) 접근성 개선</li> </ul>	16
광역교통	광역철도	철도시설과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기획팀 전반에 관한 사항</li> <li>• 철도시설과 주요업무계획 수립</li> <li>• 달빛내륙철도 건설 업무추진(행사)</li> <li>• 의회, 인사, 조직에 관한 사항</li> <li>• 행정사무감사 및 국정감사 대비업무</li> <li>• 동대구역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 관련 업무</li> <li>• 대구도시철도공사 관련 민원처리 및 업무협력 전반</li> <li>• 도시철도공사 지도·감독</li> <li>• 철도재난안전 관련 업무추진</li> <li>• 구) 서대구 화물역 시유지 관리업무</li> <li>• BSC 업무 추진</li> </ul>	

관장사무	대구		
	담당 조직	사무분장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회계(지출)업무추진</li> <li>• 국비관련 업무추진</li> <li>• 기록물 관리업무, 보안</li> <li>• 일반서무(과서무)</li> <li>• 신교통정책팀 업무총괄</li> <li>• 대구권 광역철도(1단계 : 구미~경산) 건설 추진업무</li> <li>• 대구권 광역철도(2단계 : 김천~밀양) 건설 추진업무</li> <li>• 도시철도건설본부 지도·감독</li> <li>• 의회, 감사 등 보고자료 작성 등</li> <li>•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업무</li> <li>• 대구·경북 광역철도(통합신공항 경유) 건설 추진업무</li> <li>• 경부선(대구구간) 지하화 관련 업무</li> <li>• 대구권 광역철도 운영계획 및 연계교통 업무</li> <li>• 대구·경북 광역교통 철도순환망 관련 업무</li> <li>• 신교통 수단 도입 교통영향분석</li> <li>•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요 분석</li> <li>• 철도분야 사전·예비타당성조사 교통수요 예측 분석 지원</li> <li>• 신교통시스템 도시철도망 구축 업무</li> <li>• 경부고속철도변 및 측면도로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li> <li>• 도시철도 출입구 및 연결도로 지원업무</li> <li>• 철도건설팀 업무총괄</li> <li>• 달빛내륙철도 건설 업무</li> <li>• 월배차량기지 이전 업무</li> <li>• 국가철도망 구축 업무</li> <li>• 일반철도 관련 업무</li> <li>•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업무</li> <li>• 서대구역 건설 업무</li> <li>• 팀내 의회, 예산, 감사 등에 관한사항</li> <li>•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업무</li> <li>• 서대구역 진·출입 도로개설 업무</li> <li>• 월배차량기지 이전 업무</li> <li>• 교통영향평가 변경 업무</li> <li>• 실시계획 변경 승인 업무</li> <li>• 주차장부지 도시계획 변경 업무</li> <li>• 경부고속철도 복개구간 환경개선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li> <li>• 팀내 의회, 예산, 감사 등에 관한사항</li> <li>• 서대구역 건설 철도시설공단 협의</li> </ul>	

관장사무	대구		
	담당 조직	사무분장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영향평가 변경 업무</li> <li>• 실시계획 변경 승인 업무</li> <li>• 총사업비 관리 업무</li> <li>• 역사부지 매입관련 업무</li> <li>• 주차장부지 도시계획 변경 업무</li> <li>• 팀내 일반사무(팀사무)</li> </ul>	
	<b>도시철도건설본부</b>		<b>25</b>
	건설 부-건설 1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공사 업무 총괄</li> <li>• 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공사 업무</li> <li>•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공사 업무 의회, 감사, 예산관련업무</li> <li>• 1호선 안심 ~ 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1공구) 관련 업무</li> <li>• 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공사 사무업무</li> </ul>	8
	건설 부-건축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철도 정거장 건축 업무 총괄</li> <li>• 건축1팀 업무총괄</li> <li>• 도시철도건설 건축분야 총사업비 관리업무</li> <li>•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1구간) 건축관련 업무</li> <li>•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공사 설계용역 감독</li> <li>•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공사 건축분야 관련 업무 감사</li> <li>• 의회, 국회 및 기타 건축관련 업무</li> <li>•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2구간 건축분야 관련업무</li> <li>• 죽전역 서편출입구 건축분야 관련업무</li> <li>• 일반예산 관리, 통계 등</li> <li>• 과사무 및 기타 건축관련업무 등</li> </ul>	5
	기전 부-전력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철도 정거장 건축 업무 총괄</li> <li>• 건축1팀 업무총괄</li> <li>• 도시철도건설 건축분야 총사업비 관리업무</li> <li>•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1구간) 건축관련 업무</li> <li>•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공사 설계용역 감독</li> <li>•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공사 건축분야 관련 업무 감사</li> <li>• 의회, 국회 및 기타 건축관련 업무</li> <li>•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2구간 건축분야 관련업무</li> <li>• 죽전역 서편출입구 건축분야 관련업무</li> <li>• 일반예산 관리, 통계 등</li> <li>• 과사무 및 기타 건축관련업무 등</li> </ul>	7
기전 부-전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 도시철도건설 역사 전기 종합계획 수립</li> <li>• 대구 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복선전철 건설사업 : H3 정거장 일반전기공사 감리용역 및 공사감독</li> </ul>	5	

관장사무	대구		
	담당 조직	사무분장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전기)공사 1·2·3공구 발주</li> <li>: H3 정거장 소방(전기)공사 감리용역 및 공사감독</li> <li>• 대구선 하양역사 대체 신설사업 관련 업무</li> <li>• 예산, 의회, 감사, 조직관리, 성과관리 등</li> <li>• 대구 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복선전철 건설사업</li> <li>: H3 정거장 일반전기공사 감리용역 및 공사감독</li> <li>: H3 정거장 소방(전기)공사 감리용역 및 공사감독</li> <li>• 대구선 하양역사 대체신설사업 관련 업무 추진</li> <li>• 예산, 의회, 감사, 조직관리, 성과관리 등</li> <li>• 과내 서무, 재물 및 기록물 관리, 보안 관련 업무</li> <li>• 대구 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복선전철 건설사업</li> <li>: H2 정거장 일반전기공사 감리용역 및 공사감독</li> <li>: H2 정거장 소방(전기)공사 감리용역 및 공사감독</li> <li>• 죽전역 서편출입구 건설 역사전기공사, 소방(전기)공사 감독</li> <li>•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공사(전기,소방) 관련업무</li> <li>• 대구 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복선전철 건설사업</li> <li>: H1 정거장 일반전기공사 감리용역 및 공사감독</li> <li>: H1 정거장 소방(전기)공사 감리용역 및 공사감독</li> <li>: 관급자재(배전반,분전반,태양광,조명등,조명제어) 구매 관련업무</li> <li>•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공사(전기,소방) 발주 및 공사 감독</li> </ul>	
	기전부-차량신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신호과 업무총괄</li> <li>• 도시철도 차량, 검수 계획</li> <li>• 열차편성 및 운전계획 수립</li> <li>• 차량 종합구매계획 수립</li> <li>• 철도종합시험운행 계획 수립</li> <li>• 검수설비 종합구매계획 수립</li> <li>• 차량계획 설계 및 제작 감독</li> <li>• 1호선 하양연장 차량/운전분야 설계 업무담당</li> <li>• 예산, 의회, 감사에 관한 사항</li> <li>• 과 서무</li> <li>• 도시철도건설 신호분야 업무</li> <li>• 신호설비 계획 수립 신호설비 설계 및 시공 감독</li> <li>• 철도종합시험운행 계획 수립 신호설비 감리용역 업무 담당</li> <li>• 신호설비 내외자재 수급 및 관리 1호선 하양연장 기본</li> </ul>	5

관장사무	대구		
	담당 조직	사무분장	인원
		및 실시설계(신호설비분야) •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일상경비 출납 • 열차무선설비(LTE-R) 구매설치 관련 업무 • 통신분야 공정 안전 품질 등에 관한 업무 •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통신분야 설계 및 감리 감독 •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정거장 통신공사(1,3공구) 공사관리 • 역무자동화설비(AFC) 구매설치 • 출입통제설비, 행선안내게시기설비, 시각장애인 음성 안내설비 구매설치 •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통신분야 설계 및 감리 감독 •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정거장통신공사(H1) 공사 관리 • 2호선 죽전역 서편출입구 통신공사 공사관리 • 화성설비, 전자교환설비, 방송설비 관련 •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통신분야 설계 및 감리 감독 •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본선 통신공사 공사관리 •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정거장 통신공사(3공구) 공사관리 • 1호선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사업 • 행정업무용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 역무분야 기본계획 수립 • 역무자동화설비(AFC) 구매설치 관련 업무 • 시계설비 구매설치 •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통신분야 설계 및 감리 감독 • 1호선 안심~하양 정거장통신공사(H1) 공사관리 • 2호선 죽전역 서편출입구 통신공사 공사관리 • 역무자동화설비(AFC) 구매설치 • 출입통제설비, 행선안내게시기설비, 시각장애인음성안내설비 구매설치 •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통신분야 설계 및 감리 감독 •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정거장 통신공사(H2) 공사 관리 • 2호선 죽전역 서편출입구 통신공사 공사관리 등	6
	기전 부-통신과	•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1구간 기계업무 • 2호선 죽전역 출입구 기계설비업무 • 1호선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기계설비업무 •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2구간 기계업무 총괄	5

관장사무	대구		
	담당 조직	사무분장	인원
광역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호선 죽전역 출입구 소방(기계)업무 총괄 1호선 서부 정류장역 출입구 소방(기계) 업무 총괄</li> </ul>	21
	도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업무 총괄</li> <li>• 도로건설사업 재정운영 총괄</li> <li>• 일상경비 출납업무 총괄</li> <li>• 도로사업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업무</li> <li>• 주요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검토 조정</li> <li>•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업무</li> <li>• 혼잡도로 국가계획반영 및 예타 신청 업무</li> <li>• 신규, 미래 프로젝트 사업 발굴</li> <li>• 고속도로 관련 업무(하이패스IC 설치, 중부내륙지선 협의 등)</li> <li>• 과내 조직 및 인사 관련 업무</li> <li>• 고속도로 및 4차 순환도로 관련업무</li> <li>• 혼잡도로 국가계획반영 및 예타 신청 업무</li> <li>• 도로건설 설계용역관련 업무</li> <li>• 국도 확장 관련 업무</li> <li>• 광역도로 국가계획반영 및 예타 신청업무</li> <li>•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li> <li>• 시장공약, 지시사항 처리</li> <li>• 도로건설 설계용역관련 업무</li> <li>• 도로건설사업 예산편성 및 결산</li> <li>• 예산배정 및 재배정, 집행</li> <li>• 일반 세입, 지방채 관련 업무</li> <li>• 기타 도로건설과 관련된 예산업무</li> <li>• 일상경비 집행 및 결산, 봉급 및 제 수당</li> <li>• 비상대비, 보안행정, 문서(기록물) 관리</li> <li>• 일반 및 회계사무</li> <li>• 감사, 혁신관련 업무</li> <li>• 성과관리, 학습동아리 업무</li> <li>• 도로건설사업 집행계획 수립 조정 총괄</li> <li>• 도로건설사업 공정 및 사업비 관리 총괄</li> <li>• 도로건설사업 설계용역 업무 총괄</li> <li>• 도로건설사업 집행계획 수립 및 관리</li> <li>• 업무계획, 예산, 국회, 의회, 감사 관련 업무</li> <li>• 도로건설사업 투자심사 관련 업무</li> <li>•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관련 업무</li> <li>• 도로 관련 민원 처리</li> </ul>	

관장사무	대구		
	담당 조직	사무분장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건설 설계용역 관련 업무</li> <li>• 건설본부 지도 감독(예산집행, 공정관리)</li> <li>• 도시고속도로 및 4차 순환도로 교통수요 분석</li> <li>• 시가지내 주요 간선도로 교통수요 분석 및 체계개선</li> <li>• 민자도로(상인~범물, 범안로) 교통수요 분석</li> <li>•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li> <li>•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구역(교통분야) 관련 업무</li> <li>• 광역 및 혼잡도로 관련 교통분석 업무</li> <li>• 도시계획시설(도로분야) 실시계획 관련 업무</li> <li>•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관련 업무</li> <li>• 도로 관련 민원 처리</li> <li>• 도로건설 설계용역 관련 업무</li> <li>•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관련 업무</li> <li>• 도로건설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업무</li> <li>• 도로건설사업 추진사항 관리 업무</li> <li>• 도로분야 공유재산 관련 업무</li> <li>• 도로유지관리 업무 총괄</li> <li>•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 총괄</li> <li>• 도로방재 업무 총괄</li> <li>• 도로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기획 업무</li> <li>• 업무계획, 국회, 의회 관련 업무</li> <li>• 위험도로 구조개선 업무(특교세)</li> <li>• 유지관리 예산 관련 업무</li> <li>• 소송관련 업무</li> <li>• 시설공단,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예산집행 및 관리(시특법상 1,2종시설물 포함)</li> <li>• 동대구역광장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li> <li>• 도로시설물 관리이관 업무</li> <li>• 춘·추계, 명절대비, 행사관련 도로정비 업무</li> <li>• 도로굴착복구 및 차도맨홀 관련 업무</li> <li>• 안전대진단 및 지반침하 관련 업무</li> <li>• 주민제안사업 관련 업무</li> <li>• 가로등, 보안등 및 전기관련업무</li> <li>• 지하차도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업무</li> <li>• 과적차량단속 및 통행제한차량 관련업무</li> <li>• 사회재난(터널방재 등) 안전관리 업무</li> <li>• 자연재난(도로방재 등) 안전관리 업무</li> <li>• 도로통계 업무 및 성과지표</li> </ul>	

관장사무	대구		
	담당 조직	사무분장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 유지관리 및 도로표지판 업무</li> <li>• 교량, 지하도, 육교 등 구조물 유지관리</li> <li>• 유관기관 업무협약</li> <li>• 도로정비 관련 상담민원 처리</li> <li>• 도로안전시설물 및 교통안전 관련 업무</li> <li>• 민자사업(도로분야) 계획수립 및 시행 업무총괄</li> <li>• 민자사업(도로분야) 제도 관련 업무총괄</li> <li>• 유료도로 관리·운영 및 지도·감독 업무총괄</li> <li>• 도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총괄</li> <li>• 스마트도로망 구축계획 업무 총괄</li> <li>• 민자사업(도로분야) 계획, 예산, 국회, 의회, 당정협의 회, 시장지사사항, 대외협의 업무</li> <li>• 유료도로 관리·운영 업무</li> <li>• 유료도로 재정지원·부담관리</li> <li>• 민자도로 감사, 제도개선, 운영평가, 유지관리 업무 지원</li> <li>• 스마트도로망 구축계획 업무</li> <li>• 도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 지원</li> <li>• 도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li> <li>• 도로관리 정보전산화 사업계획 수립</li> <li>• 도로관리 정보실 운영계획 수립</li> <li>• 스마트도로망 구축계획 업무 지원</li> <li>• 유료도로 IT업무 지원</li> <li>• 도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 지원</li> <li>• 도로관리 정보전산화 사업계획 수립 지원</li> <li>• 도로관리 정보실 운영계획 수립 지원</li> <li>• 민자사업(도로분야) 시장지사사항, 대외협의 업무지원</li> <li>• 유료도로 관리·운영 업무 지원</li> <li>• 민자도로 제도개선, 감사 업무</li> <li>• 유료도로 통행료 심의위원회 및 통행료 관련 업무</li> <li>• 차량정보조회(감면 및 하이패스 관련) 업무</li> <li>• 유료도로 관리·운영 업무 지원</li> <li>• 도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 지원</li> <li>• 민원업무</li> <li>• 민자도로 운영평가, 시설물 점검·조사 유지관리</li> <li>• 민자도로 점용, 재산관련 업무</li> <li>• 민자도로 통계, 현황·실적관리 업무</li> <li>• 유료도로 관리·운영 업무 지원 및 팀 서무</li> </ul>	
광역환승	버스	• 버스정책팀업무 총괄	21

관장사무	대구		
	담당 조직	사무분장	인원
제	운영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업무보고 등에 관한 업무</li> <li>• 시 의회에 관한 사항</li> <li>• 시내버스 면허 및 한정면허에 관한 사항</li> <li>• 버스운송사업조합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li> <li>• 인사·근평·조직진단 및 분석, 포상 관련 업무</li> <li>• 임기제 공무원 임용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li> <li>• 확대간부회의, 시장님 티타임, 부시장 주재간부 회의</li> <li>• 언론홍보에 관한 사항</li> <li>•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등 감사 관련 업무</li> <li>• BSC, 시장공약 및 지시사항, 정책실명제 등 평가관련 업무</li> <li>• 시내버스 비상수송(파업)에 관한 사항</li> <li>• 전세버스 관련 업무</li> <li>•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등에 관한 업무</li> <li>• 대중교통 활성화 포럼 운영</li> <li>• 시내버스 외부광고에 관한 사항</li> <li>• 광역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미소친절 시내버스 노사정 실천협의회에 관한 사항</li> <li>• 시내버스 요금 및 환승체계에 관한 사항</li> <li>• 교통카드 전반에 관한 업무</li> <li>• 버스정책 계획수립 및 교통수요(교통체계) 관리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수요관리 등)</li> <li>•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정책분야)</li> <li>•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등 서비스 개선 정책에 관한 업무</li> <li>•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 교육 등에 관한 업무</li> <li>• 시내버스 디자인(색상) 관한 사항</li> <li>•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 업무</li> <li>• 시내버스 공영차고지(회차지) 조성에 관한 사항</li> <li>•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시설물 유지 관리</li> <li>• 버스전용차로 설치 계획·변경 및 교통시설물 유지관리</li> <li>•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공사분야)</li> <li>• 시내버스 비상수송(폭설, 폭우 등)에 관한 사항</li> <li>• 시내버스 지도·단속(행정처분 포함) 및 버스민원에 관한 사항(안전운행 등)</li> <li>• 시내버스 사고발생 등 각종 안전에 관한 사항</li> <li>• 시내버스 불편신고 시스템관리 및 접수 등에 관한 사항</li> <li>• 시내버스 일제점검에 관한 사항(총괄)</li> <li>• 시내버스 내·외부 차량관리(청결, 홍보물 및 부착물</li> </ul>	

관장사무	대구		
	담당 조직	사무분장	인원
		<p>등)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불편신고 민원관련 통계, 두드리스에 관한 사항</li> <li>• 사회복지무요원 복무관리 및 봉급에 관한 사항</li> <li>• 과 서무</li> <li>• 직원 봉급(수당 포함)에 관한 업무</li> <li>•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li> <li>• 세외수입(전세·시내버스 과태료) 징수보고 관련업무</li> <li>• 기록물 관리 및 직원교육훈련에 관한 업무</li> <li>• 직원 미소친절 교육 등에 관한 업무(CS 매니저)</li> <li>• 물품관리</li> <li>• 기타 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li>• 시내버스 요금 및 환승체계에 관한 지원 업무</li> <li>•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li> <li>• 시내버스 모니터단 및 분실물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li> <li>• 디지털 운행기록계 및 광역알뜰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li> <li>• 운수종사자 표창 등(운전사의 날 등)에 관한 사항</li> <li>• CNG 연료장치 관련 업무</li> <li>• 교통개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각종 행사(체육행사 등) 지원 관련 업무</li> <li>• 시내버스 교통불편신고 접수 등에 관한 사항</li> <li>• 시내버스 CCTV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li> <li>• 시내버스 모니터 내용 분석 등에 관한 사항</li> <li>• 사회복지무요원 교통불편신고 접수 교육 등</li> <li>• 준공영제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li> <li>• 희망일자리사업 지원</li> <li>• 버스운영팀 업무 총괄</li> <li>• 버스운영 관련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 준공영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li> <li>•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사항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보정에 관한 사항)</li> <li>•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지침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교통체계개선대책(교통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li> <li>• 버스운영 관련 종합계획·조정에 관한 사항</li> <li>•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재정지원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li> <li>• 운전기사 인건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li> <li>• 시의회, 각종 감사 등 팀 주요업무 자료 작성</li> <li>• 기타 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관장사무	대구		
	담당 조직	사무분장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시스템 유지 관리</li> <li>• 운송수입금(교통카드, 현금, 공동계정, 기타수입) 전산처리 (대중교통 이용현황 통계, 표준운송원가 일일 정산)</li> <li>• 현금수입금 조사 용역업체 관리</li> <li>• 기타 복리후생비(제복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li> <li>• 시내버스업체 외부회계감사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li> <li>•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보정 등에 관한 사항</li> <li>• 연료비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li> <li>•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 협상에 관한 사항</li> <li>• 운전직 인건비 산정기준 관리</li> <li>•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업무보고 등에 관한 업무</li> <li>• 시 의회에 관한 사항</li> <li>• 시내버스 면허 및 한정면허에 관한 사항</li> <li>• 버스운송사업조합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li> <li>• 인사·근평·조직진단 및 분석, 포상 관련 업무</li> <li>• 임기제 공무원 임용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li> <li>• 확대간부회의, 시장님 티타임, 부시장 주재간부 회의</li> <li>• 언론홍보에 관한 사항</li> <li>•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등 감사 관련 업무</li> <li>• BSC, 시장공약 및 지시사항, 정책실명제 등 평가관련 업무</li> <li>• 시내버스 비상수송(파업)에 관한 사항</li> <li>• 전세버스 관련 업무</li> <li>•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등에 관한 업무</li> <li>• 대중교통 활성화 포럼 운영</li> <li>• 시내버스 외부광고에 관한 사항</li> <li>• 광역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미소친절 시내버스 노사정 실천협의회에 관한 사항</li> <li>• 시내버스 요금 및 환승체계에 관한 사항</li> <li>• 교통카드 전반에 관한 업무</li> <li>• 버스정책 계획수립 및 교통수요(교통체계) 관리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수요관리 등)</li> <li>•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정책분야)</li> <li>•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등 서비스 개선 정책에 관한 업무</li> <li>•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 교육 등에 관한 업무</li> <li>• 시내버스 디자인(색상) 관한 사항</li> <li>•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 업무</li> <li>• 시내버스 공영차고지(회차지) 조성에 관한 사항</li> </ul>	

관장사무	대구		
	담당 조직	사무분장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시설물 유지 관리</li> <li>• 버스전용차로 설치 계획·변경 및 교통시설물 유지관리</li> <li>•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공사분야)</li> <li>• 시내버스 비상수송(폭설, 폭우 등)에 관한 사항</li> <li>• 시내버스 지도·단속(행정처분 포함) 및 버스민원에 관한 사항(안전운행 등)</li> <li>• 시내버스 사고발생 등 각종 안전에 관한 사항</li> <li>• 시내버스 불편신고 시스템관리 및 접수 등에 관한 사항</li> <li>• 시내버스 일제점검에 관한 사항(총괄)</li> <li>• 시내버스 내·외부 차량관리(청결, 홍보물 및 부착물 등)에 관한 사항</li> <li>• 교통불편신고 민원관련 통계, 두드리소에 관한 사항</li> <li>•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봉급에 관한 사항</li> <li>• 과 서무</li> <li>• 직원 봉급(수당 포함)에 관한 업무</li> <li>•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li> <li>• 세외수입(전세·시내버스 과태료) 징수보고 관련업무</li> <li>• 기록물 관리 및 직원교육훈련에 관한 업무</li> <li>• 직원 미소친절 교육 등에 관한 업무(CS 매니저)</li> <li>• 물품관리</li> <li>• 기타 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li>• 시내버스 요금 및 환승체계에 관한 지원 업무</li> <li>•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li> <li>• 시내버스 모니터단 및 분실물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li> <li>• 디지털 운행기록계 및 광역알뜰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li> <li>• 운수종사자 표창 등(운전사의 날 등)에 관한 사항</li> <li>• CNG 연료장치 관련 업무</li> <li>• 교통개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각종 행사(체육행사 등) 지원 관련 업무</li> <li>• 시내버스 교통불편신고 접수 등에 관한 사항</li> <li>• 시내버스 CCTV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li> <li>• 시내버스 모니터 내용 분석 등에 관한 사항</li> <li>• 사회복무요원 교통불편신고 접수 교육 등</li> <li>• 준공영제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li> <li>• 희망일자리사업 지원</li> <li>• 버스운영팀 업무 총괄</li> <li>• 버스운영 관련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 준공영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li> </ul>	

관장사무	대구		
	담당 조직	사무분장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사항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보정에 관한 사항)</li> <li>•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지침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교통체계개선대책(교통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li> <li>• 버스운영 관련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li> <li>•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재정지원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li> <li>• 운전기사 인건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li> <li>• 시의회, 각종 감사 등 팀 주요업무 자료 작성</li> <li>• 기타 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li>•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시스템 유지 관리</li> <li>• 운송수입금(교통카드, 현금, 공동계정, 기타수입) 전산처리 (대중교통 이용현황 통계, 표준운송원가 일일 정산)</li> <li>• 현금수입금 조사 용역업체 관리</li> <li>• 기타 복리후생비(제복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li> <li>• 시내버스업체 외부회계감사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li> <li>•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보정 등에 관한 사항</li> <li>• 연료비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li> <li>•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 협상에 관한 사항</li> <li>• 운전직 인건비 산정기준 관리</li> <li>• 운전직 통상임금 관련 사항</li> <li>• 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저상버스, 전기·수소버스 등)</li> <li>• 교통약자(저상버스)에 관한 사항</li> <li>•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공동구매(타이어)에 관한 사항</li> <li>• 연료비 정산 및 표준연비 산정에 관한 사항</li> <li>• 준공영제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li> <li>• 업체협의회 공동비용에 관한 사항</li> <li>• 운행계획 미준수 차량 정산에 관한 사항</li> <li>• 팀 서무</li> <li>•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노선안내책자 제작, 노선변경안내문 제작·부착 등</li> <li>• 노선개편 관련 홍보 요원 운영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li> <li>• 시의회, 각종 업무보고 등 팀 주요업무 자료 작성</li> <li>• 시내버스 노선체계개선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li> <li>• 시내버스 시계외 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li> <li>• 시내버스 사업계획변경(노선 및 운행계통)에 관한 사항</li> </ul>	

관장사무		대구		
		담당 조직	사무분장	인원
광역관광	관광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내버스 수요 대응형 노선운영계획에 관한 사항</li> <li>• 시내버스 정류소 유개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시내버스 정류소 무개승강장(버스운송사업조합)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시내버스 정류소 정차 변경에 관한 사항</li> <li>• 시내버스 정류소 조정(신설, 이전, 폐지)에 관한 사항</li> <li>• 여객자동차 터미널 업무에 관한 사항</li> <li>• 시외·고속버스 노선 협의에 관한 사항</li> <li>• 시내버스 DVR시스템에 관한 사항</li> <li>• 시내버스 내부 안내방송에 관한 사항</li> <li>•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위탁 관련 업무(대구시설공단)</li> <li>• 팀 서무</li> <li>• 시내버스 운행계획 및 배차시간에 관한 사항</li> <li>• 각종 행사 시 시내버스 노선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시내버스 운행계획·배차계획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시내버스 노선운영 관련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li> <li>• 농촌형 교통모델에 관한 사항</li> </ul>	20
	관광산업 개발	관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관광 권역별 발전계획 및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li> <li>• 주요 업무계획 수립, 각종 회의자료 및 조직·인사</li> <li>• 관광협회 및 관광단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관광자문단 및 관광정책협의회 운영</li> <li>• 중앙부처, 관광공사 등 중앙 협력사항</li> <li>• K-POP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li> <li>• 대구·경북관광 공동협력 사업 추진</li> <li>• 대구·경북 한부리 상생사업 총괄, 대구·경북관광 특별전</li> <li>• 관광재단 운영·지도감독</li> <li>• 관광정책 기획·연구조사 및 분석, 관광분야 공모사업 등</li> <li>• 국가승인 대구관광객 실태조사</li> <li>• 대구관광 빅데이터 분석</li> <li>• 열린관광지, 무장애 관광도시 기반조성 사업, 관광두레 사업</li> <li>• 관광학과 대학생 대구경북 실전여행기획 지원</li> <li>• 시의회 업무 및 감사관련 업무(국정감사 포함)</li> <li>• 지역 관광사업체 관리 및 월간 관광통계</li> <li>• 경상감영풍속재연행사 운영</li> <li>• 비영리 법인 관련 업무</li> <li>• 코로나 관련 일자리 업무</li> </ul>	

관장사무	대구		
	담당 조직	사무분장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무(주간·월중 포함) 회계, 급여</li> <li>• 예산 및 결산</li> <li>• 시장지시사항, 공약사항, 표창, 제안 등</li> <li>• 각종 평가, BSC 등</li> <li>• 국제관광기구 운영관리</li> <li>• 관광개발팀 업무 총괄</li> <li>• 관광자원개발 사업 총괄</li> <li>•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지정관련 업무 총괄</li> <li>•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KTTP)</li> <li>• 관광자원개발 사업추진(토목분야) (팔공산 관광활성화 사업, 앞산관광명소화사업, 봉우섬표공원 조성사업, 옷골마을 한류 체험관광명소화 사업, 소규모 관광인프라 개선 및 유지 관리 등)</li> <li>•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지정관련 업무</li> <li>•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추진 (3대문화대학 운영, 대구·경북 스타관광벤처 육성, 대구오딧세이 프로젝트 추진, 신신가유 프로젝트 추진, 네츄럴대구 프로젝트 추진, 3대문화형 체험기반 환경조성, 3대문화권 홍보 채널 다각화 및 홍보강화, 3대문화권 통합홍보 및 광박람회 개최)</li> <li>• 국고보조금 관리·운영(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li> <li>•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KTTP) 사업 총괄 (분야별 사업 관리[모니터링, 관리카드 운영], 포상[KTTP 우수 추진 사업 관련 공무원, 민간인])</li> <li>• 대구시티투어·근교권 투어 운영 및 관리</li> <li>• 대구시티투어 활성화 공모사업</li> <li>• 관광스토리텔링 관련사업</li> <li>•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li> <li>• 노태우 전.대통령 생가 관라운영</li> <li>• 관광자원개발 사업추진(낙동가람수변 역사 누림길 조성 사업)</li> <li>• 유원시설 안전점검 등 재난관리 업무</li> <li>• 소규모 관광객 편의증진 사업(주민제안사업)</li> <li>• 전통한옥 숙박체험 시설 개보수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li> <li>• 팀내 서무업무</li> <li>• 관광마케팅 업무 총괄</li> <li>• 국내관광객 유치 마케팅 계획(버스, 내일로 등상품개발)</li> </ul>	

관장사무	대구		
	담당 조직	사무분장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인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사업 운영</li> <li>• 여행주간 추진, 대구관광 SNS홍보관리(국내)</li> <li>• 대구 관광마케팅 공모전</li> <li>• 국내여행사세일즈, 설명회, 관광 아카이브시스템관리</li> <li>• 한국관광의 별, 관광 100선 발굴 추진 등 관광지 발굴</li> <li>• 국내관광마케팅 사업 위탁금 집행 및 관리</li> <li>•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계획 수립</li> <li>• 해외관광마케팅 신규 사업 발굴 및 마케팅 기획</li> <li>•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li> <li>• 중국, 동남아, 구미주 관광객 유치·홍보</li> <li>• 특수목적(S.I.T)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유치</li> <li>• Visit in Daegu 홍보, 해외 현지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li> <li>• 스카이TV 공동 협력사업(3대 문화)</li> <li>• 해외관광마케팅 사업 위탁금 집행 및 관리(관광재단)</li> <li>• 중화권(대만, 홍콩), 일본 관광객 유치·홍보</li> <li>• 글로벌 관광 육성 사업 추진</li> <li>•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지원 사업 운영</li> <li>• 해외 대구관광 홍보사무소 운영</li> <li>• 지역 인바운드 여행사 육성 및 전담가이드 양성</li> <li>• 중화권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SNS 채널 관리(해외)</li> <li>• 코리아토탈패키지(KTTP) 사업 추진(문체부 공모사업) (관광항공협력사업, 공연관광, 농촌관광, 방한외교네트워크)</li> <li>• 해외 현지 관광마케팅 사업 보조사업 집행 및 관리(관광협회)</li> <li>• 국내관광박람회, 대구-광주 달빛투어 교류사업 운영</li> <li>• 대구관광 스태มป์트레일 사업, 테마10선 사업 추진</li> <li>• 대구국제바디페인팅축제</li> <li>• 교통 홍보매체 및 관광홍보판 활용 대구관광홍보</li> <li>• 관광안내지도·책자 제작, 관광콘텐츠 홍보마케팅</li> <li>• 대구관광(색다르) 홍보</li> <li>• 골목스튜디오보조 및 그 외 취재 지원</li> <li>• 팀내 사무업무</li> <li>• 관광서비스 개선팀 업무 총괄</li> <li>• (찾아가는)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li> <li>• 관광정보센터 위탁 및 운영</li> <li>• 관광기념품 공모전 지원 및 우수 관광기념품 홍보</li> </ul>	

관장사무	대구		
	담당 조직	사무분장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관광알리미 운영</li> <li>• 대구관광 수용태세 총괄 관리, 지원</li> <li>• 관광서비스개선사업 추진 (스마트 쇼핑관광 사업, 관광지 와이파이,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구축, 즉시환급사 후면세점, 모바일결제시스템 구축, 숙박 서비스 환경 개선, 친절여행상점, 현대 서비스 등)</li> <li>• 대구관광 홈페이지(트립로드), 공항영상시스템 운영</li> <li>• 관광서비스개선사업 추진 (관광교통 편의성 제고( 시내 버스 안내기 설치) 사업, 관광교통 안내체계 등 서비스 개선, 외국인관광객 전문식당, 한식관광 클러스터 구축 / 한식체험 산업 육성)</li> <li>• 관광형 플랫폼 택시 운영</li> <li>•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팔공산 산중전통장터「승시」추진</li> <li>• 팀내 서무업무</li> </ul>	
문화정책	문화 예술 정책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주요 시책사업(현안) 및 주요 업무계획 수립</li> <li>• 인사·조직 관련 업무</li> <li>• 국정과제 및 국정감사</li> <li>• 간부회의, 티타임 회의자료 작성</li> <li>• 문화중장기발전계획 수립(지역문화진흥 포함)</li> <li>• 제야의 타종 행사</li> <li>• 총괄방역대책단 회의 총괄</li> <li>•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 관련 업무</li> <li>•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관 조성</li> <li>• 대구시민주간 운영</li> <li>• 대구문화재단 운영지원·지도감독, 구·군 문화재단 관련 법인 업무</li> <li>• 문화창의포럼 및 문화상</li> <li>• 신천지 후속관리 및 종교 소송 관련</li> <li>• 종교단체 및 종교행사 총괄 (종교 관련 보조금 사업[형 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li> <li>• 2.28민주운동기념사업 관련 업무</li> <li>• 종교시설 방역계획 수립(거리두기 단계별 대응)</li> <li>• 홍보관계관 회의(보도자료 작성 등)</li> <li>• 국 예산편성(투융자심사 등) 및 결산업무</li> <li>• 재정토론회, 주민참여 예산</li> <li>• 국회 및 시의회 관련 업무</li> <li>• 국비예산·언론예산 업무</li> </ul>	35

관장사무	대구		
	담당 조직	사무분장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달빛동맹 업무 총괄</li> <li>• 감사평가(정부합동평가, 행정사무감사)</li> <li>• 문화예술 통계관련 업무</li> <li>• 종교 법인 허가 관련</li> <li>• 종교 관련 보조금 사업(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제외)</li> <li>• 국 서무, 회계, 봉급 및 제수당</li> <li>• 보안 및 비상대비 업무</li> <li>• 시장지시사항 및 공약사항 관리</li> <li>• 지역방역 일자리 운영</li> <li>• 방역물품 관리</li> <li>• 예술진흥업무 총괄</li> <li>•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li> <li>• 해외 창의도시 네트워크 강화 관련 업무 (글로벌 포럼 운영, 연례행사 및 회의 유치 관련 마케팅)</li> <li>• 창의도시 생태계 구축</li> <li>•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련 업무</li> <li>• 유네스코 창의도시 총괄보고서 작성</li> <li>• 예술단체연합회(예총,민예총)사업 및 운영 지원</li> <li>• 창작공간 활성화 및 확충(이현비축기지)</li> <li>• 예술진흥분야 문화재단 위탁사업 총괄 (기초예술, 문화 예술특성화, 청년예술가육성, 랜선 문화예술프로젝트)</li> <li>• 문화예술회관, 대구콘서트하우스 지도·감독</li> <li>• 팀 내 주요업무 및 시책사업</li> <li>• 예술장르(미술, 사진, 건축)단체 및 전시분야 사업지원 (대구아트스퀘어 운영, 미술품 대여사업)</li> <li>• 무용단체 사업 및 행사지원 (대구무용제, 대구국제무용제, 세계안무페스티벌)</li> <li>• 이인성고택 복원사업</li> <li>• 대구미술관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li> <li>• 가창 창작스튜디오 운영</li> <li>• 예술장르(국악,연예,가수)단체 사업지원</li> <li>• 예술인 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술인복지 관련업무</li> <li>• 대구예술발전소 총괄 운영 및 지도감독</li> <li>• 수창청춘맨손 운영 및 이육사 고택 관련 업무</li> <li>• 구궁 문화시설 운영 지원</li> <li>• 지방문화원(연합회)운영 및 사업지원</li> <li>• 예술장르(문학)단체 사업 및 행사 지원</li> <li>• 대구문학관 운영 지도·감독</li> </ul>	

관장사무	대구		
	담당 조직	사무분장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상화·서상돈 고택관리</li> <li>• 문화예술인물 가치 확산 사업</li> <li>• 우수공연·전시 지원사업</li> <li>• 예술진흥분야 문화재단 위탁사업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문화기획자 양성, 찾아가는 문화마당)</li> <li>• 청년정책관련 업무</li> <li>• 예술장르(음악)단체 사업 및 행사 지원</li> <li>• 음악축제 추진 (재즈페스티벌, 세계합창축제, 관악축제 등)</li> <li>• 범어아트스트리트 운영 관련 업무</li> <li>• 비영리법인 허가 및 지도감독, 전문예술단체 지정</li> <li>• 팀내 예산 및 서무</li> <li>•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관련 업무 (자문위원회(실무협의회) 운영, 국내외 창의도시 간 교류사업)</li> <li>• 창의도시간 업무연락 담당자,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 제작관리</li> <li>• 유네스코 음악도시 지위유지 평가</li> <li>• 2024세계관악제, 포크페스티벌</li> <li>• 생활문화팀 업무 총괄</li> <li>• 동호회 활동 지원 및 육성</li> <li>• 생활문화센터에 관한 사항</li> <li>• 문화가 있는 날 운영(정부합동평가, 구·군 상생협력지수)</li> <li>• 문화예술교육 활성화</li> <li>• 지역기반 특화문화 발굴 및 진흥</li> <li>• 문화권에 관한 사항 (문화영향평가 포함)</li> <li>• 생활문화 교류 협력 증진 (동아시아 문화도시)</li> <li>• 국어발전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부합동평가)</li> <li>• 교화사업 (향교, 유도회, 담수회, 유림회)</li> <li>•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박약회)</li> <li>• 차문화 계승 및 발전</li> <li>• 장애인 및 문화소외계층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부합동평가)</li> <li>• 생활문화 관련 법인·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li> <li>• 팀 서무</li> <li>• 문화예술아카이브팀 업무 총괄</li> <li>• 문화예술아카이브 구축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li> <li>• 예산, 팀 내 주요업무 및 시책사업</li> <li>• 수장고(소장품) 유지 운영 관리</li> <li>• 시립예술단 자료 납본 관리</li> </ul>	

관장사무	대구		
	담당 조직	사무분장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자료운영 심의위원회 운영</li> <li>• 문화기관, 구·군 문화재단 아카이브 자료 납본 관리</li> <li>• 원로 예술인 기록화 사업 진행</li> <li>• 열린 수장고 운영</li> <li>• 아카이브 기획 전시 진행</li> <li>• 대구문화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보안 및 관리</li> <li>• 월간 대구문화 발간(문학, 예술인 활동 자료수집 집필)</li> <li>• 기간제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li> <li>• 대구문화 제작/편집/발간/배부</li> <li>• 대구문화 광고 담당</li> <li>• 대구문화편집위원회 운영</li> <li>• 대구미술관 및 관내 전시 기관단체 자료 납본 관리</li> <li>• 아카이브 기획 전시 진행</li> <li>• 열린 수장고 콘텐츠 전시 기획</li> <li>• 팀 서무</li> <li>• 월간 대구문화(공연행사, 예술인 활동 자료) 제작 편집</li> <li>• 정기구독자 관리</li> <li>• 대구문화 블로그 콘텐츠 제작</li> <li>• 대구문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콘텐츠 제작/운영</li> <li>• 월간 대구문화 디지털 아카이브 관리</li> <li>• 문화시설 업무 총괄</li> <li>• 문화 시설관련 주요 시책사업 추진</li> <li>• 의회 및 감사관련 업무</li> <li>• 문화시설 조성 관련 업무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공사, 시립박물관 건립 전반)</li> <li>• 문화시설 조성관련 업무 (전시계획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작품수집 및 관리 계획 수립, 유물 전시 및 수집계획 수립)</li> <li>• 동상·기념비·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 관련 업무</li> <li>• 박물관·미술관 등록 업무</li> <li>• 대구간송미술관 전시종합계획 수립</li> <li>• 서울 간송미술관 소장유물조사 등 업무 협의</li> <li>•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관련 업무</li> <li>• 문화시설 조성 관련 업무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전반)</li> <li>• 대구미술관 소송 관련 업무</li> <li>• 문화시설 조성 관련 업무 (대구생활문화센터 조성 공사,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국비], 구·군 문예회관 건립지원[국비])</li> </ul>	

관장사무	대구		
	담당 조직	사무분장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관련 업무</li> <li>• 문화시설 안전점검 관련 업무</li> <li>• 담당 내 서무업무</li> <li>• 문화재 보존관리 업무전반</li> <li>• 감사</li> <li>•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및 수리 시행계획 수립</li> <li>• 건조물 문화재 지정관리 및 현상변경관련 업무</li> <li>• 국가지정문화재 수리보수</li> <li>• 시지정문화재 수리보수</li> <li>• 전통사찰 보수·정비</li> <li>•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마련 총괄</li> <li>• 문화재 수리업, 기술자 관련</li> <li>• 문화재 지정보호구역(GIS) 관련</li> <li>• 의회 및 조례</li> <li>• 법인관련 업무</li> <li>• 달성토성보존정비사업 추진</li> <li>• 경상감영복원정비 사업</li> <li>• 동산문화재 지정관리 및 현상변경관련 업무</li> <li>• 문화재위원회 위촉 및 운영</li> <li>• 기념물문화재 지정관리 및 현상변경관련 업무</li> <li>• 무형·민속문화재 지정 관리</li> <li>•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지원</li> <li>• 매장문화재 관련 업무</li> <li>• 디지털대구문화대전편찬(시사편찬 관련) 및 공무원 운영·관리</li> <li>• 한국민속예술축제(전국청소년예술제) 업무</li> <li>• 세계문화유산 한국의서원 보존·관리사업</li> <li>• 연경서원 관련 용역</li> <li>• 문화재 재난방재 업무</li> <li>• 문화재 돌봄사업, 감시인력</li> <li>• 문화재 매매업, 도난, 지킴이</li> <li>• 문화재 활용사업 및 지역문화유산교육 업무</li> <li>• 공유재산관련 업무</li> <li>• 문화재 안내판 사업</li> <li>• 문화재 스마트CCTV구축 사업</li> <li>• 전통사찰 관련업무(지정·해제 등 행정관련)</li> <li>• 계 서무</li> </ul>	

- 경북에서 4개 분야(통합신공항 사업, 광역교통, 광역관광, 광역문화)를 담당하는 조직은 통합신공항추진단, 도로철도과, 도시재생과, 교통정책과, 관광마케팅과, 관광정책과, 동해안정책과, 문화유산과, 문화예술과이고, 해당 사무분장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15〉 경북 4개 분야 담당조직 및 사무분장 현황

관장사무	경북		
	담당조직	사무분장	인원
통합신공항	통합신공항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홍보·소통계획 수립</li> <li>• 타시도 신공항관련 여론 및 동향관리(정책토론회, 포럼, 간담회 등)</li> <li>• 중앙정부·타시도 공조체제 구축 및 협력강화</li> <li>• 이전지역 주민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통합신공항 기본구상,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조정 및 협의</li> <li>• 통합신공항 건설공사 업무 협의 및 지원</li> <li>• 경상북도 항공정책 자문위원회 운영</li> <li>• 항공정책기본계획 및 공항개발종합계획 협의</li> <li>• 민항 터미널 계획 및 스마트공항조성 계획 협의</li> <li>• 통합신공항 구역내 조경 및 산지관리업무에 관한 사항</li> <li>• 민항청사 운영 관련 업무 협의 등</li> <li>•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국비 확보 및 업무 협의</li> <li>• 통합신공항 배후도시(항공클러스터, 산업단지) 구상 및 개발에 관한 사항</li> <li>• 통합신공항 광역교통망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li> <li>• 통합신공항 배후도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협의</li> <li>• 통합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 추진</li> <li>• 통합신공항 관련 각종 영향평가(소음, 환경, 교통 등) 협의 및 추진</li> <li>• 통합신공항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li> <li>• 항공물류 확대 및 물류단지 활성화 계획 수립</li> <li>• 물류단지 이용 운송업체 유치 등 업무 협의</li> <li>• 통합신공항 배후도시 및 광역교통망 관련 각종 영향평가 및 용역 지원</li> <li>•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li> <li>•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방도 사업 관련 업무</li> </ul>	15

관장사무	경북		
	담당 조직	사무분장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개발행위 및 부동산거래허가 제한 등</li> <li>• 울릉공항 건설을 위한 국비 확보 및 업무 협의</li> <li>• 울릉공항 건설 지원 및 공항주변 개발계획 수립 등</li> <li>• 지역항공사 설립에 관한 업무</li> <li>• 지방공항 활성화에 관한 사항(포항, 울진, 예천, 울릉)</li> <li>• 군 공항 및 지방공항 소음 관련 업무</li> <li>• 군 공항 소음영향도 조사 및 보상 관련 업무</li> <li>•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업무 협의</li> <li>• 지방공항과 연계한 항공산업 유치 계획 수립</li> <li>• 항공레저산업 활성화 방안, 이착륙장 조성 업무 등</li> <li>• 항공기 관련 재난(사고) 업무 등</li> <li>• 그 밖에 공항건설 지원에 관한 사항</li> </ul>	
광역교통	광역철도	도로 철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사용·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지도</li> <li>• 도로공사 편입용지 보상 및 소유권이전 등기</li> <li>• 도로건설공사용 자재의 수급 및 관리</li> <li>• 도로사업 예산집행 및 결산</li> <li>• 국도·지방도 체불용지 보상</li> <li>• 구 국도관리 이관업무</li> <li>• 철도부설 관련 업무(도시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li> <li>• 건설기계사업자 및 현황관리</li> <li>•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 관리</li> <li>• 건설기계 검사업무 지도</li> <li>• 소형 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 관리</li> <li>• 건설기계 등록·조종사 면허 관리 등 지도</li> <li>• 건설동원(건설기계) 업무</li> <li>• 지방도 도로시설 종합개발계획 수립시행</li> <li>• 지방도 측량, 설계, 지도감독</li> <li>•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개설 및 확·포장</li> <li>• 건설사업소 지방도 정비사업 지도·감독</li> <li>• 교통량 조사</li> <li>• 도로망의 입안고시 및 도로구역 결정</li> <li>• 중앙부처 도로사업의 업무협의</li> <li>•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li> <li>• 도로 및 교량현황 조사</li> <li>• 군도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변경 지도감독</li> <li>• 군도사업 계획수립 및 변경, 지도감독</li> <li>• 군도 노선인정, 폐지 및 변경지도</li> </ul>	22

관장사무	경북		
	담당 조직	사무분장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도로사업 중장기 계획수립 및 변경 지도감독</li> <li>•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지도감독</li> <li>• 농어촌도로 노선 인정, 폐지 및 변경지도</li> <li>• 지방도 도로유지보수에 관한 종합계획</li> <li>• 도로재해대책</li> <li>• 노후위험교량 개·보수계획</li> <li>•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계획 수립·시행</li> <li>•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계획 수립·시행</li> <li>•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계획 수립·시행</li> <li>• 접도구역 보호관리</li> <li>• 운행제한차량(과적차량) 업무 지도감독</li> <li>• 지방도상 우회도로사업</li> <li>• 도로제설 및 교통소통대책 수립·추진</li> <li>• 도로표지판 설치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li> <li>• 지방도로사업 피해복구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li> <li>• 지방도 사용개시 및 폐지</li> <li>• 도로횡단구조물 관리</li> <li>• 철도건널목 사업</li> <li>• 교량 안전점검 업무</li> <li>•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 도로사업 지도감독</li> <li>• 위임국도 관련 업무협의</li> <li>• 위임국도 노선 및 교량·터널 현황관리</li> <li>• 비관리청 도로공사(위임국도) 시행허가</li> <li>• 위임국도 도로사용·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지도</li> <li>• 도로공사 편입용지 보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li> <li>• 위임국도 체불용지 보상</li> <li>• 위임국도 개설 및 확·포장</li> <li>• 위임국도 교통량 조사</li> <li>• 위임국도노선 도로구역 결정</li> <li>• 위임국도노선 도로 및 교량현황 조사</li> <li>• 위임국도 도로재해대책</li> <li>• 위임국도노선 노후위험교량 개·보수계획</li> <li>• 위임국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계획 수립·시행</li> <li>• 위임국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계획 수립·시행</li> <li>• 위임국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계획 수립·시행</li> <li>• 위임국도노선 운행제한차량(과적차량) 단속 및 지도감독</li> <li>• 위임국도 도로제설 및 교통소통대책 수립·추진</li> <li>• 위임국도노선 도로표지판 설치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li> </ul>	

관장사무	경북		
	담당 조직	사무분장	인원
광역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임국도노선 피해복구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li> <li>• 위임국도노선 사용개시 및 폐지</li> <li>• 위임국도노선 도로횡단구조물 관리</li> </ul>	25
	도시 재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li> <li>• 지역개발사업 조사, 발굴, 연구 용역</li> <li>•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변경 심의</li> <li>• 지역개발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li> <li>•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안정화 조치</li> <li>• 지역개발사업 준공검사</li> <li>• 지역개발사업 공사 중지 및 지정취소 등 조치</li> <li>• 거점형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 시행·감독</li> <li>• 낙후형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 시행·감독</li> <li>•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및 해제</li> <li>• 지역개발사업 평가</li> <li>•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성·운영</li> <li>•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 예산 편성·지원</li> <li>• 지역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활성화 및 지원</li> <li>•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li> <li>• 성장축진지역 낙후도 조사 및 지정 요청</li> <li>• 지역개발사업 민자유치계획 수립·시행</li> <li>• 지역개발사업 측량·설계·시공 감독</li> <li>• 지역활성화지역 및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li> <li>• 발전축진형 및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의 수립·변경</li> <li>• 낙후지역 발전 특별회계 운영</li> <li>• 지역개발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li> <li>•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의제협의회 운영</li> <li>• 도시재생 정책 발굴, 조례 규칙 제정</li> <li>•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승인</li> <li>•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승인</li> <li>•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li> <li>•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한 사항</li> <li>•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한 사항</li> <li>• 도시활력증진사업에 관한 사항</li> <li>•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 및 변경 지정</li> <li>•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변경 지정</li> <li>• 도시재생 인정사업 관한 사항</li> <li>•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관한 사항</li> <li>•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관한 사항</li> </ul>	

관장사무	경북		
	담당 조직	사무분장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관한 사항</li> <li>• 도시재생 관련 타부처 협력사업 관리</li> <li>• 공업지역 재생 및 활성화사업 관한 사항</li> <li>• 특별재난지역 재생에 관한 사항</li> <li>• 도시재생관련 빈집정비사업 추진</li> <li>•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발굴</li> <li>• 건설공사·건설기준 기술심의 및 사후관리</li> <li>•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li> <li>•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li> <li>•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운영</li> <li>•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li> <li>•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관리 및 행정처분</li> <li>• 건설기술자 행정처분</li> <li>•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용</li> <li>•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관리</li> <li>•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에 따른 국고귀속 및 시군 징수교부금 관리</li> <li>• 광역도로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혁신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li> <li>• 혁신도시내 이주대책 계획수립 및 추진</li> <li>•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원</li> <li>• 혁신도시내 공공기관이전 성과 공유 및 갈등 관리</li> <li>•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이전 행재정적 지원</li> <li>• 각종 영향평가 및 기반시설조성 지원</li> <li>• 혁신도시내 발전계획수립 및 추진</li> <li>•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사항</li> <li>•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에 관한 사항</li> <li>• 혁신도시 상생발전사업에 관한 사항</li> </ul>	
광역 환승제	교통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교통 종합계획 검토 및 조정</li> <li>•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업무</li> <li>•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li> <li>• 특별교통 수송대책 수립 및 추진</li> <li>• 총무 교통시행 계획 및 동원자원 조사 관련 업무</li> <li>• 시외버스 재정지원 및 인면허 등 관리</li> <li>•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대여자동차에 관한 업무</li> <li>• 교통단체 및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운영 관리</li> <li>• 도시교통정비계획 관련 업무</li> </ul>	15

관장사무	경북		
	담당 조직	사무분장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li> <li>•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li> <li>• 교통약자(어린이, 노약자) 교통안전대책 수립</li> <li>• 중대 교통사고 대책 수립 및 관라운영</li> <li>• 운수업체 교통안전점검 및 진단</li> <li>• 교통사고 줄이기 관련 시책추진</li> <li>• 교통연수원 지도 및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li> <li>• 불법 주·정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li> <li>• 교통약자 등 도민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li> <li>•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관리</li> <li>•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li> <li>• 지능형교통체계(ITS) 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대규모 개발사업의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수립</li> <li>• 복합환승센터 지정 및 실시계획 관련 업무</li> <li>• 삭도·궤도사업 관련 업무</li> <li>•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li> <li>• 자동차 등록 관련 업무</li> <li>• 자동차검사 및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에 관한 업무</li> <li>•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업무</li> <li>• 경상북도 물류정책위원회 운영</li> <li>• 자동차 손해배상보장 관련 업무</li> <li>• 물류단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관련 업무</li> <li>• 불법자동차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li> <li>• 택시총량제 시행계획 수립 및 택시감차위원회 운영</li> <li>•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li> <li>• 교통안전우수사업자 지정에 관한 업무</li> <li>•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관리 업무</li> <li>•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관련 업무</li> <li>• 친환경 자동차 관련 업무</li> <li>•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 관련 업무</li> <li>•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지도·감독</li> <li>• 지역물류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li> <li>•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물류단지지원센터 운영</li> <li>• 교통사고 예방 관련 협의체 등 운영</li> <li>• 행락철 교통안전 합동 점검</li> <li>• 교통사고(지하철, 철도) 행동 매뉴얼 작성·추진</li> </ul>	

관장사무		경북		
		담당 조직	사무분장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추진</li> <li>• 교통안전 홍보 등 예방캠페인 업무</li> <li>•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li> <li>• 교통안전관리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li> <li>•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li> <li>•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경찰청 협업 업무</li> <li>•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업무</li> <li>• 공항버스 등 한정면허 운영 관리</li> <li>• 시외버스 경영수지분석 시스템 운영 및 검증용역</li> <li>•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관련 업무</li> <li>• 도청신도시 운행 시내·외버스 결손지원</li> <li>• 수요응답형버스, 농촌형·공공형 택시 운영·관리</li> </ul>	
광역관광	관광 마케팅	관광 마케팅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마케팅 종합기획 및 조정</li> <li>• 관광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관광통계관리</li> <li>• 시·군 관광협의체 운영</li> <li>• 관광협회 지원</li> <li>• 관광품질인증제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li> <li>• 관광콘텐츠(상품)개발</li> <li>• 테마별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지원</li> <li>• 국내·외 전담여행사 지정 및 운영</li> <li>• 국내·외 언론, 여행사 등 팸투어</li> <li>• 관광객유치 이벤트 기획·지원</li> <li>• 관광열차 운영 및 상품개발, 홍보사업</li> <li>• 국내외 관광박람회 및 관광홍보설명회</li> <li>• 외국인 관광객유치 교류증진</li> <li>•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광고</li> <li>• 관광안내소 및 해외홍보사무소 운영</li> <li>• 지역문화관광축제 및 경상북도우수축제 육성 및 지원</li> <li>• 전통예술상설공연 육성 및 지원</li> <li>• 마이스 산업 육성 및 지원</li> <li>• 한스테이사업 육성 및 지원</li> <li>• 한류문화특별이벤트 기획 및 지원</li> <li>• 야간관광상품개발 및 운영</li> <li>• 국내외수학여행상품개발 및 지원</li> <li>•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관리</li> <li>• 관광주간 운영</li> <li>• 중국홍보사무소 운영</li> </ul>	17

관장사무	경북		
	담당 조직	사무분장	인원
관광산업 개발	관광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북나드리홈페이지 관리·운영</li> <li>관광정책 종합기획 및 조정</li> <li>권역별 관광종합계획 및 소프트 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추진</li> <li>시·군 관광산업 조정·지원 및평가 인센티브제 관리</li> <li>관광두레 사업</li> <li>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li> <li>영호남 관광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li> <li>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지원</li> <li>관광의 날 기념식에 관한 사항</li> <li>관광아카데미 운영</li> <li>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지원·관리</li> <li>중·장기 관광개발계획 수립</li> <li>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li> <li>관광포럼 및 각종위원회 운영 등</li> <li>문화관광 자원개발</li> <li>생태·녹색 및 테마체험 관광자원개발</li> <li>민간투자활성화 및 민간자본유치</li> <li>관광특구 육성·관리</li> <li>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li> <li>관광지 지정·조성 및 개발 사업</li> <li>전통한옥 관광자원화</li> <li>국민여가캠핑장 조성</li> <li>유원시설업·한옥체험업 자동차야영장업 지도 및 관리</li> <li>관광명소 및 관광휴양촌 개발</li> <li>레저산업 유치·육성 등</li> <li>3대 문화권 개발사업</li> <li>중부내륙권 개발사업</li> <li>광역관광개발사업 등</li> </ul>	15
	동해안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해안정책 기획 및 조정</li> <li>동해안 정책포럼, 워크숍 및 교육 추진</li> <li>환동해경제권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li> <li>미래경북전략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li> <li>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li> <li>동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추진상황 관리</li> <li>동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선도·시범사업 추진</li> <li>해양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li> <li>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li> </ul>	18

관장사무	경북		
	담당 조직	사무분장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운영</li> <li>• 해양과학기술 기반구축 사업</li> <li>•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li> <li>• 해양과학 교육 및 인재 육성</li> <li>• 해양수산 연구기관 및 기업유치 지원</li> <li>• 해양수산분야 4차산업 대응</li> <li>• 동해안 차세대 해양먹거리 자원 발굴 지원 및 산업화</li> <li>• 해양기술·장비 개발 및 신기술 인증 지원</li> <li>• 해양신산업 육성 포럼운영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li> <li>• 경북씨그랜트 업무 운영·지원</li> <li>•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련 업무</li> <li>•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관련 업무</li> <li>• 해양심층수 수입제조업 허가 및 관리</li> </ul>	
문화정책	문화유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유산관련 정책 및 업무계획 수립·조정 총괄</li> <li>•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li> <li>• 고도보존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li> <li>• 신라문화권 사업에 관한 사항</li> <li>• 서원·향교·누정에 관한 사항</li> <li>•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li> <li>• 문화재 재해·재난대책 및 안전점검 수립·시행</li> <li>•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 지원</li> <li>• 근대 문화유산 보존 관리</li> <li>• 문화재 관련 국유재산 관리</li> <li>• 도난·도굴 등 문화재사범 단속</li> <li>• 문화재 명예관리인 및 행정모니터제 운영</li> <li>• 문화재 관련법인 설립허가 및 육성지원</li> <li>• 문화재에 준하는 향토유물, 유적지 보존관리</li> <li>• 문화재보수·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조사</li> <li>•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설계승인 및 기술지도</li> <li>•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허용기준안 마련</li> <li>• 문화재 수리업체 및 기술자 등록 관리</li> <li>• 문화재 수리공사에 대한 평가 및 운영</li> <li>• 건축문화재 조사·보호 및 관리</li> <li>• 문화재 지정·해제·보호구역 관리</li> <li>• 문화재 수리현장 안전점검</li> <li>• 문화재 관련 법규 위반사항의 지도 단속</li> <li>• 세계유산 정책수립 및 등재 업무</li> <li>• 세계유산위원회 운영</li> </ul>	23

관장사무	경북		
	담당 조직	사무분장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 추진</li> <li>• 세계유산센터 건립</li> <li>• 동산문화재의 조사·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개발 운영</li> <li>• 중가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li> <li>• 중가문화 사업계획 수립·시행</li> <li>• 우리문화재찾기 관련업무</li> <li>• 문화재 촬영 및 탁본 허가</li> <li>• 무형문화재 조사·보호 및 관리</li> <li>•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li> <li>• 무형문화재 활용프로그램 개발 운영</li> <li>• 천연기념물(기념물)문화재 조사·보호 및 관리</li> <li>• 천연기념물(기념물) 활용프로그램 개발 운영</li> <li>• 천연기념물(기념물) 유지보수 사업</li> <li>• 독도 천연보호구역 입도 및 현상변경허가</li> <li>• 문화재연구원 지원 및 관리감독</li> <li>• 문화재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관리</li> <li>• 문화재 통계 관리</li> <li>• 매장문화재 지표·시굴·발굴조사</li> <li>• 타 부서 문화재분야 의견 협의</li> <li>• 가야사 조사연구 및 정비계획 수립</li> <li>• 가야문화권 발굴조사 및 복원정비사업 추진 등</li> </ul>	
	문화 예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 문화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li> <li>• 전통문화·민속놀이 계승발전 및 지역문화의 발굴 육성</li> <li>• 우리말과 우리글에 관한 업무</li> <li>• 문화단체, 문화원 지원 및 지도</li> <li>• 문화기획 관련 업무</li> <li>• 장계향 현창사업 관련 업무</li> <li>• 민속사료 및 각종 문화예술 자료 연구 편찬</li> <li>• 경상북도 문화상에 관한 업무</li> <li>• 국·내외 문화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li> <li>• 전시 문화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li> <li>• 한국국학진흥원 지원 및 육성</li> <li>•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 지역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li> <li>• 지역 전통예술 발굴 육성 및 지원</li> <li>•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련 업무 운영</li> </ul>	24

관장사무	경북		
	담당 조직	사무분장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예진흥기금 운용 관리</li> <li>• 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지역예술 공모사업에 관한 업무</li> <li>• 경북예총 및 산하협회, 예술단체 지원</li> <li>• 예술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li> <li>• 도립예술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전문 예술법인·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li> <li>• 예술인 복지관련 업무</li> <li>• 각종 예술행사 지원</li> <li>• 중무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li> <li>• 종교관련 법인의 설립허가 및 활동지원</li> <li>• 종교행사 등 종교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li> <li>• 종교(불교·유교·개신교·천주교·민족종교 등) 업무의 지원</li> <li>• 전통사찰의 등록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li> <li>• 종교문화시설 건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li> <li>• 전통유교관련 업무 지원</li> <li>• 종교관련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li> <li>• 회화·조각·사진·디자인·공예건축 등 시각예술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육성</li> <li>• 시각예술 관련 행사 지원</li> <li>• 공간문화조성 및 건축문화 진흥</li> <li>•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li> <li>• 지역 공예산업 개발 및 지원</li> <li>• 공예촌 조성사업</li> <li>• 코미디 창작 예술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뮤지컬 제작 지원 및 육성</li> <li>•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li> <li>• 삼국유사 목판 복각사업 추진</li> <li>• 다목적공연장 문화예술 공연·전시, 프로그램 기획 운영</li> </ul>	

□ 전문연구진 검토 결과

○ 위의 4개 분야(통합신공항 사업, 광역교통, 광역관광, 광역문화)의 담당조직 및 사무분장 내역 중 협력사업과 기능적으로 연계된 사무들을 도출한 결과, 대구의 경우 총 56개 사무와 24명의 인력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됨

〈표 3-16〉 대구 4개 분야 사무 중 협력사업과 연계 사무 현황

조직부서	사무분장	직위	인원
통합신공항 건설본부 -공항정책 과	소통 관련 행사 및 사업 추진, 중앙정부 및 타시도 협력사업, 국회에 관한 사항	주무관	1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실 및 미래공간개발본부장실 관리	주무관	1
	민항활성화팀 업무 총괄	민항활성화팀 장	1
	통합신공항 민간단체 활동 지원 및 협력 등	주무관	1
	대구공항 활성화	주무관	1
	민항이전팀 업무 총괄	민항이전팀장	1
	대구 민간공항 이전	주무관	1
	통합공항(민항) 접근성 개선	주무관	1
버스운영과	광역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 6급	1
	시내버스 요금 및 환승체계에 관한 사항	행정 6급 (임기제)	1
	교통카드 전반에 관한 업무		
	버스정책 계획수립 및 교통수요(교통체계) 관리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수요관리 등)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정책분야)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등 서비스 개선 정책에 관한 업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 교육 등에 관한 업무		
	시내버스 디자인(색상) 관한 사항		
	시내버스 요금 및 환승체계에 관한 지원 업무	행정 7급	1
	디지털 운행기록계 및 광역알뜰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행정 7급 (일반임기제)	1
	시내버스 운행계획 및 배차시간에 관한 사항		
	각종 행사 시 시내버스 노선운영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운행계획·배차계획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노선운영 관련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농촌형 교통모델에 관한 사항			
도로과	광역도로 국가계획반영 및 예타 신청업무	지방시설서기	1

조직부서	사무분장	직위	인원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시장공약, 지시사항 처리		
	도로건설 설계용역관련 업무		
	도로건설사업 집행계획 수립 조정 총괄	도로시설팀장 (지방시설사무관)	1
	도로건설사업 공정 및 사업비 관리 총괄		
	도로건설사업 설계용역 업무 총괄		
철도시설과	대구권 광역철도(1단계 : 구미~경산) 건설 추진업무	시설 6급 (토목)	1
	대구권 광역철도(2단계 : 김천~밀양) 건설 추진업무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업무	시설 6급 (토목)	1
	대구·경북 광역철도(통합신공항 경우) 건설 추진업무		
	대구권 광역철도 운영계획 및 연계교통 업무	시설 7급 (일반임기제)	1
	대구·경북 광역교통 철도순환망 관련 업무		
	신교통 수단 도입 교통영향분석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요 분석		
	철도분야 사전·예비타당성조사 교통수요 예측 분석 지원		
신교통시스템 도시철도망 구축 업무	시설 7급 (토목)	1	
관광과	대구·경북관광 공동협력 사업 추진	행정 6급	1
	대구·경북 한부리 상생사업 총괄, 대구·경북관광 특별전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KTTP)	관광개발팀장	1
	관광자원개발 사업추진(토목분야) (팔공산 관광활성화 사업, 앞산관광명소화사업, 봉무섬표공원 조성사업, 옷골마을 한류 체험관광명소화 사업, 소규모 관광인프라 개선 및 유지 관리 등)	시설 6급 (토목)	1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지정관련 업무	행정 6급	1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추진 (3대문화대학 운영, 대구·경북 스타관광벤처 육성, 대구오딧세이 프로젝트 추진, 신신가유 프로젝트 추진, 네츄럴대구 프로젝트 추진, 3대문화형 체험기반 환경조성, 3대문화권 홍보채널 다각화 및 홍보강화, 3대문화권 통합홍보 및 관광박람회 개최)		
	국고보조금 관리·운영(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문화예술정책과	문화권에 관한 사항 (문화영향평가 포함)	행정 7급	1
	세계문화유산 한국의서원 보존·관리사업	학예연구사	1
종합	49	24	

- 위의 4개 분야(통합신공항 사업, 광역교통, 광역관광, 광역문화)의 담당조직 및 사무분장 내역 중 협력사업과 기능적으로 연계된 사무들을 도출한 결과, 경북의 경우 총 117개 사무와 54명의 인력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됨

〈표 3-17〉 경북 4개 분야 사무 중 협력사업과 연계 사무 현황

조직부서	사무분장	직위	인원
통합신공항 추진단	통합신공항추진단 총괄	단장	1
	공항기획팀 업무 총괄	팀장	1
	업무계획 및 지시사항 처리	주무관	1
	통합신공항 홍보 업무, 주요 업무보고, 의회 등	주무관	1
	예산 및 결산, 성과관리, 회계, 서무 등	주무관	1
	이전지원팀 총괄	팀장	1
	이전지원사업, 지역개발사업 발굴 등	주무관	1
	동향 및 공항소음	주무관	1
	공항신도시조성 업무 전반	팀장	1
	공항신도시 및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 등	주무관	1
	통합신공항 광역교통망 구축 등	주무관	1
	공항활성화 업무 총괄	팀장	1
	지방공항 활성화업무 추진	주무관	1
	지방공항 활성화업무 추진(예천, 울진)	주무관	1
	항공레저산업 활성화 및 이착륙장 조성 업무		
	주민친화형 지방공항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		
	항공기 관련 재난(사고) 업무		
지방공항 공역 협의			
도로철도과	철도지원 업무 총괄	팀장	1
	국가철도망	주무관	1
	광역 및 도시철도 관련업무 등		
	철도건설사업 사업계획(변경) 승인관련 업무	주무관	1
	광역철도 지원 및 예산		
	도시철도 건설지원		
	철도건설사업 추진지원 및 상황관리	주무관	1
	공사(설계)관리관 업무		
	도로건설 점검(안전, 품질, 시공)		
	도로계획 업무 총괄	팀장	1
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국도 관련 업무 중앙부처 건의 및 시군 협의조정	주무관	1	

조직부서	사무분장	직위	인원
	지방도 연도별 투자계획	주무관	1
	투융자 기본 및 장기계획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등		
	국지도 사업 추진	주무관	1
	공사(설계) 감독 및 지원 등		
	지방도 입안고시 및 도로구역 결정	주무관	1
	지방도 일반 설계기준 작성		
	지방도 사용개시 및 폐지		
	공사(설계) 감독 및 지원	팀장	1
	도로관리 업무 총괄		
	위임국도 및 지방도로 유지보수 계획 수립	주무관	1
	지방도 유지보수 예산 업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계획수립		
	지방도재해복구계획 수립		
	국가지원 지방도 및 지방도 공사감독 및 지원	주무관	1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 및 관리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		
	지역현안도로 사업계획 수립		
	공사감독 및 지원	주무관	1
	지역교통안전개선사업		
지방도 유지관리			
공사(설계) 감독 및 지원			
춘추계 도로정비 등			
위임국도 예산업무	주무관	1	
위임국도 유지관리사업 계획수립 및 각종 민원처리			
지방도 재해복구사업 추진			
여름철 겨울철 재해 사전대비, 도로연결에 관한 업무(허가업무)			
공사(설계) 감독 및 지원	주무관	1	
광역교통			
교통정책과	관광마케팅 기획, 홍보, 등	주무관	1
	온라인 관광마케팅	주무관	1
관광마케팅과	관광통계		
	백두대간인문캠프	실무원	1
	관광DB관리	팀장	1
	국내마케팅 업무 총괄	주무관	1
	국내 관광상품 개발		

조직부서	사무분장	직위	인원	
	도시군관광협의체	주무관	1	
	마이스유치지원			
	경북관광 홍보물			
		해외마케팅 업무 총괄	팀장	1
		해외 홍보 마케팅	주무관	1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해외마케팅	지방행정서기보	1
		도내 축제관련 업무 전반	팀장	1
		축제업무	주무관	1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련 기본계획 수립	주무관	1	
	주요업무계획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지원(도비)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등	주무관	1	
	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국비)			
	국가지정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지원(돌봄,특별)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주무관	1
		문화재 지킴이사업 추진		
		문화재 재해		
		재난대책 수립 시행	주무관	1
		문화재관리 법인 및 문화재 매매업무 일반		
		일자리창출업무		
		명예관리인 임명	팀장	1
		문화재보존업무 총괄		
		문화재보수사업 지침 수립	주무관	1
		문화재수리업자 행정처분		
		문화재 보수정비 및 현상변경허가		
		문화재 보수사업 관리 감독	주무관	1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운영		
		문화재 지정(건조물 분야) 및 보호구역 정비관리		
	도문화재 국가승격 및 등급조정	주무관	1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 및 관리업무			
	문화재 보수정비 및 현상변경허가(포항, 안동, 영양, 예천, 울진)			
	문화재보수사업 관리감독	주무관	1	
	문화재 수리업 신규등록			
	문화재 수리업 변경신고			
	문화재 수리현장 안전점검			

조직부서	사무분장	직위	인원
	문화재 보수정비 및 현상변경허가(김천, 구미, 영주, 상주, 의성, 청송, 고령, 성주, 봉화)		
	문화재대장 DB관리(건조물분야)	실무원	1
	문화재수리업체 및 기술자 변경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상황 정리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현황 정리		
	통계자료 정리		
	문화재활용 업무 총괄	팀장	1
	세계유산 정책수립 및 등재	주무관	1
	종가문화 명품화 사업 등		
	문화재 활용 사업	주무관	1
	문화재연구업무 총괄	문화재연구팀장	1
	가야사 연구복원 업무 총괄	팀장	1
	가야사 조사연구 및 정비계획 수립	주무관	1
	가야문화권 발굴조사 및 복원·정비사업 추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기타 가야문화권 관련 업무 추진 등		
종합	117		54

#### □ 해당 조직 부서장 검토 결과

- 4개 분야(통합신공항 사업, 광역교통, 광역관광, 광역문화)의 담당조직 부서장을 대상으로 협력사업과의 연계성,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적절성, 관련 인력 및 예산 등을 조사함
- 그 결과 대구광역시 해당 조직 부서장들은 협력사업과 연계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적절한 사무를 다음과 같이 검토함

〈표 3-18〉 대구 협력사업 연계 사무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적절성 검토

조직부서	관장사무	사업 담당자 수	사업예산 (2021년 기준, 단위: 백만원)
통합신공항건설 본부 공항정책과	소통 관련 행사 및 사업 추진, 중앙정부 및 타시도 협력사업, 국회에 관한 사항	4	220
	민항활성화팀 업무 총괄	1	-
	통합신공항 민간단체 활동 지원 및 협력 등	1	50
	대구공항 활성화	2	1,168
	민항이전팀 업무 총괄	1	-
	대구 민간공항 이전	2	-
	통합공항(민항) 접근성 개선	1	-
	업무계획, 인사	1	-
	의회, 감사	2	-
	국서무, 예산	1	-
버스운영과	대외협력 업무 지원	2	-
	-	-	-
도로과	도로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업무 총괄	1	119,300
	도로건설사업 재정운영 총괄	1	119,300
	신규, 미래 프로젝트 사업 발굴	-	-
	고속도로 관련 업무(하이패스IC 설치, 중부내륙자선 협의 등)	-	-
	국도 확장 관련 업무	-	-
	광역도로 국가계획반영 및 예타 신청업무	1	-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1	100
	시장공약, 지시사항 처리	-	-
	도로건설사업 예산편성 및 결산	1	-
	예산배정 및 재배정, 집행	-	-
	도로건설사업 집행계획 수립 조정 총괄	1	-
	도로건설사업 공정 및 사업비 관리 총괄	1	-
	업무계획, 예산, 국회, 의회, 감사 관련 업무	1	-
	도로건설사업 투자심사 관련 업무	1	-
	민자도로(상인·범물, 범안로) 교통수요 분석	-	-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구역(교통분야) 관련 업무	-	-
	광역 및 혼잡도로 관련 교통분석 업무	1	100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관련 업무	1	-
	도로건설사업 추진사항 관리 업무	-	-
	도로분야 공유재산 관련 업무	-	-
	도로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기획 업무	-	-
	업무계획, 국회, 의회 관련 업무	-	-
유지관리 예산 관련 업무	-	-	

조직부서	관장사무	사업 담당자 수	사업예산 (2021년 기준, 단위: 백만원)
	가로등, 보안등 및 전기관련업무	-	-
	사회재난(터널방재 등) 안전관리 업무	-	-
	자연재난(도로방재 등) 안전관리 업무	-	-
	교량, 지하도, 육교 등 구조물 유지관리	-	-
	민자사업(도로분야) 계획수립 및 시행 업무총괄	-	-
	민자사업(도로분야) 제도 관련 업무총괄	-	-
	유료도로 관리·운영 및 지도·감독 업무총괄	-	-
	도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총괄	-	-
	민자사업(도로분야) 계획, 예산, 국회, 의회, 당정협의회, 시장지사시향, 대외협의 업무	-	-
	유료도로 관리·운영 업무	-	-
	스마트도로망 구축계획 업무	-	-
	도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 지원	-	1,600
	도로관리 정보전산화 사업계획 수립	-	-
	스마트도로망 구축계획 업무 지원	-	-
	유료도로 통행료 심의위원회 및 통행료 관련 업무	-	-
철도시설과	달빛내륙철도 건설 업무추진(행사)	0.5	50
	국비관련 업무추진	1	-
	대구권 광역철도(1단계 : 구미~경산) 건설 추진업무	1	185,100
	대구권 광역철도(2단계 : 김천~말양) 건설 추진업무	1	45,900
	대구·경북 광역철도(통합신공항 경유) 건설 추진업무	1	2,044,400
	대구권 광역철도 운영계획 및 연계교통 업무	1	경유지자체 분담금
	대구·경북 광역교통 철도순환망 관련 업무	-	-
	달빛내륙철도 건설 업무	0.5	4,515,800
	관광자문단 및 관광정책협의회 운영	1	10
	중양부처, 관광공사 등 중앙 협력사항	1	-
관광과	대구·경북관광 공동협력 사업 추진	1	250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사업 총괄, 대구·경북관광 특별전	1	85
	관광학과 대학생 대구경북 실전여행기획 지원	1	50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지정관련 업무	1	25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추진 (3대문화대학 운영, 대구·경북 스타관광벤처 육성, 대구오딧세이 프로젝트 추진, 신신가우 프로젝트 추진, 네츄럴대구 프로젝트 추진, 3대문화형 체험기반 환경조성, 3대문화권 홍보채널 다각화 및 홍보강화, 3대문화권 통합홍보 및 관광박람회 개최)	1	5,122

조직부서	관장사무	사업 담당자 수	사업예산 (2021년 기준, 단위: 백만원)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KTTP) 사업 총괄 (분야별 사업관리[모니터링, 관리카드 운영], 포상[KTTP 우수 추진사업 관련 공무원, 민간인])	1	22,600
	대구시티투어·근교권 투어 운영 및 관리	1	717
	중국, 동남아, 구미주 관광객 유치·홍보	1	-
	중화권(대만, 홍콩), 일본 관광객 유치·홍보	1	-
	글로벌 관광 육성 사업 추진	1	-
	코리아토탈패키지(KTTP) 사업 추진(문체부 공모사업) (관광항공협력사업, 공연관광, 농촌관광, 방한외교네트워크)	1	553 (관광공사/ 국비직접사업)
	글로벌 관광알리미 운영	1	-
문화예술정책과	-	-	-
종합		48	7,062,500 (경유지자체 분담금 제외)

○ 경상북도 해당 조직 부서장들은 협력사업과 연계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적절한 사무를 다음과 같이 검토함

〈표 3-19〉 경북 협력사업 연계 사무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적절성 검토

조직부서	관장사무	사업 담당자 수	사업예산 (2021년 기준, 단위: 백만원)
통합신공항 추진단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홍보·소통계획 수립	1	750
	타시도 신공항관련 여론 및 동향관리(정책토론회, 포럼, 간담회 등)	1	20
	중앙정부·타시도 공조체제 구축 및 협력강화	1	
	이전지역 주민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	1	-
	통합신공항 기본구상,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조정 및 협의	1	-
	경상북도 항공정책 자문위원회 운영	1	20
	항공정책기본계획 및 공항개발종합계획 협의	1	-
	민항 터미널 계획 및 스마트공항조성 계획 협의	1	-
	민항청사 운영 관련 업무 협의 등	1	-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국비 확보 및 업무 협의	1	-

조직부서	관장사무	사업 담당자 수	사업예산 (2021년 기준, 단위: 백만원)
	통합신공항 배후도시(항공클러스터, 산업단지) 구상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	500
	통합신공항 광역교통망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	-
	통합신공항 배후도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협의	1	-
	통합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 추진	1	-
	통합신공항 관련 각종 영향평가(소음, 환경, 교통 등) 협의 및 추진	1	-
	통합신공항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1	-
	항공물류 확대 및 물류단지 활성화 계획 수립	1	-
	물류단지 이용 운송업체 유치 등 업무 협의	1	-
	통합신공항 배후도시 및 광역교통망 관련 각종 영향평가 및 용역 지원	1	-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1	-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방도 사업 관련 업무	1	-
	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개발행위 및 부동산거래허가 제한 등	1	-
	군 공항 및 지방공항 소음 관련 업무	1	-
	군 공항 소음영향도 조사 및 보상 관련 업무	1	-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업무 협의	1	-
도로철도과	철도부설 관련 업무(도시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	4	11,091
교통정책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수립 및 추진	1(0.1)	0
도시재생과	광역도로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
동해안정책과	-	-	-
관광마케팅과	-	-	-
문화유산과	세계유산 정책수립 및 등재 업무	1	0
	세계유산위원회 운영	1	11
문화예술과	우리말과 우리글에 관한 업무	1	300
	지역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1	17,400
관광정책과	3대 문화권 개발사업	4	23,500
	광역관광개발사업 등	-	-
종합		38	53,592

□ 해당부서장 국가위임사무 의견조사 결과

- 4개 분야(통합신공항 사업, 광역교통, 광역관광, 광역문화)의 담당조직 부서장을 대상으로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위임요청 필요성 및 사유와 근거법 및 현재 수행주체를 조사함
- 그 결과 대구광역시 해당 조직 부서장들은 다음과 같은 국가위임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것을 요청함

〈표 3-20〉 대구 4개 분야 사무 관련 국가위임사무 수요

구분	조직 부서	사무	사유	수행주체	근거법
광역 교통	버스 운영과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련 사무	-	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8조 제 2항
종합		1건			

- 경상북도 해당 조직 부서장들은 다음과 같은 국가위임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것을 요청함

〈표 3-21〉 경북 4개 분야 사무 중 관련 국가위임사무 수요

구분	조직 부서	사무	사유	수행 주체	근거법
광역 교통	교통 정책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	지역여건 반영	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8조 제 2항
		시계외 버스노선, 광역버스 관련 협의·인가에 관한 사항	지역여건 반영		
		대중교통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운영	일반복합 환승센터 구축 운영 업무 이관 필요 (지정권자가 시도지사)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수립	지역여건 반영		
종합					

## □ 종합

- 대구경북 협력과제 현황과 연관사무를 토대로 전문연구진 검토와 해당 조직 부서장 검토 등을 거치면 크게 4가지 안을 도출할 수 있음
- 첫번째는 대구경북 협력과제를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로 하는 방안임
  - 이를 근거로 광역사무 세부사무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표 3-22〉 대구경북 협력과제 세부내용

구분	중기 능	소기능	사업(과제)	담당조직	
				대구	경북
교통 물류	항공 공항	일반공항건설	대구공항 통합 이전	공항정책과	통합신공항추진단
			광역철도	대구권 광역철도(1단계: 구미-경산)	철도시설과
	(2단계: 김천 연장)	철도시설과		도로철도과	
	(3단계: 대구-경북 광역철도)	철도시설과		도로철도과	
	대구도시철도 연장(1호선 하양 연장)	도시철도건설본부/철도시설과		도로철도과	
	(1호선 금호 연장)	도시철도건설본부/철도시설과		도로철도과	
	(3호선 동명 연장)	철도시설과		도로철도과	
	(1호선 진량 연장)	철도시설과		도로철도과	
	광역도로	조야~동명간 광역도로 건설	도로과	도시재생과	
	광역환승제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시행	버스정책과	교통정책과	
문화 체육 관광	광역 관광	관광산업개발	대구경북 관광특별전 개최	관광과	관광마케팅과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	관광과	관광정책과
			선비이야기여행 관광패스 운영	관광과	관광정책과
			대구경북 관광상품 성공모델 개발	관광과	관광마케팅과
			대구경북 관광통합	관광과	관광마케팅과
	대구경북 공동크루즈상품 개발	관광과	동해안정책과		
문화재보존	팔공산 석조불상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유산과		

구분	중기 능	소기능	사업(과제)	담당조직	
				대구	경북
	문화정책		한뿌리 사투리 경연대회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사업 교류협력 추진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예술과
			대구경북 상생 시민생활체육대축전 교류참가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 두번째는 대구경북 협력과제와 연관된 사무를 전문연구진이 검토한 방안임
  - 이를 근거로 광역사무 세부사무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두번째는 대구경북 협력과제와 연관된 사무를 전문연구진이 검토한 방안임  
 - 이를 근거로 광역사무 세부사무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표 3-23〉 협력사업+연관사무: 전문연구진 검토 결과

구분	중기능	소기능	사업(과제)	연관사무(대구)	연관사무(경북)
교통물류	항공공항	일반공항 건설	대구공항 통합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통 관련 행사 및 시업 추진, 중앙정부 및 타시도 협력사업, 국회에 관한 사항</li> <li>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실 및 미래공간개발 본부장실 관리</li> <li>민항활성화팀 업무 총괄</li> <li>통합신공항 민간단체 활동 지원 및 협력 등</li> <li>대구공항 활성화</li> <li>민항이전팀 업무 총괄</li> <li>대구 민간공항 이전</li> <li>통합공항(민항) 접근성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신공항추진단 총괄</li> <li>공항기획팀 업무 총괄</li> <li>업무계획 및 지시사항 처리</li> <li>통합신공항 홍보 업무, 주요 업무보고, 의회 등</li> <li>예산 및 결산, 성과관리, 회계, 서무 등</li> <li>이전지원팀 총괄</li> <li>이전지원사업, 지역개발사업 발굴 등</li> <li>동향 및 공항소음</li> <li>공항신도시조성 업무 전반</li> <li>공항신도시 및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 등</li> <li>통합신공항 광역교통망 구축 등</li> <li>공항활성화 업무 총괄</li> <li>지방공항 활성화업무 추진</li> <li>지방공항 활성화업무 추진(예천, 울진)</li> <li>항공레저산업 활성화 및 이착륙장 조성 업무</li> <li>주민친화형 지방공항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li> <li>항공기 관련 재난(사고) 업무</li> <li>지방공항 공역 협의</li> </ul>

구분	중기능	소기능	사업(과제)	연관사무(대구)	연관사무(경북)
			대구권 광역철도(1단계 : 구미~경산) (2단계: 김천 연장) (3단계: 대구~경북 광역철도) 대구도시철도 연장(1호선 하안 연장) (1호선 금호 연장) (3호선 동명 연장) (1호선 진량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구권 광역철도(1단계 : 구미~경산) 건설 추진업무</li> <li>대구권 광역철도(2단계 : 김천~밀양) 건설 추진업무</li> <li>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업무</li> <li>대구·경북 광역철도(통합신공항 경유) 건설 추진업무</li> <li>대구권 광역철도 운영계획 및 연계교통 업무</li> <li>대구·경북 광역교통 철도순환망 관련 업무</li> <li>신교통 수단 도입 교통영향분석</li> <li>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요 분석</li> <li>철도분야 사전·에비타당성조사 교통수요 예측 분석 지원</li> <li>신교통시스템 도시철도망 구축 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철도지원 업무 총괄</li> <li>국가철도망</li> <li>광역 및 도시철도 관련업무 등</li> <li>철도건설사업 사업계획(변경) 승인관련 업무</li> <li>광역철도 지원 및 예산</li> <li>도시철도 건설지원</li> <li>철도건설사업 추진지원 및 상황관리</li> <li>공사(설계)관리관 업무</li> <li>도로건설 점검(안전, 품질, 시공)</li> <li>도로계획 업무 총괄</li> <li>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국도 관련 업무</li> <li>중앙부처 건의 및 시군 협의조정</li> <li>지방도 연도별 투자계획</li> <li>투융자 기본 및 장기계획</li> <li>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등</li> <li>국지도 사업 추진</li> <li>공사(설계) 감독 및 지원 등</li> <li>지방도 입안고시 및 도로구역 결정</li> <li>지방도 일반 설계기준 작성</li> <li>지방도 사용개시 및 폐지</li> <li>공사(설계) 감독 및 지원</li> <li>도로관리 업무 총괄</li> <li>위임국도 및 지방도로 유지보수 계획 수립</li> <li>지방도 유지보수 예산 업무</li> <li>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계획수립</li> <li>지방도재해복구계획 수립</li> <li>국가지원 지방도 및 지방도 공사감독 및</li> </ul>
	광역교통	광역철도	(계획) 광역교통 철도순환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도로 국가계획반영 및 에타 신청업무</li> <li>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li> <li>시장공약, 지시사항 처리</li> <li>도로건설 설계용역관련 업무</li> <li>도로건설사업 집행계획 수립 조정 총괄</li> <li>도로건설사업 공정 및 사업비 관리 총괄</li> <li>도로건설사업 설계용역 업무 총괄</li> </ul>	
		광역도로	조야·동명간 광역도로 건설		

구분	중기능	소기능	사업(과제)	연관사무(대구)	연관사무(경북)
	광역 환승제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li> <li>시내버스 요금 및 환승제에 관한 사항</li> <li>교통카드 전반에 관한 업무</li> <li>버스정책 계획수립 및 교통수요(교통체계) 관리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수요 관리 등)</li> <li>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정책분야)</li> <li>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등 서비스 개선 정책에 관한 업무</li> <li>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 교육 등에 관한 업무</li> <li>시내버스 디자인(색상) 관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교통</li> </ul>	<p>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 및 관리</li> <li>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li> <li>지역현안도로 사업계획 수립</li> <li>공사감독 및 지원</li> <li>지역교통안전개선사업</li> <li>지방도 유지관리</li> <li>공사(설계) 감독 및 지원</li> <li>춘추계 도로정비 등</li> <li>위임국도 예산업무</li> <li>위임국도 유지관리사업 계획수립 및 각종 민원처리</li> <li>지방도 재해복구사업 추진</li> <li>여름철 겨울철 재해 사전대비,도로연결에 관한 업무(허가업무)</li> <li>공사(설계) 감독 및 지원</li> </ul>

구분	중기능	소기능	사업(과제)	연관사무(대구)	연관사무(경북)
문화체육 관광	광역관광	관광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구경북 관광특별전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내버스 요금 및 환승체계에 관한 지원 업무</li> <li>디지털 운행기록계 및 광역알뜰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li> <li>시내버스 운행계획 및 배차시간에 관한 사항</li> <li>각종 행사 시 시내버스 노선운영에 관한 사항</li> <li>시내버스 운행계획·배차계획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li> <li>시내버스 노선운영 관련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li> <li>농촌형 교통모델에 관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마케팅 기획, 홍보, 등</li> <li>온라인 관광마케팅</li> <li>관광통계</li> <li>백두대간인문캠프</li> <li>관광DB관리</li> <li>국내마케팅 업무 총괄</li> <li>국내 관광상품 개발</li> <li>도시군관광협의체</li> <li>마이스유치원</li> <li>경북관광 홍보물</li> <li>해외마케팅 업무 총괄</li> <li>해외 홍보 마케팅</li> <li>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li> <li>해외마케팅</li> <li>도내 축제관련 업무 전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선비이야기여행 관광패스 운영</li> <li>대구경북 관광상품 성공모델 개발</li> <li>대구경북 관광통합</li> <li>대구경북 공동크루즈상품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구·경북관광 공동협력 사업 추진</li> <li>대구·경북 한뿌리 상생사업 총괄, 대구·경북관광 특별전</li> <li>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코리아토탈관광 패키지(KTTP)</li> <li>관광자원개발 사업추진(토목분야) (팔공산 관광활성화 사업, 요산관광명소화사업, 봉무섬표공원 조성사업, 옷골마을 한류 체험관광명소화 사업, 소규모 관광인프라 개선 및 유지 관리 등)</li> <li>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지정관련 업무</li> <li>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추진 (3대문화대학 운영, 대구·경북 스타관광벤처 육성, 대구오션세이 프로젝트 추진, 신신가우 프로젝트 추진, 네츄럴대구 프로젝트</li> </ul>	

구분	중기능	소기능	사업(과제)	연관사무(대구)	연관사무(경북)
			<p>(계획)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및 관광자원개발</p>	<p>추진, 3대문화형 체험기반 환경조성, 3대 문화권 홍보채널 다각화 및 홍보강화, 3대문화권 통합홍보 및 관광박람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고보조금 관리·운영(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제업무</li> </ul>
	문화재보존		<p>팔공산 석조불상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p> <p>한뿌리 시투리 경연대회</p> <p>문화예술사업 교류협력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관련 기본계획 수립</li> <li>주요업무계획</li> <li>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지원(도비)</li> <li>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등</li> <li>국가 지정문화재보수사업(국비)</li> <li>국가도 지정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지원(돌봄, 특별)</li> <li>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li> <li>문화재 지킴이사업 추진</li> <li>문화재 재해</li> <li>재난대책 수립 시행</li> <li>문화재관리 법인 및 문화재 매매업무 일반</li> <li>일자리창출업무</li> <li>명예관리인 임명</li> <li>문화재보존업무 총괄</li> <li>문화재보수사업 지침 수립</li> <li>문화재수리업자 행정처분</li> <li>문화재 보수정비 및 현상변경허가</li> <li>문화재 보수사업 관리 감독</li> <li>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운영</li> <li>문화재 지정(건조물 분야) 및 보호구역 정비관리</li> <li>도문화재 규기승격 및 등급조정</li> </ul>
	문화정책		<p>대구경북 상생 시민생활체육대축전 교류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권에 관한 사항 (문화영향평가 포함)</li> <li>세계문화유산 한국의서원 보존·관리사업</li> </ul>	

구분	중기능	소기능	사업(과제)	연관사무(대구)	연관사무(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 및 관리업무</li> <li>• 문화재 보수정비 및 현상변경허가(포항, 안동, 영양, 예천, 울진)</li> <li>• 문화재보수사업 관리감독</li> <li>• 문화재 수리업 신규등록</li> <li>• 문화재 수리업 변경신고</li> <li>• 문화재 수리현장 안전점검</li> <li>• 문화재 보수정비 및 현상변경허가(김천, 구미, 영주, 상주, 의성, 정선, 고령, 성주, 봉화)</li> <li>• 문화재대상 DB관리(건축물분야)</li> <li>• 문화재수리업체 및 기술자 변경</li> <li>•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상황 정리</li> <li>•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현황 정리</li> <li>• 통계자료 정리</li> <li>• 문화재활용 업무 총괄</li> <li>• 세계유산 정책수립 및 등재</li> <li>• 중기문화 명품화 사업 등</li> <li>• 문화재 활용 사업</li> <li>• 문화재연구업무 총괄</li> <li>• 기사사 연구복원 업무 총괄</li> <li>• 기사사 조사연구 및 정비계획 수립</li> <li>• 기사문화권 발굴조사 및 복원·정비사업 추진</li> <li>• 기사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li> <li>• 기타 기사문화권 관련 업무 추진 등</li> </ul>

○ 세번째는 대구경북 협력과제와 연관된 사무를 해당조직 부서장이 검토한 방안임

- 이를 근거로 광역사무 세부사무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표 3-24〉 협력사업+연관사무: 해당 부서장 검토 결과

구분	중기능	소기능	사업(과제)	연관 및 위임요청사무(대구)	연관 및 위임요청사무(경북)
교통 물류	항공 규화	일반 공화 건설	대구공항 통합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통 관련 행사 및 사업 추진, 중앙정부 및 타 시도 협력사업, 국회에 관한 사항</li> <li>• 민항활성화팀 임무 총괄</li> <li>• 통합신공항 민간단체 활동 지원 및 협력 등</li> <li>• 대구공항 활성화</li> <li>• 민항이전팀 임무 총괄</li> <li>• 대구 민간공항 이전</li> <li>• 통합공항(민항) 접근성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홍보·소통계획 수립</li> <li>• 타시도 신공항관련 여론 및 동향관리(정책토론회, 포럼, 간담회 등)</li> <li>• 중앙정부·타시도 공조체제 구축 및 협력강화</li> <li>• 이전지역 주민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통합신공항 기본구상,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조정 및 협의</li> <li>• 경상북도 항공정책 자문위원회 운영</li> <li>• 항공정책기본계획 및 공항개발종합계획 협의</li> <li>• 민항 터미널 계획 및 스마트공항조성 계획 협의</li> <li>• 민항청사 운영 관련 업무 협의 등</li> <li>•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국비 확보 및 업무 협의</li> <li>• 통합신공항 배후도시(항공클러스터, 산업단지) 구상 및 개발에 관한 사항</li> <li>• 통합신공항 광역교통망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li> <li>• 통합신공항 배후도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협의</li> <li>• 통합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운영 추진</li> <li>• 통합신공항 관련 각종 영향평가(소음, 환경,</li> </ul>

구분	중기능	소기능	사업(과제)	연관 및 위임요청사무(대구)	연관 및 위임요청사무(경북)
					교통 등 협의 및 추진 • 통합신공항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항공물류 확대 및 물류단지 활성화 계획 수립 • 물류단지 이용 운송업체 유치 등 업무 협의 • 통합신공항 배후도시 및 광역교통망 관련 각종 영향평가 및 용역 지원 •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방도 사업 관련 업무 • 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개발행위 및 부동산 거래허가 제한 등 • 군 공항 및 지방공항 소음 관련 업무 • 군 공항 소음영향도 조사 및 보상 관련 업무 •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업무 협의
	광역 교통	광역 철도	대구 권 광역 철도 1단계 : 구미-경산 2단계 : 김천 연장 3단계 : 대구-경북 광역 대구-경북 광역 철도	달빛내륙철도 건설 업무 • 국비관련 업무추진 • 대구권 광역철도(1단계 : 구미~경산) 건설 추진업무 • 대구권 광역철도(2단계 : 김천~밀양) 건설 추진업무 • 대구·경북 광역철도(통합신공항 경우) 건설 추진업무 • 대구권 광역철도 운영계획 및 연계교통 업무 • 대구·경북 광역교통 철도순환망 관련 업무	• 철도부설 관련 업무(도시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

구분	중기능	소기능	사업(과제)	연관 및 위임요청사무(대구)	연관 및 위임요청사무(경북)
			1호선 희망 연장 연장 1호선 금호 연장 연장 3호선 동명 연장 연장 1호선 진량 연장 연장 (계획) <b>광역교통            철도순환망            구축</b>		
	광역도로		도로 관련 일반사업 조야~동명간 광역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업무 총괄</li> <li>• 도로건설사업 재정운영 총괄</li> <li>• 신규, 미래 프로젝트 사업 발굴</li> <li>• 고속도로 관련 업무(하이패스IC 설치, 중부내륙지선 협의 등)</li> <li>• 국도 확장 관련 업무</li> <li>• 광역도로 국가계획 반영 및 예타 신청업무</li> <li>•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광역)</li> <li>• 시장공약, 지시사항 처리</li> <li>• 도로건설사업 예산편성 및 결산</li> <li>• 예산배정 및 재배정, 집행</li> <li>• 도로건설사업 집행계획 수립 조정 총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도로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li> </ul>

구분	중기능	소기능	사업(과제)	연관 및 위임요청사무(대구)	연관 및 위임요청사무(경북)
			<p>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건설사업 공정 및 시범비 관리 총괄</li> <li>• 업무계획, 예산, 국회, 의회, 감사 관련 업무</li> <li>• 도로건설사업 투자심사 관련 업무</li> <li>• 민자도로(상인·범물, 범안로) 교통수요 분석</li> <li>•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구역(교통분야) 관련 업무</li> <li>• 광역 및 혼잡도로 관련 교통분석 업무</li> <li>•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관련 업무</li> <li>• 도로건설사업 추진사항 관리 업무</li> <li>• 도로분야 공유재산 관련 업무</li> <li>• 도로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기획 업무</li> <li>• 유지관리 예산 관련 업무</li> <li>• 가로등, 보안등 및 전기관련업무</li> <li>• 사회재난(타널방재 등) 안전관리 업무</li> <li>• 자연재난(도로방재 등) 안전관리 업무</li> <li>• 교량, 지하도, 육교 등 구조물 유지관리</li> <li>• 민자사업(도로분야) 계획수립 및 시행 업무총괄</li> <li>• 민자사업(도로분야) 제도 관련 업무총괄</li> <li>• 유료도로 관리·운영 및 지도·감독 업무총괄</li> <li>• 도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총괄</li> <li>• 민자사업(도로분야) 계획, 예산, 국회, 의회, 행정협의회, 시정지시사항, 대외협의 업무</li> <li>• 유료도로 관리·운영 업무</li> <li>• 스마트도로망 구축계획 업무</li> <li>• 도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 지원</li> <li>• 도로관리 정보전산화 사업계획 수립</li> <li>• 스마트도로망 구축계획 업무 지원</li> <li>• 유료도로 통행료 심의위원회 및 통행료 관련 업무</li> </ul>	

구분	중기능	소기능	사업(과제)	연관 및 위임요청사무(대구)	연관 및 위임요청사무(경북)
		광역 환승제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련 사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수립 및 추진</li> </ul>
문화 체육 관광	광역 광 개발	관광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경북 관광특별전 개최</li> <li>•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선비이기에 행 관광패스 운영</li> <li>• 대구경북 관광상품 성공모델 개발</li> <li>• 대구경북 관광통합 개발</li> <li>• 대구경북 공동크루즈 상품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자문단 및 관광정책협의회 운영</li> <li>• 중앙부처, 관광공사 등 중앙 협력사항</li> <li>• 대구·경북관광 공동협력 사업 추진</li> <li>• 대구·경북 한부리 상생사업 총괄, 대구·경북 관광 특별전</li> <li>• 관광학과 대학생 대구경북 실전여행기획 지원</li> <li>•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지정관련 업무</li> <li>•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추진 (3대문화대하 운영, 대구·경북 스타관광벤처 육성, 대구오딧세이 프로젝트 추진, 신신기유 프로젝트 추진, 내츨대구 프로젝트 추진, 3대문화형 체험기반 환경조성, 3대문화권 홍보체널 다각화 및 홍보강화, 3대문화권 통합홍보 및 관광박람회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대 문화권 개발사업</li> <li>• 광역관광개발사업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KTTP) 사업 총괄 (분야별 사업관리·모니터링, 관리카드 운영, 포상 KTTP 우수 추진사업 관련 공무원, 민간인)</li> <li>• 대구시티투어·근교권 투어 운영 및 관리</li> <li>• 중국, 동남아, 구미주 관광객 유치·홍보</li> <li>• 중화권(대만, 홍콩, 일본 관광객 유치·홍보</li> <li>• 글로벌 관광 육성 사업 추진</li> <li>• 코리아토탈패키지(KTTP) 사업 추진(문체부 공모사업) (관광항공협력사업, 공연관광, 농촌관광)</li> </ul>			

구분	중기능	소기능	사업(과제)	연관 및 위임요청사무(대구)	연관 및 위임요청사무(경북)
				광, 빙한외교네트워킹 • 글로벌 관광알리미 운영	
	문화재보존		팔공산 석조불상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문화정책		한뿌리 사투리 경연대회 문화예술사업 교류협력 추진 대구경북 상생 시민생활체육 대축전 교류참가	-	• 세계유산 정책수립 및 등재 업무 • 세계유산위원회 운영 • 우리말과 우리글에 관한 업무 • 지역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 마지막으로 4개 기능을 관장하는 부서가 모두 이관하는 방안임  
 - 이를 토대로 광역기능과 조직부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25〉 4개 기능 및 구성 자치단체 부서

구분	대구 담당부서	경북 담당부서
통합 신공항 건설	공항정책과	통합신공항추진단
광역교통	버스운영과 철도시설과 도로과	도로철도과 교통정책과 도시재생과
광역관광	관광과	관광마케팅과 관광정책과 동해안정책과
광역문화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 제4장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계

- 제1절 주요 설계내용 및 설계방법
- 제2절 명칭 설계
- 제3절 사무소 위치 설계
- 제4절 관장사무 설계
- 제5절 기관구성 설계
- 제6절 조직체계 설계
- 제7절 채용조달 설계
- 제8절 설계방안 소결



## 제1절

## 주요 설계내용 및 설계방법

## 1. 설계변수 선정

## □ 설계변수 선정 시 검토요인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계변수를 선정할 때 크게 3가지 검토요인을 고려함
  - 대구와 경북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광역화 전략, 개발계획 등을 우선 검토함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근거법 및 관련 법제를 우선 검토함
  - 해외 유사한 국가들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운영한 사례를 검토하여 벤치마킹함

##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계변수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계변수는 크게 특별지방자치단체 명칭, 사무소 위치, 관장사무, 기관구성, 조직체계, 재정확보임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2장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때 법적 규약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도록 함
-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표 4-1〉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관련 규약 명시사항

관계법령	내용	설계변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구성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위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 어야 할 사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 임방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 방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개시일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특별지방자치단체 명칭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위치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 특별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직체계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

- 따라서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때 주요 설계변수로 특별지  
 방자치단체 명칭, 사무소 위치, 관장사무, 기관구성, 조직체계, 재정확보방  
 안으로 확정함

## 2. 설계변수 분석방법

### □ 특별지방자치단체 법제분석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계변수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분석함
  -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파악함

### □ 국내·외 사례

- 국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사례와 해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사례를 바  
 탕으로 설계변수들을 판단함

- 국내 광역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사례 중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준용하여 판단하며, 행정안전부 내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발굴 관련 연구 결과를 검토함
- 해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사례로서 일본 간사이광역연합과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등의 사례를 검토함

#### □ 설계변수 분석틀

- 위의 법제 분석과 국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설계변수에 대한 분석틀을 제시함

〈표 4-2〉 설계변수 분석틀

구분	법제분석	국내사례		해외사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동남권	행정안전부	일본	독일
명칭	○	○		○	○
사무소 위치	○	○			
기관구성	○	○		○	○
관장사무	○	○	○	○	○
조직구성	○	○		○	○
재원확보	○	○	○	○	○

## 제2절 명칭 설계

### 1. 법제분석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02조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구성단체의 합의결정에 따라 규약사항으로 정하도록 명시됨
  - 따라서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명칭 설계 원칙을 적용하되, 기존 사례를 검토하여 대구·경북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 2. 기존 사례

#### □ 통상 명칭 부여 방식

- 행정기관의 명칭설계 원칙에 따르면 행정기관 명칭 설계 시 통상적으로 관장기능, 관할구역, 법적 지위를 따르게 됨
- 통상적으로 중앙부처는 관장 기능과 법적 지위를 조합하여 명칭을 설계함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관장 기능)과 부(법적 지위)를 조합한 것임
  - 인사혁신처는 인사혁신(관장 기능)과 처(법적 지위)를 조합한 것임
  - 통계청은 통계(관장 기능)과 청(법적 지위)을 조합한 것임
-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과 법적 지위를 조합하여 명칭을 설계함
  - 서울특별시는 서울(관할 지역)과 특별시(법적 지위)를 조합한 것임
  - 대구광역시는 대구(관할 지역)과 광역시(법적 지위)를 조합한 것임
  - 경상북도는 경상북(관할 지역)과 도(법적 지위)를 조합한 것임
-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볼 때,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대구와 경북이라는 관할 지역과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법적 지위를 조합하여 명칭을 설계하는 방안이 적절함

### 3. 국내 사례 분석

#### □ 동남권 사례

-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관할구역과 구성방식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도출된 4개 대안을 검토하였음
  - 관할구역은 부산, 경상남도, 울산을 포함한 지역이며, 해당 지역을 지칭하는 명칭은 동남권과 부울경의 두 가지이기 때문에, 관할구역 관련 명칭은 동남권과 부울경의 두 가지임
  - 다음으로 구성방식은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영국 맨체스터 지역연합,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등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광역연합과 지역연합의 두 가지임
  -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개 대안이 도출됨
    - 동남권광역연합
    - 동남권지역연합
    - 부울경지역연합
    - 부울경광역연합
- 위의 4개 대안들을 대상으로 명칭을 판단하는 4가지 기준인 대외적 인지도, 지자체 명칭반영, 기관설립 목적반영, 지역주민 수용성을 토대로 판단함
  - 대외적 인지도: 해당 명칭이 대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가?
  - 지자체 명칭반영: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 기관설립 목적반영: 명칭 내에 기관설립의 목적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 지역주민 수용성: 지역주민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명칭인가?
- 4가지 기준에 따라 위의 4개 대안들을 대상으로 상대적인 적합성을 판단하여 부울경광역연합을 최선의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표 4-3〉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명칭 판단기준

구분	판단기준			
	대외적 인지도	지자체 명칭반영	기관설립 목적반영	지역주민 수용성
동남권광역연합	x	x	○	x
동남권지역연합	x	x	x	x
부울경광역연합	○	○	○	○
부울경지역연합	○	○	x	○

자료: 금창호 외, 2021: 199

#### 4. 해외 사례 분석

##### □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사례는 간사이(관할구역)와 광역연합(구성방식)의 조합으로 볼 수 있음
  - 간사이 광역연합은 2010년 1월, 관계 2부 6현(미에, 사가, 교토, 오사카, 효고, 와가야마, 돗토리, 도쿠시마)에 의한 설립준비부회[관계부현지사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8월 제6회 본부회의를 개최하여 간사이광역연합 규약안과 간사이광역연합설립안을 결정하였음<sup>7)</sup>

##### □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은 슈투트가르트(관할구역)와 지역연합(구성방식)의 조합으로 볼 수 있음
  - 현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의 전신으로 1973년 “넥카증류광역조합”을 설치하였으며 이 조합의 구성원은 넥카강 유역 6개 광역자치단체임
  - 1992년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으로 개칭하였음<sup>8)</sup>

7) 최환용. 일본의 특별지방공공단체 광역연합에 대한 검토 - 간사이광역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8) 부울경(2021).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부문별계획 최종보고서.

## 5. 검토대안 및 소결

### □ 검토대안

- 본 연구는 위의 법제분석, 기존 사례, 국내외 사례 검토 등을 통해 명칭 설계의 원칙으로 관할구역과 법적 지위 또는 관할구역과 구성방식 간 조합을 도출함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명칭으로 도출될 수 있는 대안은 크게 4가지임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 대구경북 광역연합
    - 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 대경 광역연합

〈표 4-4〉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명칭 판단기준

구분	판단기준			
	대외적 인지도	지자체 명칭반영	기관설립 목적반영	지역주민 수용성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	○	○	○
대구경북 광역연합	○	○	x	○
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	x	○	x
대경 광역연합	○	x	x	x

### □ 소결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추후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 구성 자치단체인 대구와 경북이 결정함
  - 대외적 인지도, 지자체 명칭반영, 기관설립 목적반영, 지역주민 수용성의 네 가지 측면과 함께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명칭인 “대구경북 특별광역시”를 모두 고려하여 지역 주민들이 수용하기에 용이한 명칭을 고려해야 함

### 제3절 사무소 위치 설계

#### 1. 법제분석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02조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위치는 구성단체의 합의결정에 따라 규약사항으로 정하도록 명시됨
- 따라서, 행정기관의 입지 최적화 기준 등을 고려하되, 기존 사례를 검토하여 대구·경북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 이 과정에서 단일입지 선정 여부와 도청 및 공공시설 등의 입지 선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사무소 위치를 설계함

#### 2. 기존 사례

##### □ 도청 및 청사 입지 선정기준

- 도청 입지 선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청 입지로 지리적 중심성, 행정구역 전 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 및 교통연계성, 정치적 중립지역, 역사성, 지역개발효과, 지역균형효과, 행정기관 재입지에 투입되는 조성비용, 효율성 측면에서의 관련 기관의 입지여부, 그리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생활수준 보장과 선호 등을 기준으로 도의 전략적 방향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함(권오혁, 2002; 문태현, 1997)
- 통합청주시 청사 입지 선정 연구에서는 청사 위치선정의 평가기준으로 토지적합성, 개발 경제성, 지역 상징성, 접근성·편리성, 균형 발전성의 5가지 항목을 평가하여 청사 후보지를 선정한 후 후보지 평가와 주민선호도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결정함(김병국 외., 2013)

### □ 공공시설 입지 타당성 분석

- 「지방재정법」상 공공시설 입지 타당성 분석은 정성지표와 정량지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정성지표는 법규상 입지 적합성, 토지이용 적합성, 접근 편의성, 부지확보 용이성, 지역발전 파급성, 환경 쾌적성 등을 포함함
  - 정량지표는 공간적 효율성과 공간적 형평성 등을 포함함

## 3. 국내·외 사례 분석

### □ 동남권 사례

-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는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단일형 사무소를 전제로 대안을 검토하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기능과 연관된 구성 자치단체 지역을 고려함
-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위치는 기존 도청 이전 입지선정 기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된 기준 가운데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위치 선정에 불필요한 기준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준을 적용하여 대안을 도출함
  - 위치 선정 기준: 지리적 중심성, 민원인 접근성, 지역 균형발전, 경제적 효율성, 부지확보 용이성
- 따라서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위치로 논의되는 곳은 부산, 울산, 경남이며, 각각 기능 특성별로 연관지역을 분산배치하는 방향을 검토함
  - 부산: 기획조정, 행·재정, 광역교통, 유통물류 등
  - 울산: 산업경제, 재난안전 등
  - 경남: 문화관광, 지역계획, 중기벤처 등

### □ 해외 사례

- 해외의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를 단일형 또는 분산형으로 운영하는 사무소 형태와 단일형의 입지선정 기준의 사례 등이 있음

-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의 경우 단일형 사무소를 두고 있고, 지역 내 중심부에 위치한 오사카시에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음

〈그림 3-3〉 간사이 광역연합 사무소 위치



- 영국 맨체스터 지역연합 역시 단일형 사무소를 맨체스터시에 두고 있음

〈그림 3-4〉 맨체스터 지역연합 사무소 위치



- 두 가지 사례를 볼 때, 사무소 위치는 지역의 중심지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형태는 단일 사무소를 활용하고 있으며, 위치는 지역 내 중심지이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음

#### 4. 검토대안 및 소결

##### □ 검토대안

-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효율성을 고려할 때 단일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을 대안으로 보고 있음
-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위치의 경우 지리적 중심성, 민원인 접근성, 지역 균형발전, 경제적 효율성, 부지확보 용이성 등을 검토할 때, 다음의 네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안동시)
  - 분리안(대구광역시 광역교통, 경상북도 광역관광)
  - 통합신공항 부지(군위군)

##### □ 소결

- 향후 대구·경북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위치를 확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 제4절 관장사무 설계

### 1. 법제분석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02조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위치는 구성단체의 합의결정에 따라 규약사항으로 정하도록 하는 동시에 동법 제199조에 의하면 국가사무 위임요청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자치단체인 대구와 경북의 이관사무와 국가의 위임 필요사무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 2. 국내 사례 분석

#### □ 부울경 사례

-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장사무는 일차적으로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이관사무로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에서 제시한 생활공동체와 경제공동체 및 문화공동체 조성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무들을 이관함
  - 산업경제분야: 부울경 산업과학 혁신체계 구축, 부울경 원전해체산업 육성지원기구 설립운영, 부울경 에너지공사 설립운영, 부울경 창업생태계 조성, 부울경 해외사무소 공동 운영, 부울경 일자리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부울경 비즈니스라운지 운영,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대상 광역본부 유치
  - 교통분야: 1시간 생활권 광역철도망 구축, 부울경 광역교통체계 구축
  - 물류분야: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 재난안전분야: 부울경 원전재난 대응 공동체계 구축, 부울경 지진방재연구 클러스터 구축, 부울경 대기오염물질 공동조사체계 구축
  - 문화관광분야: 부울경 광역관광 공동 마케팅
  - 교육분야: 부울경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표 4-5〉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 - 구성 자치단체 사무

구분	내용
산업경제	부울경 산업과학 혁신체계 구축
	부울경 원전해체산업 육성지원기구 설립운영
	부울경 에너지공사 설립운영
	부울경 창업생태계 조성
	부울경 해외사무소 공동 운영
	부울경 일자리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부울경 비즈니스라운지 운영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대상 광역본부 유치
교통	1시간 생활권 광역철도망 구축
	부울경 광역교통체계 구축
물류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재난안전	부울경 원전재난 대응 공동체계 구축
	부울경 지진방재연구 클러스터 구축
	부울경 대기오염물질 공동조사체계 구축
문화관광	부울경 광역관광 공동 마케팅
교육	부울경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 이차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대도시광역권교통위원회의 관장사무 가운데 위임이 필요한 사무를 국가에 요청함
- 지방고용노동지청: 기획총괄, 지역협력, 취업지원(고용센터), 기업지원
  - 지방유역(환경)청: 유역계획, 환경관리, 폐자원에너지, 측정분석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벤처창업지원, 수출지원, 인력지원, 재해중소기업 등 지원, 비즈니스 링크지원, 시험연구지원, 기술지원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의 광역교통정책과, 광역버스과, 광역교통요금과 업무와 광역교통운영국의 광역시설운영과, 간선급행버스체계과, 광역환승시설과 업무

〈표 4-6〉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 - 특행기관 및 대도시광역권교통위원회 사무

구분	내용	
지방고용노동청	기획총괄	
	지역협력	
	취업지원(고용센터)	
	기업지원	
지방유역환경청	유역계획	
	환경관리	
	폐자원에너지	
	측정분석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벤처창업지원	
	수출지원	
	인력지원	
	재해중소기업 등 지원	
	비즈니스 링크지원	
	시험연구지원	
	기술지원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정책과 업무
		광역버스과 업무
		광역교통요금과 업무
	광역교통운영국	광역시설운영과 업무
		간선급행버스체계과 업무
		광역환승시설과 업무

○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최종적으로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이관이 필요한 사무로 5개 분야 17개 기능으로 선정함

〈표 4-7〉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최종 관장사무

분야	세부 기능	
산업경제 (3)	산업과학 혁신체계 구축(지역 R&D 등)	
	수소 경제권 구축	
	창업 생태계 조성	
재난환경 (2)	원전 재난 대응체계 구축	
	미세먼지 등 대기질 관리	
교통물류 (6)	광역교통 시스템 구축	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구축
		대중교통 광역 환승체계 구축
		광역급행버스 도입
	광역도로망 구축	
	광역철도망 구축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문화관광 (2)	광역관광 공동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부산 월드엑스포 공동 대응체계 구축	
보건복지 식품교육 (4)	보건의료 통합관리체계 구축	
	평생학습체계 구축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부울경 먹거리 공동체 구축	

### 3. 해외 사례 분석

#### □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 광역연합의 사무는 크게 설립당초 규약에 의한 기본수행사무, 광역연합사무와 관련된 상급기관에 관련 권한의 일부를 요구하여 수행하는 사무, 구성 자치단체의 별도 처리요청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무로 나눌 수 있음
  - 광역연합의 기본수행사무는 “지방자치단체와 특별구가 수행하는 사무로서 광역에 걸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광역에 걸쳐서 처리하는 것은 “광역에 걸친 종합계획 작성”, “광역계획 실시를 위한 연락 조정”, “광역계획의 집행” 등을 의미함
  - 광역연합사무와 관련된 상급기관에 관련 권한의 일부를 요구하여 수행하

- 는 사무는 도도부현이 가입하지 않은 광역연합의 경우 동일한 절차로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하는 것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무를 의미함
- 구성 단체의 별도 처리요청에 의한 수행사무란 도도부현이 그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광역연합사무로 가입하지 않은 사무와 관련된 것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역연합이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 것에 근거한 것임
- 광역연합의 주요 사무는 광역방재사무를 포함한 7개 분야의 사무임
- 2021년 1월 기준으로 기존 7개 분야 내 일부 사무가 추가됨
  - 광역관광/문화분야에 스포츠 진흥업무가 추가되어 관광/문화/스포츠진흥부로 바꾸었고, 광역산업진흥분야에는 농수산사무가 포함되었음

〈표 4-8〉 간사이 광역연합 수행 가능 분야 및 사무내용

분야	사무내용
광역방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사이 방재·재난감소플랜' 및 '간사이광역지원실시요강'의 총실·발전</li> <li>- 대규모 광역재해를 상정한 광역대응 추진</li> <li>- 재해시 물자공급의 원활화 추진</li> <li>- 관서광역지원훈련의 실시</li> <li>- 방재분야의 인재육성 등</li> </ul>
광역관광/문화 /스포츠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사이 관광·문화 진흥계획'의 전략적 추진</li> <li>- '도쿄올림픽·패럴림픽'과 '월드마스터스게임즈2021 간사이' 등을 위한 관광 추진</li> <li>- 광역관광의 다양한 전개어로 간사이로의 관광객 유치</li> <li>- 전략적인 프로모션 전개</li> <li>- 민관이 일체가 된 광역연계 DMO 추진</li> <li>- 지오파크 활동 추진</li> <li>- '평생스포츠 선진지역 간사이' 실현</li> <li>- '스포츠의 성지 간사이' 실현</li> <li>- '스포츠 투어리즘 선진지역 간사이' 실현 등</li> </ul>
광역산업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사이 광역산업 비전' 추진</li> <li>- 간사이지역의 잠재력 홍보 강화</li> <li>- 간사이지역의 우수성을 살린 이노베이션 창출 환경·기능 강화</li> <li>- 고부가가치화에 의한 중견·중소기업 등의 성장 지원</li> <li>- 개성 풍부한 지역의 매력을 살린 지역경제의 활성화</li> <li>- '간사이 광역농림수산업 비전' 추진</li> </ul>

분야	사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생산/지역소비 운동 추진에 의한 지역내 소비 확대</li> <li>- 음식문화의 해외홍보에 의한 수요확대</li> <li>- 국내외 농림수산물물의 판로 확대 등</li> </ul>
광역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사이 광역구급의료연계계획' 추진</li> <li>- 닥터헬기의 활용 등에 의한 광역구급의료체제의 내실화</li> <li>- 재해시의 광역의료체제 강화</li> <li>- 과제해결을 위한 광역의료체제 구축 등</li> </ul>
광역환경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사이 광역환경보전계획' 추진</li> <li>- 재생에너지 확대와 저탄소사회 조성 추진</li> <li>- 자연공생형 사회조성의 추진</li> <li>- 순환형 사회조성의 추진</li> <li>- 환경인재육성의 추진 등</li> </ul>
자격시험/면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간호사·조리사·제과위생사 시험의 실시, 면허 교부</li> <li>- 독극물 취급자·등록판매자 시험의 실시 등</li> </ul>
광역직원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형성능력연수 실시</li> <li>- 구성단체 주최 연수의 상호참가(단체연계형 연수)</li> <li>- 인터넷을 활용한 연수 실시 등 연수효율화 대처 등</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인프라</li> <li>- 에너지정책</li> <li>- 특구사업</li> <li>- 수도기능백업 등</li> </ul>

출처: 関西広域連合 HP(<https://www.kouiki-kansai.jp/koikirengo/jisijimu/153.html>). 금창호 외(2021) 재인용

## □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 지역연합의 사무는 의무사무와 임의사무로 구분할 수 있음<sup>9)</sup>

- 의무사무는 지역기본계획 수립, 폐기물처리(일부), 광역교통 운영·관리, 경제육성, 관광마케팅 등을 포함함
- 지역기본계획 수립은 공간이용계획, 녹지기본계획, 녹지공원계획 등을 포함하고 광역교통은 교통계획수립, 전철·지하철·철도·광역버스 등을 포함하며 경제육성은 산업클러스터를 포함함

9) 부울경(2021).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부문별계획 최종보고서.

- 임의사무는 폐기물처리(일부), 국제박람회, 문화, 스포츠 등 행사유치 등을 포함하며 사무발굴의 권한을 부여함

〈표 4-9〉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관장사무

구분	내용	
의무사무	지역기본계획 수립	공간이용계획
		녹지기본계획
		녹지공원계획 등
	폐기물처리	일부 분야
	광역교통 운영·관리	교통계획수립
		전철·지하철·철도·광역버스 등
	경제육성	산업클러스터
관광마케팅 등	-	
임의사무	폐기물처리	일부 분야
	행사유치	국제박람회·문화·스포츠 등
	사무발굴 권한 부여	-

#### 4. 검토기준

-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검토
-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를 검토하기 위한 기준으로 선행연구 검토, 국내외 사례 분석을 실시하여 1단계 광역사무 대상군을 발굴함

〈표 4-10〉 1단계 검토를 통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 대상군

대구분	중구분		소구분	
산업경제	광역산업	광역산업계획	광역산업클러스터	신상품조달인정제 벤처기업 지원
	광역고용		고용 및 기업 지원	
	광역경제		경제성장	
교통	광역교통		지역교통관리	지역교통계획
물류	교통물류 기반		교통물류	
	광역방재	광역방재 계획	재해발생 시 광역지원체계	합동방재훈련 광역 신종인플루엔자 계획 검토
문화관광	광역관광	지역관광 마케팅	관광단지 해외관광홍보	광역통역안내 기관 관광안내표시 기준 통일
	광역문화	광역문화계획		교육문화체육시설
교육	초중고등학교 교육	학교행정		
보건의료	광역의료	광역구급의료체계 계획		광역 덕터헬기

대구분	중구분	소구분	
	광역보건	식품위생(조리사, 제과위생사) 자격 시험 및 면허 교부 준간호사 자격 시험 및 면허 교부	
환경	광역환경	지역에너지계획	
	광역대기	기후보호	
	광역상하수도수질	상수도	기후보호 기후보호 상수원보호
	광역폐기물	폐기물처리	상수원보호 쓰레기수거
지역개발	광역시설관리 (지하철, 교량, 항공, 공간, 택지, 공원, 공유수면)	토지이용계획 주택건설	
경찰			
소방	소방	소방	
복지	주민복지	사회연대 삶의 질	
조세	관세관리	관세관리	
행정 및 기타	광역행정추진	광역행정추진	
	행정위원회 공동사무 검토	전산화전략	
	광역자치면연수	커뮤니티 개발	
		공설시험연구기관	

자료: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연구자 정리

## □ 설치목적 및 상호협력 분야

- 대구와 경북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임
- 또한 대구와 경북은 중장기적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디딤돌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 현재 대구와 경북은 상호협력과제를 수행하거나 계획하고 있음
  - 상호협력과제는 광역교통, 광역문화관광, 통합신공항 사업임
-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무 분야로 광역교통, 광역문화관광, 통합신공항 사업을 도출함

〈표 4-11〉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 분야

대구분	중구분	광역성 적합도		효율성 적합도		종합
		상호협력	분쟁조정	규모경제	범위경제	
산업경제	광역산업					
	광역고용					
	광역경제					
교통	광역교통	○		○	○	○
물류	교통물류 기반					
재난안전	광역방재					
문화관광	광역관광	○		○	○	○
	광역문화	○		○	○	○
교육	초중고등학교 교육					
보건의료	광역의료					
	광역보건					
환경	광역환경					
	광역대기					
	광역상하수도수질		○			
	광역폐기물					

대구분	중구분	광역성 적합도		효율성 적합도		종합
		상호협력	분쟁조정	규모경제	범위경제	
지역개발	광역지역계획 수립·조정·관리					
경찰						
소방	소방					
복지	주민복지					
조세	관세관리					
행정	광역직원연수					
기타	통합 신공항 건설	○	○			○

□ 협력과제 수행실태

- 대구와 경북은 통합신공항사업, 광역교통, 광역관광, 광역문화의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각 협력사업 내용 및 담당부서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4-12〉 협력사업 현황

구분	중기능	소기능	사업(과제)	담당부서	
				대구	경북
교통 물류	항공 공항	일반공항건설	대구공항 통합 이전	공항정책과	통합신공항 추진단
	광역 교통	광역철도	대구권 광역철도(1단계: 구미-경산)	철도시설과	도로철도과
			(2단계: 김천 연장)	철도시설과	도로철도과
			(3단계: 대구-경북 광역철도)	철도시설과	도로철도과
			대구도시철도 연장(1호선 하양 연장)	도시철도 건설본부/ 철도시설과	도로철도과
			(1호선 금호 연장)	도시철도 건설본부/ 철도시설과	도로철도과
			(3호선 동명 연장)	철도시설과	도로철도과
	(1호선 진량 연장)	철도시설과	도로철도과		

구분	중기능	소기능	사업(과제)	담당부서	
				대구	경북
		광역도로	조야~동명간 광역도로 건설	도로과	도시재생과
		광역환승제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시행	버스정책과	교통정책과
문화 체육 관광	광역 관광	관광산업개발	대구경북 관광특별전 개최	관광과	관광마케팅과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	관광과	관광정책과
			선비이야기여행 관광패스 운영	관광과	관광정책과
			대구경북 관광상품 성공모델 개발	관광과	관광마케팅과
			대구경북 관광통합	관광과	관광마케팅과
			대구경북 공동크루즈상품 개발	관광과	동해안정책과
	문화재보존	팔공산 석조불상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유산과	
	문화정책		한뿌리 사투리 경연대회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사업 교류협력 추진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예술과
			대구경북 상생 시민생활체육대축전 교류참가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 5. 검토대안 및 소결

### □ 검토대안

-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무는 중장기적 행정통합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네 가지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협력사무 중심 관장사무 정리
  - 협력사무 + 연관사무 중심 전문연구진 검토안
  - 협력사무 + 연관사무 중심 해당 부서장 검토안
  - 4개 기능(통합신공항, 광역교통, 광역관광, 광역문화) 관련 부서 사무
- 첫째, 협력사무 중심 대안의 경우 현재 협력하는 사무 중심이기 때문에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조직·인력·재정

사항을 분리하기 용이함

- 다만,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가 많지 않아 작은 규모의 조직·인력·재정 등을 운용하게 되며,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의 의의가 높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

〈표 4-13〉 현재 협력사업 현황

구분	중기능	소기능	사업(과제)	담당조직	
				대구	경북
교통 물류	항공 공항	일반공항건설	대구공항 통합 이전	공항정책과	통합신공항 추진단
	광역 교통	광역철도	대구권 광역철도(1단계: 구미-경산)	철도시설과	도로철도과
			(2단계: 김천 연장)	철도시설과	도로철도과
			(3단계: 대구-경북 광역철도)	철도시설과	도로철도과
			대구도시철도 연장(1호선 하양 연장)	도시철도 건설본부/철 도시설과	도로철도과
			(1호선 금호 연장)	도시철도 건설본부/철 도시설과	도로철도과
			(3호선 동명 연장)	철도시설과	도로철도과
			(1호선 진량 연장)	철도시설과	도로철도과
	광역도로	조아~동명간 광역도로 건설	도로과	도시재생과	
	광역환승제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시행	버스정책과	교통정책과	
문화 체육 관광	광역 관광	관광산업개발	대구경북 관광특별전 개최	관광과	관광마케팅과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	관광과	관광정책과
			선비이야기여행 관광패스 운영	관광과	관광정책과
			대구경북 관광상품 성공모델 개발	관광과	관광마케팅과
			대구경북 관광통합	관광과	관광마케팅과
	대구경북 공동크루즈상품 개발	관광과	동해안정책과		
문화재보존	팔공산 석조불상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문화예술정 책과	문화유산과		
문화정책	한부리 사투리 경연대회	문화예술정 책과	문화예술과		

구분	중기능	소기능	사업(과제)	담당조직	
				대구	경북
			문화예술사업 교류협력 추진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예술과
			대구경북 상생 시민생활체육대축전 교류참가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 둘째, 협력사무와 연관사무를 전문연구진 및 해당 부서장이 검토한 결과로, 현재 협력하는 사무와 연관사무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협력과제와 이에 연관된 기능까지 포괄하여 범위의 경계를 실현할 수 있음. 예를 들어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과 연관된 관광마케팅 기획·홍보 등을 함께 수행할 때 누락된 기능을 줄이고, 조직·인력·재정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음
- 다만, 협력사무와 연관된 사무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고, 이에 따른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음

〈표 4-14〉 협력사무+연관사무: 전문연구진 검토

구분	중기능	소기능	사업(과제)	연관사무(대구)	연관사무(경북)
교통물류	항공공항	일반공항 건설	대구공항 통합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통 관련 행사 및 사업 추진, 중앙정부 및 타시도 협력사업, 국회에 관한 사항</li> <li>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실 및 미래공간개발 본부장실 관리</li> <li>민항활성화팀 업무 총괄</li> <li>통합신공항 민간단체 활동 지원 및 협력 등</li> <li>대구공항 활성화</li> <li>민항이전팀 업무 총괄</li> <li>대구 민간공항 이전</li> <li>통합공항(민항) 접근성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신공항추진단 총괄</li> <li>공항기획팀 업무 총괄</li> <li>업무계획 및 지시사항 처리</li> <li>통합신공항 홍보 업무, 주요 업무보고, 의회 등</li> <li>예산 및 결산, 성과관리, 회계, 서무 등</li> <li>이전지원팀 총괄</li> <li>이전지원사업, 지역개발사업 발굴 등</li> <li>동향 및 공항소음</li> <li>공항신도시조성 업무 전반</li> <li>공항신도시 및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 등</li> <li>통합신공항 광역교통망 구축 등</li> <li>공항활성화 업무 총괄</li> <li>지방공항 활성화업무 추진</li> <li>지방공항 활성화업무 추진(예천, 울진)</li> <li>항공레저산업 활성화 및 이착륙장 조성 업무</li> <li>주민친화형 지방공항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li> <li>항공기 관련 재난(사고) 업무</li> <li>지방공항 공역 협의</li> </ul>
	광역교통	광역철도	대구권 광역철도(1단계 : 구미~경산) 광역철도(2단계: 김천~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구권 광역철도(1단계 : 구미~경산) 건설 추진업무</li> <li>대구권 광역철도(2단계 : 김천~밀양) 건설 추진업무</li> <li>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철도지원 업무 총괄</li> <li>국가철도망</li> <li>광역 및 도시철도 관련업무 등</li> <li>철도건설사업 사업계획(변경) 승인관련 업무</li> </ul>

구분	중기능	소기능	사업(과제)	연관사무(대구)	연관사무(경북)
			(3단계: 대구-경북 광역철도)  대구도시철도 연장(1호선 하양 연장)  (1호선 금호 연장)  (3호선 동명 연장)  (1호선 진량 연장)  <b>(계획)</b> 광역교통 철도순환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구·경북 광역철도(통합신공항 경유) 건설 추진업무</li> <li>대구권 광역철도 운영계획 및 연계교통 업무</li> <li>대구·경북 광역교통 철도순환망 관련 업무</li> <li>신교통 수단 도입 교통영향분석</li> <li>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요 분석</li> <li>철도분야 사전·에비타당성조사 교통수요 예측 분석 지원</li> <li>신교통시스템 도시철도망 구축 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철도 지원 및 예산</li> <li>도시철도 건설지원</li> <li>철도건설사업 추진지원 및 상황관리</li> <li>공사(설계)관리관 업무</li> <li>도로건설 점검(안전, 품질, 시공)</li> <li>도로계획 업무 총괄</li> <li>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국도 관련 업무 중앙부처 건의 및 시군 협의조정</li> <li>지방도 연도별 투자계획</li> <li>투융자 기본 및 장기계획</li> <li>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등</li> <li>국지도 사업 추진</li> <li>공사(설계) 감독 및 지원 등</li> <li>지방도 입안고시 및 도로구역 결정</li> <li>지방도 일반 설계기준 작성</li> <li>지방도 사용개시 및 폐지</li> <li>공사(설계) 감독 및 지원</li> <li>도로관리 업무 총괄</li> <li>위임국도 및 지방도로 유지보수 계획 수립</li> <li>지방도 유지보수 예산 업무</li> <li>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계획수립</li> <li>지방도재해복구계획 수립</li> <li>국가지원 지방도 및 지방도 공사감독 및 지원</li> <li>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 및 관리</li> <li>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li> <li>지역현안도로 사업계획 수립</li> <li>공사감독 및 지원</li> </ul>
	광역도로	조야~동명간 광역도로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도로 국가계획반영 및 예타 신청업무</li> <li>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li> <li>시장공약, 지시사항 처리</li> <li>도로건설 설계용역관련 업무</li> <li>도로건설사업 집행계획 수립 조정 총괄</li> <li>도로건설사업 공정 및 사업비 관리 총괄</li> <li>도로건설사업 설계용역 업무 총괄</li> </ul>	

구분	중기능	소기능	사업(과제)	연관사무(대구)	연관사무(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교통인프라개선사업</li> <li>지방도 유지관리</li> <li>공사(설계) 감독 및 지원</li> <li>춘추계 도로정비 등</li> <li>위임국도 예산업무</li> <li>위임국도 유지관리사업 계획수립 및 각종 민원처리</li> <li>지방도 재해복구사업 추진</li> <li>여름철 겨울철 재해 사전대비, 도로연결에 관한 업무(하기업무)</li> <li>공사(설계) 감독 및 지원</li> </ul>
	<p>광역 환승제</p>		<p>대구-경북 공동생활권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li> <li>시내버스 요금 및 환승체계에 관한 사항</li> <li>교통카드 전반에 관한 업무</li> <li>버스정책 계획수립 및 교통수요(교통체계) 관리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수요 관리 등)</li> <li>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정책분야)</li> <li>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등 서비스 개선 정책에 관한 업무</li> <li>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 교육 등에 관한 업무</li> <li>시내버스 디자인(색상) 관한 사항</li> <li>시내버스 요금 및 환승체계에 관한 지원 업무</li> <li>디지털 운행기록계 및 광역일몰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li> <li>시내버스 운행계획 및 배차시간에 관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교통</li> </ul>

구분	중기능	소기능	사업(과제)	연관사무(대구)	연관사무(경북)
문화체육 관광	광역관광	관광 마케팅	대구경북 관광특별진 개최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신비이(기)여행 관광패스 운영  대구경북 관광상품 성공모델 개발  대구경북 관광통합  대구경북 공동크루즈상품 개발  <b>(계획)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및 관광자원개발</b>	사항 • 각종 행사 시 시내버스 노선운영에 관한 사항 • 시내버스 운행계획·배차계획 데이터 관 리에 관한 사항 • 시내버스 노선운영 관련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농촌형 교통모델에 관한 사항 • 대구·경북관광 공동협력 사업 추진 • 대구·경북 한박리 상생사업 총괄, 대구· 경북관광 특별진 •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코리아토털관광 패키지(KTTP) • 관광자원개발 사업추진(토목분야) (팔공 산 관광활성화 사업, 앞산관광명소화사 업, 봉무섬표공원 조성사업, 윗골마을 한 류 체험관광명소화 사업, 소규모 관광인 프라 개선 및 유지 관리 등) •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지정관련 업무 •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추진 (3대문화 대학 운영, 대구·경북 스타관광벤처 육 성, 대구오트세이 프로젝트 추진, 신신가 유 프로젝트 추진, 네추럴대구 프로젝트 추진, 3대문화형 체험기반 환경조성, 3대 문화권 홍보채널 다각화 및 홍보강화, 3 대문화권 통합홍보 및 관광박람회 개최) • 국고보조금 관리·운영(3대문화권 관광진 흥사업)	• 관광마케팅 기획, 홍보, 등 • 온라인 관광마케팅 • 관광통계 • 백두대간인문캠프 • 관광DB관리 • 국내마케팅 업무 총괄 • 국내 관광상품 개발 • 도시군관광협의체 • 마이스유치원 • 경북관광 홍보물 • 해외마케팅 업무 총괄 • 해외 홍보 마케팅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해외마케팅 • 도내 축제관련 업무 전반 • 축제업무

구분	중기능	소기능	사업(과제)	연관사무(대구)	연관사무(경북)
	문화재보존		필곡산 석조불상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관련 기본계획 수립</li> <li>주요업무계획</li> <li>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지원(도비)</li> <li>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등</li> <li>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국비)</li> <li>국가도지정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지원(돌·특·특별)</li> </ul>
			한부리 사투리 경연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li> <li>문화재 지킴이사업 추진</li> <li>문화재 재해</li> <li>재난대책 수립 시행</li> <li>문화재관리 법인 및 문화재 매매업무 일</li> </ul>
	문화정책		문화예술행업 교류협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권에 관한 사항 (문화영향평가 포함)</li> <li>세계문화유산 한국의서원 보존·관리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리창출업무</li> <li>명예관리인 임명</li> <li>문화재보존업무 총괄</li> <li>문화재보수사업 지침 수립</li> <li>문화재수리업자 행정처분</li> <li>문화재 보수정비 및 현상변경허가</li> <li>문화재 보수사업 관리 감독</li> <li>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운영</li> <li>문화재 지정(건조를 분야) 및 보호구역 정비관리</li> </ul>
			대구경북 상생 시민생활체육대축전 교류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 지정(건조를 분야) 및 보호구역 정비관리</li> <li>도문화재 국기승격 및 등급조정</li> <li>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 및 관리업무</li> <li>문화재 보수정비 및 현상변경허가(포항, 안동, 영양, 예천, 울진)</li> <li>문화재보수사업 관리감독</li> </ul>

구분	중기능	소기능	사업(과제)	연관사무(대구)	연관사무(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수리업 신규등록</li> <li>• 문화재 수리업 변경신고</li> <li>• 문화재 수리현장 안전점검</li> <li>• 문화재 보수정비 및 현상변경허가(김천, 구미, 영주, 상주, 의성, 형성, 고령, 상주, 봉화)</li> <li>• 문화재대상 DB관리(건조물분야)</li> <li>• 문화재수리업체 및 기술자 변경</li> <li>•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상황 정리</li> <li>•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현황 정리</li> <li>• 통계자료 정리</li> <li>• 문화재활용 업무 총괄</li> <li>• 세계유산 정책수립 및 등재</li> <li>• 종가문화 명품화 사업 등</li> <li>• 문화재 활용 사업</li> <li>• 문화재연구업무 총괄</li> <li>• 가야사 연구복원 업무 총괄</li> <li>• 가야사 조사연구 및 정비계획 수립</li> <li>• 가야문화권 발굴조사 및 복원·정비사업 추진</li> <li>•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li> <li>• 기타 가야문화권 관련 업무 추진 등</li> </ul>

〈표 4-15〉 협력사무+연관사무: 해당 부서장 검토

구분	중기능	소기능	사업(과제)	연관 및 위임요청사무(대구)	연관 및 위임요청사무(경북)
교통 물류	항공 공항	일반 공항 건설	대구공항 통합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통 관련 행사 및 사업 추진, 중앙정부 및 타 시도 협력사업, 국회에 관한 사항</li> <li>• 민항활성화팀 업무 총괄</li> <li>• 통합신공항 민간단체 활동 지원 및 협력 등</li> <li>• 대구공항 활성화</li> <li>• 민항이전팀 업무 총괄</li> <li>• 대구 민간공항 이전</li> <li>• 통합공항(민항) 접근성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홍보·소통계획 수립</li> <li>• 타시도 신공항관련 여론 및 동향관리(정책토론회, 포럼, 간담회 등)</li> <li>• 중앙정부·타시도 공조체제 구축 및 협력강화</li> <li>• 이천지역 주민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통합신공항 기본구상,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조정 및 협의</li> <li>• 경상북도 항공정책 자문위원회 운영</li> <li>• 항공정책기본계획 및 공항개발종합계획 협의</li> <li>• 민항 터미널 계획 및 스마트공항조성 계획 협의</li> <li>• 민항청사 운영 관련 업무 협의 등</li> <li>•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구비 확보 및 업무 협의</li> <li>• 통합신공항 배후도시(항공클러스터, 산업단지) 구상 및 개발에 관한 사항</li> <li>• 통합신공항 광역교통망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li> <li>• 통합신공항 배후도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협의</li> <li>• 통합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운영 추진</li> <li>• 통합신공항 관련 각종 영향평가(소음, 환경, 교통 등) 협의 및 추진</li> <li>• 통합신공항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li> <li>• 항공물류 확대 및 물류단지 활성화 계획 수립</li> <li>• 물류단지 이용 운송업체 유치 등 업무 협의</li> <li>• 통합신공항 배후도시 및 광역교통망 관련 각종 영향평가 및 용역 지원</li> <li>•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li> </ul>

구분	중기능	소기능	사업(과제)	연관 및 위임요청사무(대구)	연관 및 위임요청사무(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방도 사업 관련 업무</li> <li>• 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개발행위 및 부동산 거래허가 제한 등</li> <li>• 군 공항 및 지방공항 소음 관련 업무</li> <li>• 군 공항 소음영향도 조사 및 보상 관련 업무</li> <li>•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업무 협의</li> </ul>																																				
	<p>광역 교통</p>	<p>광역 철도</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81 1178 512 1234">1단계</td> <td data-bbox="381 1095 512 1178">대구 권 광역 철도</td> </tr> <tr> <td data-bbox="512 1178 580 1234">·</td> <td data-bbox="512 1095 580 1178"></td> </tr> <tr> <td data-bbox="580 1178 648 1234">구미-경산</td> <td data-bbox="580 1095 648 1178"></td> </tr> <tr> <td data-bbox="648 1178 716 1234">2단계</td> <td data-bbox="648 1095 716 1178"></td> </tr> <tr> <td data-bbox="716 1178 784 1234">·</td> <td data-bbox="716 1095 784 1178"></td> </tr> <tr> <td data-bbox="784 1178 853 1234">김천 연장</td> <td data-bbox="784 1095 853 1178"></td> </tr> <tr> <td data-bbox="853 1178 921 1234">3단계</td> <td data-bbox="853 1095 921 1178"></td> </tr> <tr> <td data-bbox="921 1178 989 1234">·</td> <td data-bbox="921 1095 989 1178"></td> </tr> <tr> <td data-bbox="989 1178 1057 1234">대구-경북 광역 철도</td> <td data-bbox="989 1095 1057 1178"></td> </tr> <tr> <td data-bbox="1057 1178 1102 1234">1호선</td> <td data-bbox="1057 1095 1102 1178"></td> </tr> <tr> <td data-bbox="1102 1178 1170 1234">·</td> <td data-bbox="1102 1095 1170 1178"></td> </tr> <tr> <td data-bbox="1170 1178 1238 1234">하양 연장</td> <td data-bbox="1170 1095 1238 1178"></td> </tr> <tr> <td data-bbox="1238 1178 1260 1234">1호선</td> <td data-bbox="1238 1095 1260 1178"></td> </tr> <tr> <td data-bbox="1306 1178 1260 1234">·</td> <td data-bbox="1306 1095 1260 1178"></td> </tr> <tr> <td data-bbox="1374 1178 1260 1234">금호 연장</td> <td data-bbox="1374 1095 1260 1178"></td> </tr> <tr> <td data-bbox="1442 1178 1260 1234">3호선</td> <td data-bbox="1442 1095 1260 1178"></td> </tr> <tr> <td data-bbox="1510 1178 1260 1234">·</td> <td data-bbox="1510 1095 1260 1178"></td> </tr> <tr> <td data-bbox="1578 1178 1260 1234">동명</td> <td data-bbox="1578 1095 1260 1178"></td> </tr> </table>	1단계	대구 권 광역 철도	·		구미-경산		2단계		·		김천 연장		3단계		·		대구-경북 광역 철도		1호선		·		하양 연장		1호선		·		금호 연장		3호선		·		동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달빛내륙철도 건설 업무</li> <li>• 국비관련 업무추진</li> <li>• 대구권 광역철도(1단계 : 구미~경산) 건설 추진업무</li> <li>• 대구권 광역철도(2단계 : 김천~밀양) 건설 추진업무</li> <li>• 대구·경북 광역철도(통합신공항 경유) 건설 추진업무</li> <li>• 대구권 광역철도 운영계획 및 연계교통 업무</li> <li>• 대구·경북 광역교통 철도순환망 관련 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부설 관련 업무(도시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li> </ul>
1단계	대구 권 광역 철도																																								
·																																									
구미-경산																																									
2단계																																									
·																																									
김천 연장																																									
3단계																																									
·																																									
대구-경북 광역 철도																																									
1호선																																									
·																																									
하양 연장																																									
1호선																																									
·																																									
금호 연장																																									
3호선																																									
·																																									
동명																																									



구분	중기능	소기능	사업(과제)	연관 및 위임요청사무(대구)	연관 및 위임요청사무(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분야 공유재산 관련 업무</li> <li>• 도로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기획 업무</li> <li>• 유지관리 예산 관련 업무</li> <li>• 가로등, 보안등 및 전기관련업무</li> <li>• 사회재난(터널방재 등) 안전관리 업무</li> <li>• 자연재난(도로방재 등) 안전관리 업무</li> <li>• 교량, 지하도, 육교 등 구조물 유지관리</li> <li>• 민자사업(도로분야) 계획수립 및 시행 업무총괄</li> <li>• 민자사업(도로분야) 제도 관련 업무총괄</li> <li>• 유료도로 관리·운영 및 지도·감독 업무총괄</li> <li>• 도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총괄</li> <li>• 민자사업(도로분야) 계획, 예산, 국회, 의회, 당 정합의회, 시장지사사항, 대외합의 업무</li> <li>• 유료도로 관리·운영 업무</li> <li>• 스마트도로망 구축계획 업무</li> <li>• 도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 지원</li> <li>• 도로관리 정보전산화 사업계획 수립</li> <li>• 스마트도로망 구축계획 업무 지원</li> <li>• 유료도로 통행료 심의위원회 및 통행료 관련 업무</li> </ul>	
		광역 환승제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련 사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수립 및 추진</li> </ul>
문화 체육 관광	광역 관광 관광 마케팅	관광 마케팅	대구경북 관광특별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자문단 및 관광정책협의회 운영</li> <li>• 중앙부처, 관광공사 등 중앙 협력사항</li> <li>• 대구·경북관광 공동협력 사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대 문화권 개발사업</li> <li>• 광역관광개발사업 등</li> </ul>

구분	중기능	소기능	사업(과제)	연관 및 위임요청사무(대구)	연관 및 위임요청사무(경북)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선비이야기여행 관광패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구·경북 한뿌리 상생사업 총괄, 대구·경북관광 특별전</li> <li>관광학과 대학생 대구경북 실전여행기획 지원</li> <li>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지정관련 업무</li> <li>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추진 (3대문화대학 운영, 대구·경북 스타관광벤처 육성, 대구오딧세이 프로젝트 추진, 신신기유 프로젝트 추진, 네츄럴대구 프로젝트 추진, 3대문화형 체험기반 환경조성, 3대문화권 홍보채널 다각화 및 홍보강화, 3대문화권 통합홍보 및 관광박람회 개최)</li> <li>코리도르탈광패키지(KTTP) 사업 총괄 (분야별 사업관리모니터링, 관리카드 운영), 포상 [KTTP 우수 추진사업 관련 공무원, 민간인])</li> <li>대구시티투어·근교권 투어 운영 및 관리</li> <li>중국, 동남아, 구미주 관광객 유치·홍보</li> <li>중화권(대만, 홍콩), 일본 관광객 유치·홍보</li> <li>글로벌 관광 육성 사업 추진</li> <li>코리도르탈패키지(KTTP) 사업 추진(문체부 공모사업) (관광항합력사업, 공연관광, 농촌관광, 방한외교네트워크)</li> <li>글로벌 관광알리미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유산 정책수립 및 등재 업무</li> <li>세계유산위원회 운영</li> <li>우리말과 우리글에 관한 업무</li> <li>지역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li> </ul>
	문화재보존		필공산 석조불상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문화정책	관광 산업 개발	(계획) 필공산 발공산 국립공원 승격 및 관광자원개발		

구분	중기능	소기능	사업(과제)	연관 및 위임요청사무(대구)	연관 및 위임요청사무(경북)
			시투리 경연대회 문화예술사업 교류협력 추진		
			대구경북 상생 양 시민생활체육 대추진 교류참가		

- 마지막으로 통합신공항, 광역교통, 광역관광, 광역문화 관련 4개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의 관장사무를 모두 이관하는 방안임. 전체 이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처리 시 불편이 최소화되고 동일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범위의 경계가 실현되며 사무와 연관된 조직·인력·재정의 효율성이 높아짐
  - 다만,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없는 사무를 다수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결사안과 구성자치단체의 의결사안 간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혼란을 겪을 수 있음

〈표 4-16〉 4개 기능 부서 관장사무

구분	대구 담당부서	경북 담당부서
통합 신공항 건설	공항정책과	통합신공항추진단
광역교통	버스운영과 철도시설과 도로과	도로철도과 교통정책과 도시재생과
광역관광	관광과	관광마케팅과 관광정책과 동해안정책과
광역문화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 제5절 기관구성 설계

### 1. 법제분석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04-205조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대립형을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규약사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에 따라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 단체장은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함
  -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각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43조 제1항 및 제109조에 의해 겸직이 금지됨
  - 반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과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동법 제204조 제2항 및 제205조 제2항에 따라 겸직이 가능함
- 「공직선거법」 타법개정안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0조 제2항에 따라 통합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해당 시를 관할하는 도의회의원의 정수와 해당 시의 도의회의원 정수는 통합 전의 수를 고려하여 통합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결정함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0조 제2항에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고 정함
    - 1)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이 경우 군의 인구는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28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며,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 2. 국내 사례 분석

### □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 의회는 균등할 원칙 및 인구할 원칙을 적용하되 보정인원으로 1명의 의원을 추가하여 의원 정수를 총 12명으로 하며, 구성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부산·울산·경남 각 4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고려함
  - 균등할 원칙에 따라 부산·울산·경남 각각 1명씩의 의원을 둬
  - 인구할 원칙에 의해 7,924,413명을 기준으로 인구 100만 명당 1명을 할당하여 총 8명의 의원을 둬
- 단체장은 외부인사를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을 겸할 경우 업무의 과부하라는 단점이 존재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장에 외부인사를 위촉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인력 위촉 등 기타 이점이 긍정적으로 고려됨
- 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는 사안을 논의함
  - 조직운영의 안정성 및 정책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단체장의 임기는 2년보다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이점이 있음
-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자치입법권, 자치사무·행정권, 자치인사권, 자치재정권을 가지며 초광역 사무, 과세권 이외에는 보통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가짐
  - 자치입법권은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결에 강제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이에 대한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음
  - 자치사무·행정권은 행정업무처리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법률이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역을 넘어서는 사무 처리가 용이해짐
  - 자치인사권은 광역연합의 조직운영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
  - 자치재정권의 경우 보통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권한은 없이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심의·확정 및 징수, 사용료 및 수수료

료 등에 대한 징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에 대한 권한이 보장됨

### 3. 해외 사례 분석

#### □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 일본에서 광역연합은 1995년부터 「지방자치법」제284조, 제285조 제2항, 제291조 제2~13항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다양한 광역수요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권한이양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음
- 광역연합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무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며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함
- 구성단체 간 협의에 의해 규약을 확정하고, 구성단체의 의회 의결을 거쳐 도도부현 가입은 총무대신, 그 밖에 시정촌, 특별구 지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가입은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함
  - 규약은 광역연합 명칭, 구성단체, 구역, 사무, 사무소 설치, 의회 및 집행기관 조직, 재정 등에 관한 사안을 정함
- 2007년 간사이협력기구에서 지방분권개혁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광역연합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12월 1일 발족함
  - 1955년 간사이경제연합회에서 도주제를 제안한 후 1999년 간사이연계 협의회 설립이 결정되었으며, 2006년 도주제특구추진법이 제정되어 2007년 설립된 간사이협력기구에서 광역연합을 추진함
  - 간사이협력기구는 간사이 지역의 2부 7현 4정령도시 및 7개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연계조직임
  - 현재는 도주제 등 간사이 지방의 지방자치단체의 완전 통합 추진은 중단되었으며, 법제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연합형태로 광역사무 및 사업을 수행함
- 간사이 광역연합의 설치 목적은 지방분권 실현, 책임성 확보, 효율성과 지역적 개성 추구 등임

- 지방분권 실현: 간사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형 사회를 실현함
  - 책임성 확보: 간사이 전체 광역행정을 담당할 책임주체를 구성함
  - 효율성과 지역적 개성 추구: 국가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중복행정을 지양하고, 간사이만의 독특한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지역 발전을 추구함
- 간사이광역연합에는 8개 부·현 및 4개 정령지정도시의 총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속함(2021년 기준)
- 2010년 간사이광역연합 설치 시 시가현, 교토부 등 2부 5현으로 시작하였으며, 2012년 교토시, 오사카시 등 정령지정도시, 2015년 나라현이 가입함
-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는 기관대립형 형태이며, 의회와 연합장을 둠
- 의회의원은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중 선출하며, 그 정수는 총 39명으로 함 (「간사이광역연합규약(関西広域連合規約)」 제8조)
  - 각 구성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는 의원의 수는 구성단체별 균등할 원칙에 따른 인원수에 인원할을 기준으로 하는 인원수를 더한 부현영역정수(府県域定数)를 기본으로 하되, 구성지정도시(오사카시, 교토시, 사카이시, 고베시), 구성지정도시를 포함한 부현 단위 구성단체, 기타 부현 단위 구성단체 등의 유형별로 선출 의원 수를 조정함 (「간사이광역연합규약」 제 9조)
    - 오사카부, 효고현: 각 5명
    - 시가현, 교토부, 와카야마현: 각 4명
    - 나라현, 도쿠시마현, 오사카시: 각 3명
    - 돗토리현, 교토시, 사카이시, 고베시: 각 2명
    - 의장: 오사카부, 부의장: 효고현
  - 의회의원의 임기는 구성단체 의회 의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까지임
  - 광역연합장은 구성단체의 장이 입후보하며 구성단체의 장들의 투표로 선

## 출됨

- 부광역연합장은 광역연합장이 구성단체의 장 중에서 선임함
- 광역연합장과 부광역연합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성단체 장의 지위를 잃을 시 그 직을 상실함

## □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 1973년 넥카중류광역조합(Regionalverband Mittlerer Neckar)이 설치된 후 1992년 슈투트가르트지역조합(Regionalverband Stuttgart)으로 개칭하고 현재까지 유지됨
  - 넥카중류광역조합은 넥카강 유역 6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되었으며, 조합회의는 구성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됨
  - 공간이용계획, 도시계획 등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기능을 함
- 1994년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슈투트가르트지역연합 설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des Verbands Region Stuttgart, GVRs)」에 의해 공식 설치됨
-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은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형성됨
  - 제조업과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던 슈투트가르트는 1990년대 초 제조업에 경제적 타격을 받으며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경제적 문제를 맞게 됨
  -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여러 차례 지역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혁신을 위한 대안적 거버넌스로 지역연합 설치안이 제시됨
  - 지역경제 발전 등 광역 내 공동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자치구역 경계를 넘어서는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유럽연합의 주요 경제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
- 법률에 근거하여 슈투트가르트시를 포함한 6개 광역 자치단체와 179개 기초 자치단체, 총 185개 자치단체가 참여함

- 의결기관으로 광역연합의회, 집행기관으로 광역연합사무총장과 자체 행정 부서를 각각 운용하고 있음
  - 지역연합의회는 각 선거구에서 주민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80~96명으로 구성되며, 5년 임기의 명예직 지위로서 각 위원회에서 역할을 수행함
  - 의회의장은 의원들의 선거로 선출되는 명예직으로, 임기는 5년이며 의회 소집, 회의안건 상정, 의사진행권한 등 주의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장의 권한에 준하는 권한을 가짐
  - 지역연합사무총장과 2명의 부서책임자는 지역연합의회에서 선출되며, 8년 임기동안 선출직 공무원의 지위로 행정부서를 지휘·감독하고 대외적으로 지역연합의 대표함
  - 지역연합사무총장은 자문기관으로서 의회 회의에 참석이 가능하고, 의회 의결과 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한을 가지며 의회에서 연설 및 발언권을 요구할 수 있음

## □ 소결

-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기관대립형 기관구성을 채택하며, 구성 지방자치단체간 규약사항에 따라 의회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 단체장은 의회에서 선출함
  - 의회의원은 부산·울산·경남 각 지역에 균등할 원칙으로 1인, 인구할 원칙으로 인구 100만 명당 1인을 할당하여 총 12명으로 구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 단체장은 4년 임기의 외부인사 위촉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음
- 일본 간사이광역연합과 독일 슈투트가르트지역연합 모두 구성단체 간 합의에 따른 규약을 바탕으로 기관을 설계함
-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어있으며, 의회의원은 각 구성단체의 의회의원 중 선출하여 구성하고, 광역연합장은 구성단체의 장이 입후보하여 구성단체의 장들의 투표로 선출됨

- 각 구성단체에서 선출되는 인원 수는 균등할 원칙에 따른 인원수와 인원 할 원칙에 따른 인원수를 합한 부현영역정수를 기본으로 하고 지역유형 별로 인원을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함
  - 의회의원의 임기는 구성단체 의회 의원의 직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까지이며, 광역연합장의 임기는 2년임
- 독일 슈투트가르트지역연합은 의결기관인 광역연합의회와 집행기관인 광역연합사무총장 이하 자체 행정부서를 두고 있으며, 지역연합의회 의원은 각 선거구에서 주민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광역연합사무총장은 지역연합의회에서 선출됨
- 의회의원은 5년 임기의 명예직 지위를 가지고 각 위원회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연합사무총장의 임기는 8년임

〈표 4-17〉 국내외 사례 요약

사례	의회의원	단체장
동남권	- 각 지역별 균등할 1인 - 인구 100만명당 1인 할당 - 총 12명 구상	- 4년 임기 - 외부인사 위촉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 각 지역별 균등할 1인 - 인구 250만명 당 1인 할당 단, 인구 250만명 이하 1인 - 총 39명	- 2년 임기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 5년 임기 - 직접선거	- 8년 임기

#### 4. 검토기준

##### □ 주요 검토기준

- 의회 구성 기준은 기관 대표성과 운영 효율성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단체장 선임 기준은 단체장의 리더십과 통솔권한에 대한 사안이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기존 사례 고려

-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례를 고려하였을 때, 의회는 균등할 원칙과 인구할 원칙을 적용하여 대구와 경북 각각의 의원 수를 정할 수 있음
- 단체장은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례와 같이 외부인사 위촉을 검토할 수 있으며, 임기도 4년을 고려할 수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단체장의 권한, 임기, 구성 등에 관해서는 규약을 통해 정할 수 있음

□ 지역 형평성 고려

-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기준으로 균등할 원칙과 인구할 원칙이 국내 및 국외 사례의 의회정수 구성에 적용됨
  -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수는 균등할의 원칙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당 1명, 인원할 원칙에 따라 인구 100만 명당 1명을 할당해 총 12명의 의원으로 의회를 구성함
  - 간사이광역연합의 경우 구성단체별 균등할 원칙에 따른 인원수에 인원할 원칙에 따른 인원수를 더한 부현영역정수를 기본으로 하고 지역별 유형에 따른 조정기준을 추가 적용하여 각 구성단체별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수를 정하고 있음

5. 검토대안 및 소결

□ 검토대안

- 위의 내용을 토대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다음과 같음

- 우선,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원의 임기와 인원 배분과 관련하여 각각 두 가지의 대안을 제시함
- 임기 관련 대안
    - 4년 또는 2년 (2년 단위로 교체)
  - 인원 관련 대안
    - 균등할 1명 + (대구와 경북 총 인구 약 516만명/인구할 100만명) 5명 + 보정인원 1명으로 총 8명
    - 균등할 1명 + (대구와 경북 총 인구 약 516만명/인구할 100만명) 5명으로 총 7명

〈표 4-18〉 검토대안별 판별 결과 - 의회의원

구분	내용
임기	4년
	2년
인원	균등할 1명 + (대구와 경북 총 인구 약 516만명/인구할 100만명) 5명 + 보정인원 1명 총 8명
	균등할 1명 + (대구와 경북 총 인구 약 516만명/인구할 100만명) 5명 총 7명

-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선출방식과 관련하여 각각 두 가지의 대안을 제시함
- 임기 관련 대안
    - 4년 또는 2년 (2년 단위로 교체)
  - 선출방식 관련 대안
    - 구성 자치단체장과 겸직
    - 외부인사 위촉
  - 임기 및 선출방식 결합방식
    - 임기를 2년으로 할 경우 구성 자치단체장과 겸직 방식으로 순환하여 교

체하는 방안 고려 필요

- 임기를 4년으로 할 경우 외부인사 위촉방안 고려 필요

〈표 4-19〉 검토대안별 판별 결과 - 단체장

구분	내용
임기	4년
	2년
선출방식	겸직
	외부인사
결합방식	임기 2년 시 겸직 및 순환
	임기 4년 시 외부인사 위촉

□ 소결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결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이 제시되었으며, 「공직선거법」 등 유관 법률을 고려하며 기관을 구성하여야 함
- 부산-울산-경남 사례는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참고할 수 있는 국내 사례이고, 간사이광역연합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또한 각국의 제도와 연합의 목표에 맞는 기관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임
- 국내사례 및 외국 사례의 기관구성 설계를 참고하되, 주요 검토기준을 고려하여 기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구-경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6절 조직체계 설계

### 1. 법제분석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02조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계는 구성단체의 합의에 따른 규약으로 정함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05조에 따라 의회 및 집행기관의 인력은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함

### 2. 국내 사례 분석

#### □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 기구 구성 측면에서 기능 동질성 원칙을 적용하여 관장사무를 기능 특성별로 분류하였으며, 통솔 적절성 원칙에 따라 국 단위 기준을 통합·분리하여 조정함
  - 기능 특성별 분류: 기획행정, 산업경제, 광역교통, 유통물류, 재난안전, 문화관광, 지역계획, 중기벤처 등
- 인력 구성 측면에서 필수인력규모와 인력 종류별 규모를 설정함
  - 필수인력 규모는 차후 확정되는 사무량 대비 소요인력을 추정할 예정임
  - 인력 종류별로 소속인력은 60%, 파견인력은 40%로 구성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의 사무들 중 각 광역지자체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정수요에 해당하는 사무를 이양받아 수행함
  -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각 기관의 이양사무는 중앙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의 일부, 부산·경남 간 지방자치단체조합 사무의 일부로 구성함

-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3자 합의 이양사무와 3자 개별 이양사무는 세 개 시도의 광역 행정수요에 해당하는 사무를 이양함
-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계는 5개 실국과 18개 과로 편제하고 단체장 포함 222명의 인력 규모로 추산함
  - 기구설치의 경우 관장사무 및 필수인력 규모를 기준으로 1차 추산한 후 기구 당 통솔범위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함
  -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구설치 범위를 정하고, 기구 당 통솔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실국 수와 과 수를 정함
  - 정원의 경우 1개 과 당 적정인력인 12명을 고려함

#### □ 경제자유구역청

-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되는 지역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활동 예외조치가 허용되는 경제특별구역임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함
  - 구역을 담당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개 본부로 운영되며 총 정원 100명, 현원 97명이 재직 중임(2021년 8월 기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은 51.1km<sup>2</sup>이고 1,652개 사업체가 참여하며 총사업비가 17조원에 달함
  - 23개 지역이 속한 5개 지역은 각각 물류·유통, 국제비즈니스·의료, 여가·휴양·첨단산업 등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음
  - 청장 산하 2개 본부(행정개발본부, 투자유치본부)와 읍부즈만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개발본부는 기획행정부와 개발부, 투자유치본부는 투자유치부와 기업지원부로 나뉨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와 경상남도 하

### 동군에 위치함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2개 본부와 1개 사무소로 구성되며, 총 124 명이 재직하고 있음(2020년 9월 기준)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69.55km<sup>2</sup>의 면적에 18개 지구가 있고, 502개 사업체가 참여하는 12조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임
- 청장 산하에 옴부즈만 기관과 투자유치본부, 행정개발본부, 하동사무소가 있으며, 투자유치본부는 투자기획부, 전략산업유치부, 신성장산업유치부로 나뉘고, 행정개발본부는 행정기획부, 개발부로 구분됨

## 3. 해외 사례 분석

### □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 광역사무 및 사업 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하며, 2020년~2022년에는 「제4기 광역계획」이 추진 중임
  - 방재, 관광·문화진흥, 산업진흥 등 11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월드마스터즈게임 2021 간사이」,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 광역연합위원회, 광역연합의장, 광역연합의회,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이 광역협의회 등의 기관으로 구성됨
- 사무국에는 광역협의회 산하 의회사무국, 광역연합위원회 산하 본부사무국 및 분야별 사무국 등이 있음
  - 본부사무국은 총무, 연계추진, 계획, 자격시험 및 면허 등의 사무를 담당함
  - 분야별 사무국은 광역방재국, 광역관광·문화·스포츠진흥국, 광역의료국 등 6개 기관으로 구분되며, 구성 자치단체의 장이 각 영역별 담당위원으로서 집행 책임을 담당함
  - 광역연합위원회 산하 총 인원은 총 797명이며, 전임직원을 포함해 사무국 총인원 561명, 참사 6명, 참여 230명(민간인 1인 포함)임(2020년 12

월 4일 기준; 최환용, 2021:15)

- 본부사무국이 210명으로 가장 인원이 많고, 분야별 사무국 중 100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은 127명이 재직 중인 광역관광·문화·스포츠진흥국(교토부)과 101명이 있는 광역산업진흥국(오사카부)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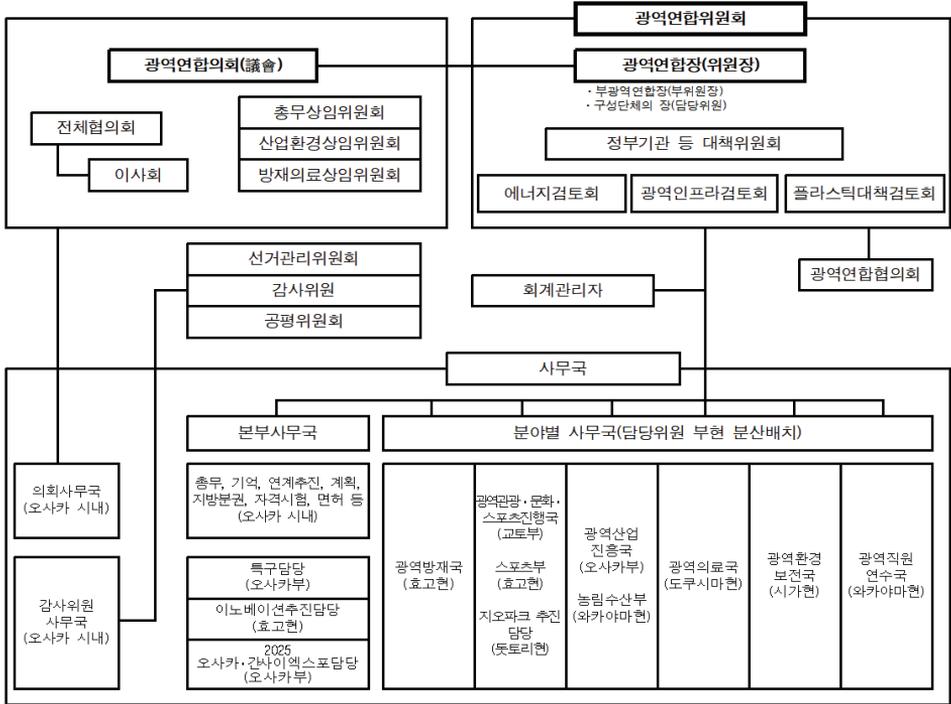
〈표 4-20〉 간사이 광역연합 사무국 구성 현황

구분	담당위원	사무국 (명)		참사 (명)	참여 (명)	합계 (명)
		총원	전임			
본부사무국	-	112	30	-	98	210
광역방재국	효고현	50	-	2	8	60
광역관광·문화·스포츠진흥국	교토부	94	-	2	31	127
광역산업진흥국	오사카부	81	-	2	18	101
광역의료국	도쿠시마현	33	-	-	10	43
광역환경보전국	사가현	24	-	-	9	33
광역직원연수국	와가야마현	8	-	-	9	17
특구담당	오사카부지사	20	-	-	11	31
이노베이션추진담당	효고현지사	16	-	-	13	29
에너지검토회	사가현지사, 오사카부지사	28	-	-	-	28
광역인프라검토회	연합장, 와가야마현지사	34	-	-	19	53
2025년 오사카만국박람회담당	오사카부지사	22	-	-	4	26
플라스틱대책검토회	사가현지사, 오사카부지사	39	-	-	-	39

자료: <https://www.kouiki-kansai.jp/>; 2020년 12월 말 기준

- 광역계획, 예산 및 결산 등 광역연합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구성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광역연합장이 결정하며, 각 분야 사무는 구성단체의 장이 담당위원으로서 집행을 담당함
- 각 사무국은 오사카시, 효고현 등 각 담당위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분산 배치하며, 부현 및 시 직원이 광역연합직원을 겸임함
- 정부기관 등 대책위원회는 광역사무 실시를 위한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위원회로, 구성단체의 장들이 위원으로 있으며 국가에 중점적으로 이양을 요구하는 광역사무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무처리 체계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국가 파견기관 인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감사위원은 광역연합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며, 재무·사업 경영·행정운영 전문가 1인과 광역연합회의의원 1인으로 구성됨
- 공평위원회는 광역연합 직원의 권리·이익 보호와 신분보장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 직원의 직무에 관한 조치요구와 불이익처분 등의 심사를 하며, 구성단체의 인사위원회에 사무를 위탁하고 있음
- 광역연합 규약에 따라 광역연합장은 광역연합과 밀접한 협력관계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를 연계단체로 지정할 수 있음
  - 2011년 후쿠이현, 미에현, 나라현, 교토시, 오사카시, 사카이시, 고베시를 연계단체로 지정한 바 있으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연합 구성단체가 되면서 2015년 기준으로 후쿠이현, 미에현만 연계단체로 남아있음

〈그림 4-1〉 간사이광역연합 조직도



자료: 경남연구원·부산연구원·울산연구원(2021:20)에서 재인용

□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 광역연합의 핵심 기능은 지역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임
- 행정부서의 사무는 의무사무와 임의사무로 구분되며, 이를 통해 지자체 간 협력사무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음
- 의무사무는 주정부 위임사무 또는 주정부계획 범위 내에서 광역연합이 스스로 수립한 계획에 따른 사무이며, 그 예로 지역기본계획 수립, 폐기물처리(일부), 광역교통 운영 및 관리, 경제육성, 관광마케팅 등이 있음
  - 초광역기본계획(Regionalplanung)은 공간이용계획으로, 광역연합이

- 계획을 수립하기보다 계획수립에 참여할 기업인, 시민단체 등을 선정·조직하고, 기본방향을 설정하며 최종 계획내용을 결정함
- 초광역교통(Regionalverkehr)은 교통계획수립과 공공교통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임
  - 경제육성 및 관광마케팅 사무를 위해 광역연합은 잠재자원 개발 및 외부 자원 유치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유한회사 (유)슈투트가르트경제육성(Wirtschaftsforderung Region Stuttgart GmbH)과 함께 업무를 추진함
  - 경제육성정책은 산업클러스터 지원육성에 중점을 두며, 중심 산업클러스터는 자동차산업, 선박산업, 기계공작산업, 에너지 및 환경기술산업, 정보기술산업, 항공우주산업의 총 6개 분야로 구성됨
- 임의사무는 광역연합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정되는 사무이며, 그 예로 폐기물처리(일부), 국제박람회 등 행사유치, 기타 광역사무 등이 있음
- 자치단체 간 원활한 갈등 조정 및 강한 집행력의 확보를 위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독립적으로 설치·운영함
- 광역연합의 사무 및 기능수행은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거버넌스 체계를 기반으로 함
- 주요 협력 주체들은 제도적·재정적 협력관계인 연방정부 및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단체 등을 포함함
  - 제도화되어 장기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협력체제에 속한 주체들 간 네트워크는 광역연합의 의사결정에 관한 심의·자문기능과 집행 상 상시 파트너기능을 수행하며, 여기에는 슈투트가르트 지역포럼, (유)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육성, (유)지역마케팅, 주정부 은행, 상공회의소, 수공업회의소, 경제합리화 감사국, 농경제포럼,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포함됨

- 단기적이고 임시로 운영되는 네트워크체제에는 특정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속해있으며, 바이오산업육성 프로젝트, 대중교통요금체계수립 프로젝트, 신교통수단개발 프로젝트 등이 수행되었음
- 지역연합의회는 기획위원회, 교통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와 교통재정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의 특별위원회로 나누어짐
- 지역연합사무총장 산하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독립된 행정부서들이 있으며, 해당 부서들은 광역기본계획, 광역교통, 광역경제육성 등의 광역 사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실·국으로 구성됨
- 각 행정 부서는 지역연합의 자체 직원으로 운영되며, 75명이 재직 중임 (2021년 4월 기준)

〈그림 4-2〉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조직도



자료: 경남연구원·부산연구원·울산연구원(2021:16)

#### 4. 중앙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을 통한 기구·인력 지원

##### □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

-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가칭)’ 신설
  - 범부처 이행과제 점검 및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기능 강화 및 초광역협력 전담조직 보강
    - 기존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확대 개편
-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8일 경상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설명하며, 여타의 지방자치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인사, 회계, 감사, 기획 등 일반행정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따라서 추후 행정안전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매뉴얼’이 작성되면, 이에 따라 조직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을 통한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

- 지역 자율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경우 견고한 협력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 적극 지원

#### 5. 기구 및 인력구성

##### □ 검토기준

- 기구 설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장업무 및 인력을 고려해야 하며, 단계별로 기능분화, 통솔범위, 설치범위를 적용하여 질적인 측면에서 기구분화를 검토하여야 함
- 기구 구성 시 규모의 적합성과 기능의 부합성을 고려하여 조직 규모 및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인력 구성 시 규모의 적합성뿐만 아니라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 규모와 개별 업무를 설정하여야 함

□ 구성원칙

- 조직체계 설계 시 기구 구성 측면에서는 기능 동질성과 통솔 적정성을 원칙으로 고려하여야 함
- 인력 구성 측면에서는 기구 및 정원 규정의 국 단위(4개 과) 및 과 단위(18명) 설치기준을 적용함

□ 기준인건비제 검토

- 기준인건비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근거해 작성하는 기준인건비 산정 기준을 적용함  
 - '19년 기준인력 = '18년 기준인력 + 10개 행정수요지표 + 국가정책수요 + 지역현안수요 + 소방·복지 현장인력 + 정원조정

〈표 4-21〉 기준인건비제 산정방식

구분	내용
행정수요 지표 반영	- 행정수요 유발 10개 지표를 변수로 하는 정원 수요함수(회귀분석)로 적정인력 산출 후 편차의 일부(10%) 반영 ①인구, ②면적, ③주간인구, ④65세이상인구, ⑤사업체수, ⑥자동차수, ⑦장애인수, ⑧법정민원수, ⑨외국인 인구, ⑩농경지면적
소방인력	- (현장인력) 구조대·구급대중심으로 소방력기준을 고려하여 증원 * 기준인력 대비 未증원 지자체 증원수요 배제, 他 지자체 증원수요로 추가 보강 - '17년 개청예정인 관서에 한하여 증원, 기존 관서에서의 이체 및 현장인력 증원 규모를 감안하여 조정 반영
복지인력	- 복지공무원 1인당 수급자수를 고려하여 현장인력* 배분 및 '16년 신설된 고용·복지+센터에 복지상담 인력 추가 배정 * 읍면동복지허브화추진을 위한 '맞춤형복지팀'에배치 ※ 인력구조개선분(재배치+자연결원대체) 인센티브·페널티, 순증 未확충분 인건비 회수(누적)

구분	내용
국가정책수요	- 지진대응 인력 보강, 지역공동체 전담인력, 저출산관련대응체계, 자치법규역량 강화 및 소나무 재선충병방제인력 등
지역현안수요	- 지역특성 및 특수 보정지표를 감안하여 필요인력 일부반영 (기타) 지역특수성 등을 감안한 지역특화사업반영
별도정원	- 국제행사 개최, 국가기관에서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한 파견에 따른 결원보충 인력의 일부 반영 ※ 지자체 본연의 상시적 업무 추진을 위한 파견은 원칙적 불인정
기 타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인건비 추가 부담분 반영 - 2019년 정원관리 실태 감사결과 반영 - 기능인력 재배치 목표대비 달성 결과 반영 - 국가정책 수요 未증원 인력 감축* 및 기능이관 등에 따른 정원 조정

## □ 업무량 검토

○ 업무량 기준 인력추정 산식은 아래와 같음

$$- T_1 = M_i \times S_i$$

$$- T_2 = T_1 / LD$$

$$- T_3 = T_2 / A$$

\*  $T_1$  : 특정부서에서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총소요시간

\*  $T_2$  : 특정부서의 1일 평균 업무처리소요시간

\*  $T_3$  : 특정부서의 적정인력

\*  $M_i$  : i라는 단위사무의 연간처리건수(회수)

\*  $S_i$  : i라는 단위사무의 연간 1건당 평균처리시간

\*  $LD$  : 법정근무일수 (300일, 250일)

\*  $A$  : 1일 평균근무시간 (8시간, 9시간)

\* 단위사무 : 특정부서에서 수행하는 각각의 하위단위 업무

## □ 관장사무 담당 조직체계 검토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는 크게 통합신공항, 광역교통, 광역

관광, 광역문화의 4개 분야이며, 중장기적으로 행정통합을 준비해야 함

- 앞서 살펴본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과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조직체계를 검토하여 조직체계를 구상하되, 관광과 문화는 기능적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의 조직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며, 광역교통의 경우 광역철도와 광역도로 분야 간 기능의 이질성이 높아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 단체장 및 사무국(기능별 과 배치)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국: 총무과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국: 통합신공항과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국: 광역교통과 (또는 광역철도과, 광역도로과)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국: 광역문화관광과 (또는 광역문화과, 광역관광과)

## 6. 검토대안 및 소결

### □ 검토대안

- 관장사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 설계하며, 기관 설치 목적과 메가시티 기본구상, 그리고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는 것이 필요함
- 조직체계 구성 시 기능 동질성과 통솔 적정성을 고려해야 하며, 인력 구성 시에는 기구 및 정원규정의 국·과 설치기준, 기준인건비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야 함
- 부산-울산-경남 광역연합은 3개 시·도의 사무 중 광역지자체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정수요에 대한 사무를 이양받아 수행하며, 관장사무를 기능특성별로 분류하고, 인력은 필수인력 및 인력의 유형(종류)별 규모를 고려하여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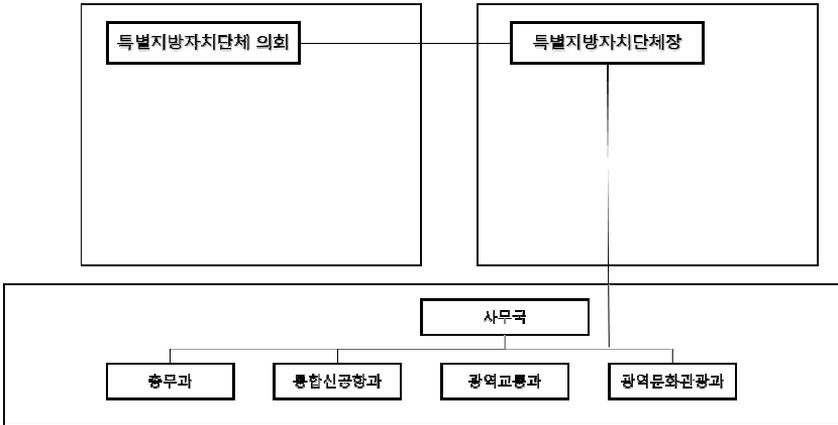
-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은 광역협의회 산하 의회사무국, 광역연합위원회 산하 본부사무국 및 6개 분야별 사무국이 있으며, 광역연합 운영 주요사항은 광역연합장이 결정하고, 각 분야 사무는 구성단체의 장이 담당위원으로서 집행을 담당함
- 독일 슈투트가르트지역연합은 지역연합의회 산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으며, 지역연합사무총장 산하에는 독립된 자체 행정부서가 의무사무 및 임의사무를 수행함
- 본 연구에서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계를 다음과 같이 4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검토함
  - 1국 4개 과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국: 총무과, 통합신공항과, **광역교통과, 광역문화관광과**
  - 1국 6개 과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국: 총무과, 통합신공항과, **광역철도과, 광역도로과, 광역문화과, 광역관광과**
  - 1국 5개 과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국: 총무과, 통합신공항과, **광역철도과, 광역도로과, 광역문화관광과**
  - 1실 2국 12개 과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1) 기획실: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통합신공항정책과, 2) 교통국: 교통정책과, 버스운영과, 도로과, 철도과, 3) 문화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유산과,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과, 동해안정책과

〈표 4-22〉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국 구성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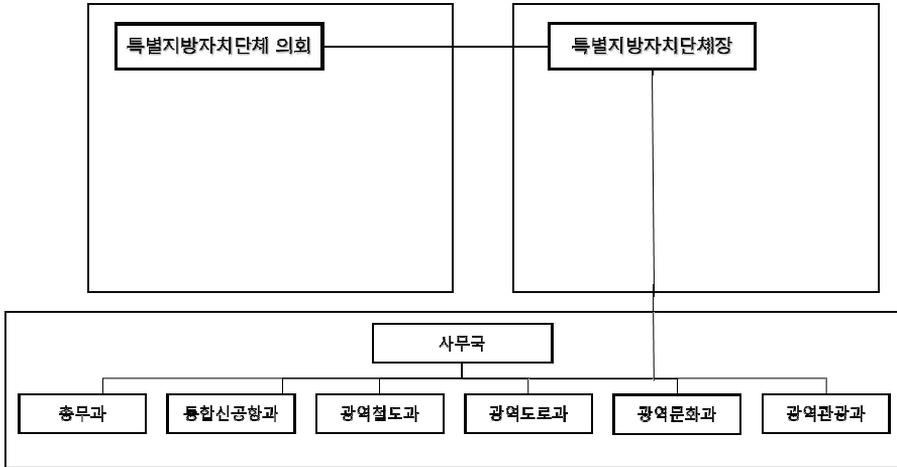
구분	사무국
1국 4개 과	총무과, 통합신공항과, 광역교통과, 광역문화관광과
1국 6개 과	총무과, 통합신공항과, 광역철도과, 광역도로과, 광역문화과, 광역관광과
1국 5개 과	총무과, 통합신공항과, 광역철도과, 광역도로과, 광역문화관광과
1실 2국 12개 과	1) 기획실: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통합신공항정책과, 2) 교통국: 교통정책과, 버스운영과, 도로과, 철도과, 3) 문화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유산과,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과, 동해안정책과

○ 위의 대안별로 조직체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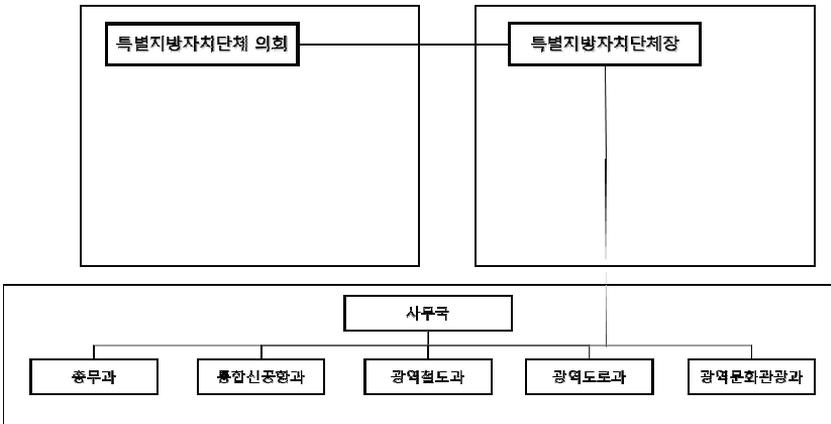
〈그림 4-3〉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직체계-1국 4개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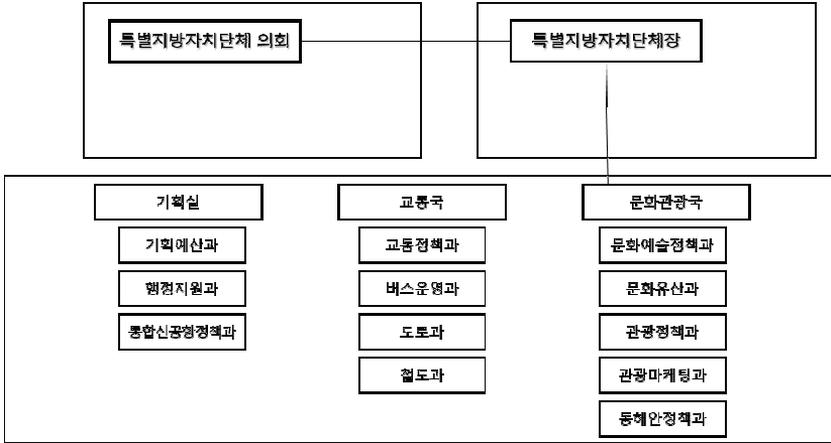
〈그림 4-4〉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직체계-1국 6개 과



〈그림 4-5〉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직체계-1국 5개 과



〈그림 4-6〉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직체계-1실 2국 12개 과



□ 소결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로 규약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계를 정함
- 추후 기구 및 인력 구성 시, 검토기준과 구성원칙, 그리고 기존에 활용되었던 기준인건비제와 업무량 검토를 통해 적절한 규모와 구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비롯해 간사이광역연합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의 사례를 비교하면 모두 동일하게 기존의 각 지방자치단체 범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광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효과적인 조직체계를 구성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 따라서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사무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환경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7절 재원조달 설계

### 1. 법제분석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02조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에 필요한 경비 부담과 지출 방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 따름
- 기본재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06조에 의해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근거해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며, 각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이 경비에 대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함
- 국가 또는 시·도에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기관(국가, 시, 도)으로부터 사무처리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06조 제2항)

#### □ 「지방교부세법」

- 기존에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지방행정 재정을 조정하며 지원함 (「지방교부세법」 제1조)
- 「지방교부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지방자치단체조합임
- 「지방교부세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됨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에 따르면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 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협약은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예산 편성 등 협약 이행 조치를 취해야 함

## 2. 국내 사례 분석

### □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례

-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현행 제도 내에서 지방교부세와 지역발전투자협약기금을 혼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또한 신규 제도 도입을 고려할 경우 균특회계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계정설치 및 과세권 및 보조금 등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4일에 관계부처 합동 발표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표 4-23〉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원확보 방안

구분	제도
현행 제도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
	지역발전투자협약기금
신규 제도	균특회계 계정설치
	과세권 부여
	국고보조금 지원

자료: 금창호 외., 2021: 225; 연구자 재구성

## 3. 해외 사례 분석

### □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 광역연합의 재정에 관한 사항은 광역연합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세수

- 입 없이 원칙적으로 부·현 구성단체들의 분담금과 사업수입 등에 의존하고 있음
- 분담금이 전체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반에는 광역연합의 사업수입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음
- 2019년 기준 간사이광역연합의 세입재원은 분담금 및 부담금, 사용료 및 수수료, 국고지출금, 재산수입, 기부금, 이월입금 및 이월금, 예금이자, 잡수입으로 구성됨
- 세입은 총 2,465,796천 엔이었으며, 분담금 및 부담금 1,312,662천 엔(약 53.23%), 국고지출금 758,555천 엔(약 30.76%), 사용료 및 수수료 246,513천 엔(약 10.00%)으로 나타남(2019년 기준; 경남연구원·부산연구원·울산연구원, 2021:21)
- 2019년 간사이광역연합 세출내역은 의회비, 총무비, 광역방재비, 광역관광·문화·스포츠 진흥비, 광역산업진흥비, 광역의료비, 광역환경보전비, 자격시험·면허비, 광역직원연수비, 공채비, 예비비로 이루어짐
- 세출예산액은 총 2,465,796천 엔이었으며, 광역의료비 1,581,724천 엔(약 64.15%), 총무비 396,645천 엔(약 16.06%), 자격시험·면허비 253,699천 엔(약 10.29%)으로 나타남(2019년 기준; 경남연구원·부산연구원·울산연구원, 2021:21)
- 분담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구성단체에게 동일한 금액을 배분하되 각 구성단체의 수익에 따라 인구수 등 객관지표에 준해 비례적으로 분담금을 부담하게 함
- 분담예산은 크게 총무비와 사업비로 나뉘며, 총무비예산에는 총무·기획부분예산과 자격시험·면허 등의 인건비 예산 등이 있음
- 총무·기획부분예산은 균등할 원칙에 따라 구성단체가 동등한 금액으로 부담함
  - 자격시험·면허 등의 인건비예산은 지난 3년간의 수험자 수를 기준으로 평균할 원칙에 따라 구성단체에 차등적으로 분담됨

- 사업비 예산에는 항목별로 구성단체별 부담액에 차이를 두는 인구할 원칙 또는 사업 비중 등의 고려사항이 적용되어 차등적 예산분담이 이루어짐
  - 광역방재, 광역의료(특정사업비 제외), 광역환경보전 항목은 인구할 원칙에 따라 구성단체별 부담금액이 다름
  - 광역관광·문화진흥, 광역산업진흥 항목의 예산 부담액은 인구할 원칙과 사업 관련 비중 등에 따른 차등 원칙을 혼합하여 적용함
  - 자격시험·면허 등의 예산은 수험자수의 평균할에 따르며, 광역직원연수 예산 또한 수강자수의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예산을 분담함
- 특정사업비(닥터헬기 운항)는 인구할과 이용실적할을 기준으로 예산이 구성단체별로 차등 분담됨

〈표 4-24〉 간사이광역연합의 예산분담금액 산정 기준

항목		분담금 산정기준
총무비	총무·기획부분	균등할의 원칙에 따른 동등한 예산분담
	자격시험·면허 등의 인건비	수험자수의 평균할에 따른 차등적 예산분담
사업비	광역방재	인구할에 따른 차등적 예산분담
	광역관광·문화진흥	인구할(50%), 숙박시설수(50%)에 따른 차등적 예산분담
	광역산업진흥	인구할(50%), 사업소수(50%)에 따른 차등적 예산분담
	광역의료 (특정사업비 제외)	인구할에 따른 차등적 예산분담
	광역환경보전	인구할에 따른 차등적 예산분담
	자격시험·면허 등	수험자수의 평균할에 따른 차등적 예산분담
	광역직원연수	수강자수의 할에 따른 차등적 예산분담
특정사업비	닥터헬기 운항	인구수할(50%), 이용실적할(50%)에 따른 차등적 예산분담

자료: 안권욱 (2015:33)

### □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 지방세 부과 및 징수의 권한이 없이 「슈투트가르트지역연합 설치에 관한 법률(GVRS)」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 의거해 수수료와 보조금, 각 자치단체의 분담금으로 재정을 충당하며, 기타 기부금 등의 수입이 있음
  - 수수료는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보조금은 주정부 교부금이 주된 재원임
  - 구성 자치단체 분담금은 교통세, 오물세, 재산세 중 일부 등을 포함함
  - 기타 재정 수입원은 프로젝트 기부금 등이 있음
- 2021년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세입재원은 자체수입(교통부과금, 세외수입, 잉여금, 차입금), 교부금(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분담금으로 구성됨(Verband Region Stuttgart, 2021; 금창호 외., 2021: 107 재인용)
  - 2021년 기준으로 세입은 총 4억 4,240만 유로이며, 자체수입 47.69%, 교부금 46.92%, 분담금 5.40%를 차지함(Verband Region Stuttgart, 2021; 금창호 외., 2021: 107 재인용)
  - 세출 중 주요한 항목은 교통분야로 전체 세입 중 90.99%를 차지함
  - 교부금 중 주정부 교부금은 「슈투트가르트지역연합 설치에 관한 법률(GVRS)」 제21조와 「주계획법(Landesplanungsgesetz, LplG)」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정부에서 교부하는 재원이며, 연방정부 교부금은 독일 헌법인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제106a조와 「지역화법(Gesetz zur Regionalisierung des öffentlichen Personennahverkehrs, RegG)」에 의해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지역화 재원을 분배받은 항목임

## 4. 중앙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을 통한 재정지원

### □ 재정적 지원체계 구축

- 예산 전 주기를 통해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함

-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 조정
  - (현행) 총사업비 500억, 국비 300억 → (검토) 총사업비 1,000억, 국비 500억
  - 500억 미만 사업 대상 투자심사 면제 검토 및 수시심사 적극 활용
-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 선정·관리 및 국고보조율 상향(50% → 60%)
- 초광역사업 평가체계 및 결과-예산 연계

□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을 통한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

- 지역 자율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경우 견고한 협력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설치·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준비 관련 소요재원 및 시범사업 특별교부세 지원
  -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통합지방자치단체 대상 ‘초광역특별협약’ 도입: 재정·사업·규제·세제 등 지원 특례 맞춤형 설계
  - 이외에도 지방교부금 내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5. 검토기준

□ 조달 현실성

- 위의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되, 첫 번째 검토기준인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이 현실적인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조달 현실성: 재원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관련 법제의 개정이 별도로 필요한가?
  - 만약 재원확보를 위해 관련 법제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실현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성이 현저히 낮아짐

- 따라서 조달 현실성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의 지원 전략을 따를 필요가 있음
  - 대표적으로 특별교부세, 지역발전 투자협약기금, 균특회계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 설치·지원, 분담금, 보조금, 사업수입 등을 들 수 있음

#### □ 재원 충분성

- 두 번째 검토기준은 재원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는가임
  - 재원 충분성: 확보될 재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를 수행하고 운영하는데 충분한 규모인가?
  - 만약 재원을 확보하였지만, 해당 규모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규모에 비해 낮을 경우 충분성이 현저히 낮아짐
- 따라서 재원 충분성을 고려할 때 재원 규모가 적절한 방안으로 균특회계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 설치·지원, 분담금, 보조금을 들 수 있음

## 6. 검토대안 및 소결

#### □ 검토대안

- 위의 검토기준에 따라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지역발전 투자협약기금, 균특회계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 지원, 분담금, 국고보조금 상향 지원, 사업수입임
  - 이 중 지역발전 투자협약기금은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재원의 성격이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안정성이 낮음
  -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방안은 현재 제도 내에서 가능한 대안이나, 현실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서 한계를 지님. 즉,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산정제도 자체를 전면 개정하거나, 주요 자체노력 항목 중 ‘자치단체 간 협력’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규모가 미미한 수준일 것임

- 따라서 결과적으로 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원확보 방안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 지원, 분담금, 국고보조금 상향 지원, 사업수입임
  - 이외에도 국가에 위임사무를 요청할 때 이에 해당하는 재원도 함께 확보함

〈표 4-25〉 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원확보 방안

구분	제도	내용	관련 법률	법 규정
	일반교부세	현재 교부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추가 검토 But 「지방교부세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거나 수요 자 체노력 항목 활용 시 재정 규모 미미	지방교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1항 제2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와 같은 법 제15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현행 제도	특별교부세	설립 소요재원 및 시범사업 지원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2(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등으로 인하여 드는 지방비 부담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안정, 지방행정기능 강화, 국가직 행사 관련 시책,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또는 그 밖의 주요 시책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지역발전 투자합의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 가능하나, 일시적 재원으로 안정성 미흡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부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구분	제도	내용	관련 법률	법 규정																
				<p>한다.</p> <p>③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사업범위 및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균특회계 계정설치</p>	<p>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조광역합력 사업군' 관리</p>	<p>「국가균형발 전특별법」</p>	<p>제32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지출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p> <p>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제와 광역시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50 899 443 970">1. 보통세</th> <th data-bbox="350 970 443 1555">2. 목적세</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43 899 536 970">가. 취득세</td> <td data-bbox="443 899 536 1555"></td> </tr> <tr> <td data-bbox="536 899 572 970">나. 레저세</td> <td data-bbox="536 899 572 1555"></td> </tr> <tr> <td data-bbox="572 899 607 970">다. 담배소비세</td> <td data-bbox="572 899 607 1555">가. 지역자원시설세</td> </tr> <tr> <td data-bbox="607 899 642 970">라. 지방소비세</td> <td data-bbox="607 899 642 1555">나. 지방교육세</td> </tr> <tr> <td data-bbox="642 899 677 970">마. 주민세</td> <td data-bbox="642 899 677 1555"></td> </tr> <tr> <td data-bbox="677 899 713 970">바. 지방소득세</td> <td data-bbox="677 899 713 1555"></td> </tr> <tr> <td data-bbox="713 899 748 970">사. 자동차세</td> <td data-bbox="713 899 748 1555"></td> </tr> </tbody> </table>	1. 보통세	2. 목적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라. 지방소비세	나. 지방교육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1. 보통세	2. 목적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라. 지방소비세	나. 지방교육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p>신규 제도</p>	<p>과세권 부여</p>	<p>해외 사례의 경우 특수 목적세로 신설</p>	<p>「지방세기 본법」</p>	<p>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748 899 811 970">1. 보통세</th> <th data-bbox="748 970 811 1555">2. 목적세</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811 899 846 970">가. 취득세</td> <td data-bbox="811 899 846 1555"></td> </tr> <tr> <td data-bbox="846 899 882 970">나. 등록면허세</td> <td data-bbox="846 899 882 1555">가. 지역자원시설세</td> </tr> <tr> <td data-bbox="882 899 917 970">다. 레저세</td> <td data-bbox="882 899 917 1555">나. 지방교육세</td> </tr> <tr> <td data-bbox="917 899 952 970">라. 지방소비세</td> <td data-bbox="917 899 952 1555"></td> </tr> </tbody> </table>	1. 보통세	2. 목적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다. 레저세	나. 지방교육세	라. 지방소비세							
1. 보통세	2. 목적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다. 레저세	나. 지방교육세																			
라. 지방소비세																				
				<p>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등록면허세 2. 재산세</p> <p>④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구분	제도	내용	관련 법률	법 규정
	<p>국고보조금 지원</p>	<p>국고보조율 상향 (50% → 60%)                      사업별 국고보조금 우선 지원 특례 부여</p>	<p>「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p>	<p>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⑤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10. 지역자원시설세 11. 지방교육세</p> <p>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소요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더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서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빼고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과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p>

- 분담금의 경우 대구와 경북 두 지역이 어떤 방식으로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자체수입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은 분담금이며, 전체 수입 중 50% 이상을 차지함
  -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의 경우 총무비를 균등할의 원칙으로 하되, 나머지 사업 분야의 경우 대부분 인구할과 현재 지방비 분담을 각각 50%씩 분배하여 재원을 마련함
  - 따라서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분담금 배분 역시 총무비를 균등할의 원칙으로 하되, 나머지 사업 분야는 인구할과 지방비 분담을 각각 50%씩으로 분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표 4-26〉 대구 경북 분담금 구조

항목		분담금 산정기준
총무비	총무	균등할의 원칙에 따른 동등한 예산분담
사업비	통합신공항	인구할(50%), 현재 지방비 분담(50%)
	광역교통	인구할(50%), 현재 지방비 분담(50%)
	광역관광·문화진흥	인구할(50%), 현재 지방비 분담(50%)

□ **소결**

-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대구 경북 두 지역이 부담하는 분담금, 관장사무 관련 사업예산, 국가 위임사무 요청 시 해당 재원임

## 제8절 설계방안 소결

### 1. 기관구성 방안 요약

#### □ 명칭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명칭으로 도출될 수 있는 대안은 크게 4가지임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 대구경북 광역연합
  - 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 대경 광역연합
- 각 대안별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 장점: 지자체가 관할하는 구역이 대구와 경북이라는 점을 명확히 명시함.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 명칭을 통해 지자체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
    - 단점: 4개의 대안 중 가장 명칭이 길어 활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추후 약식 명칭을 필요로 함
  - 대구경북 광역연합
    - 장점: 지자체가 관할하는 구역이 대구와 경북이라는 점을 명확히 명시함. 또한 대구와 경북이라는 두 광역자치단체가 연합한 지자체라는 의미를 표현함
    - 단점: 지자체의 법적 지위가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아, 명칭을 활용할 때 모호하고 혼란스러움. 또한 ‘광역연합’이라는 명칭이 생소해 주민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낮음
  - 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 장점: 지자체가 관할하는 구역이 대구와 경북이라는 점을 명확히 명시함.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 명칭을 통해 지자체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 ‘대경’이라는 명칭이 주민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음

- 단점: 1안에 비해 명칭이 짧긴 하나, 여전히 명칭이 길어 활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추후 약식 명칭을 필요로 함
- 대경 광역연합
  - 장점: 지자체가 관할하는 구역이 대구와 경북이라는 점을 명확히 명시함. 또한 대구와 경북이라는 두 광역자치단체가 연합한 지자체라는 의미를 표현함
  - 단점: 지자체의 법적 지위가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아, 명칭을 활용할 때 모호하고 혼란스러움. 또한 ‘광역연합’이라는 명칭이 생소해 주민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낮음

〈표 4-27〉 명칭 대안별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구역 명확</li> <li>• 법적 지위 명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칭이 길어 추후 약식 명칭 필요</li> </ul>
대구경북 광역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구역 명확</li> <li>• 광역자치단체 간 연합 의미 담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법적 지위 불명확</li> <li>• 광역연합 명칭 인지도 낮음</li> </ul>
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구역 명확</li> <li>• 법적 지위 명확</li> <li>• ‘대경’ 명칭 인지도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칭이 길어 추후 약식 명칭 필요</li> </ul>
대경 광역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구역 명확</li> <li>• 광역자치단체 간 연합 의미 담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법적 지위 불명확</li> <li>• 광역연합 명칭 인지도 낮음</li> </ul>

□ 사무소 위치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위치로 4가지 대안을 제시함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안동시)
  - 분리안(대구광역시 광역교통, 경상북도 광역관광)
  - 통합신공항 부지(군위군)

## ○ 각 대안별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대구광역시
  - 장점: 대구광역시에 소재할 경우 주민들이 위치를 잘 알아 편의성이 높아짐
  - 단점: 경상북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커짐
- 경상북도(안동시)
  - 장점: 경상북도(안동시)에 소재할 경우 주민들이 위치를 잘 알아 편의성이 높아짐
  - 단점: 대구광역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커짐
- 분리안(대구광역시 광역교통, 경상북도 광역관광)
  - 장점: 각 구성자치단체별로 중점사업을 두고, 이를 중심으로 사무소 위치를 분리할 경우 사업 추진력이 강해짐
  - 단점: 희소한 사례일 수는 있으나, 경북 주민 중에 광역교통 관련 민원을 처리하거나, 대구 주민 중 광역관광 관련 민원을 처리할 경우 불편을 겪을 수 있음. 또한 통합신공항 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소 위치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날 수 있음
- 통합신공항 부지(군위군)
  - 장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 관련 상징성을 지니며, 주변 교통망이 마련되어 접근성이 좋음
  - 단점: 경상북도 지역 내에서 남쪽에 위치하여 경상북도 내 일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클 수 있음. 또한 아직 통합신공항 사업이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본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아 단기간 내 사무소 설치가 어려움

〈표 4-28〉 사무소 위치 대안별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대구광역시	• 위치 인지도가 높아 주민 편의 높음	• 경북 지역 주민들 불편
경상북도(안동시)	• 위치 인지도가 높아 주민 편의 높음	• 대구 지역 주민들 불편
분리안	• 사업 추진력 강함	• 희소하나, 각 지역 주민들의 불편 발생 가능
통합신공항 부지(군위군)	• 특별지자체 주요 사업의 상징성 확보 • 접근성 좋음	• 경상북도 내 일부 지역 주민들 불편 • 단기간 내 사무소 설치 어려움

□ 관장사무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장사무로 4가지 대안을 제시함
  - 협력사무 중심 관장사무 정리
  - 전문연구진이 검토한 협력사무 + 연관사무 중심 관장사무 정리
  - 해당 부서장이 검토한 협력사무 + 연관사무 중심 관장사무 정리
  - 4개 기능(통합신공항, 광역교통, 광역관광, 광역문화) 부서 이동
- 각 대안별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협력사무 중심 관장사무 정리
    - 장점: 협력사무가 명확하여 분리·이관이 용이함. 또한 연관된 조직·인력·재정 분리의 편의성이 높음
    - 단점: 협력사무 수가 많지 않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운영의 의의가 낮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협력사무 + 연관사무 중심 관장사무 정리
    - 장점: 협력사무와 연관된 사무를 함께 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기능을 포괄하여 수행하는 범위의 경계가 실현될 수 있음. 또한 사무와 연관된 조직·인력·재정의 효율성이 높아짐
    - 단점: 연관사무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관사무 분리 후 시행착오 가능성이 높음. 또한 주민들의 민원처리 시 불편이 큼(민원 사무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인지, 구성자치단체 사무인지 파악 불가)

- 4개 기능(통합신공항, 광역교통, 광역관광, 광역문화) 부서 이동
  - **대구 해당 부서:** 공항정책과, 버스운영과, 철도시설과, 도로과, 관광과, 문화예술정책과 (6개 과)
  - **경북 해당 부서:** 통합신공항추진단, 도로철도과, 교통정책과, 도시재생과, 문화예술과, 관광마케팅과, 관광정책과, 문화유산과, 동해안정책과 (9개 과)
  - **장점:** 주민들의 민원처리 시 불편이 최소화됨. 또한 동일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범위의 경계가 실현되며 사무와 연관된 조직·인력·재정의 효율성이 높아짐
  - **단점:**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없는 사무를 다수 처리해야 함. 이로 인해 의회에서 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결사안인지, 구성자치단체의 의결사안인지 혼란을 겪을 수 있음

〈표 4-29〉 관장사무 설계 대안별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협력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 및 조직·인력·재정 사항 분리 용이</li> <li>• 현재 추진하던 협력과제 중심 기관으로 변화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몇 안되는 기능으로 특별지자체 설치·운영의 비판</li> <li>• 한부리 상생위원회 간 차별성 적음</li> </ul>
협력사무 + 연관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슷한 기능을 포괄하여 범위의 경계 실현</li> <li>• 조직·인력·재정 효율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확치않은 사무로 인한 시행착오 가능성</li> <li>• 민원인 불편 심화</li> </ul>
4대 기능 부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인 불편 최소화</li> <li>• 범위의 경계 실현 가능</li> <li>• 조직·인력·재정 효율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의 의사결정 범위 혼란: 구성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분리</li> <li>•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없는 사무 다수</li> </ul>

## □ 기관구성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의회와 단체장의 내용을 구분하고 임기, 인원, 선출방식 관련 내용으로 나누어 각각 2가지의 대안을 제시함

○ 의회 관련 대안은 다음과 같음

- 선출방식
  - 구성자치단체와 겸직
- 임기 관련 대안
  - 4년 또는 2년 (2년 단위로 교체)
- 인원 관련 대안
  - 균등할 1명 + (대구와 경북 총 인구 약 516만명/인구할 100만명) 5명 + 보정인원 1명으로 총 8명
  - 균등할 1명 + (대구와 경북 총 인구 약 516만명/인구할 100만명) 5명으로 총 7명

○ 단체장 관련 대안은 다음과 같음

- 임기 관련 대안
  - 4년 또는 2년 (2년 단위로 교체)
- 선출방식 관련 대안
  - 구성 자치단체장과 겸직
  - 외부인사 위촉
- 임기 및 선출방식 결합방식
  - 임기를 2년으로 할 경우 구성 자치단체장과 겸직 방식으로 순환하여 교체하는 방안 고려 필요
  - 임기를 4년으로 할 경우 외부인사 위촉방안 고려 필요

○ 의회 관련 대안별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임기 관련 대안
  - 4년
    - ※ 장점: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구성자치단체 선거 시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의회를 구성하는 소요되는 비용이 낮음. 또한 임기가 4년 간 지속

되기 때문에 의원들의 이해도가 높고 지속성이 높음

※ 단점: 구성자치단체와 겸직하는 의원들의 부담이 높음

• 2년 (2년 단위로 교체)

※ 장점: 구성자치단체와 겸직하는 의원들의 부담이 낮음. 또한 전반기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고 교체되기 때문에 더 많은 구성자치단체 의원에게 겸직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단점: 2년에 한번씩 의회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구성비용이 증가함. 또한 임기가 끝나고 의원들이 교체되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지속성이 낮음

- 인원 관련 대안

• 균등할 1명 + (대구와 경북 총 인구 약 516만명/인구할 100만명) 5명 + 보정인원 1명으로 총 8명

※ 장점: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동일한 의원 수를 갖기 때문에 형평성이 보장됨

※ 단점: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의사결정 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쉽게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균등할 1명 + (대구와 경북 총 인구 약 516만명/인구할 100만명) 5명으로 총 7명

※ 장점: 의사결정 시 효율성이 높음

※ 단점: 한 지역이 1명 더 많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음

○ 단체장 관련 대안별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임기 관련 대안

• 4년

※ 장점: 1명의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이 4년동안 임기를 이어가기 때문에 업무 지속성이 높음

※ 단점: 구성자치단체장과 겸직하는 단체장의 업무 부담이 높음

- 2년 (2년 단위로 교체)
  - ※ 장점: 구성자치단체장과 겸직하는 단체장의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 ※ 단점: 구성자치단체장이 2년씩 임기를 맡기 때문에 업무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선출방식 관련 대안
  - 겸직
    - ※ 장점: 구성자치단체장이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을 겸직할 경우 지역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 ※ 단점: 겸직하는 구성자치단체장의 업무 부담이 높음
  - 외부인사
    - ※ 장점: 외부인사가 단체장을 맡을 경우 구성자치단체장의 업무 부담이 낮음
    - ※ 단점: 지역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또한 단체장 후보군을 선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높음

〈표 4-30〉 기관구성 설계 대안별 장단점

기관	구분	장점	단점	
의회	임기	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 구성 비용 낮음</li> <li>• 의원들의 이해도가 높고 지속성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겸직 의원들의 부담 높음</li> </ul>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겸직 의원들의 부담 낮음</li> <li>• 순환방식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구성자치단체 의원에게 기회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 구성 비용 증가</li> <li>• 의원들의 이해도가 낮고 지속성 낮음</li> </ul>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균등할 1명 + (대구와 경북 총 인구 약 516만명/인구할100만명) 5명 + 보정인원 1명</li> <li>• 총 8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동일 의원수로 형평성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결정 시 비효율성 가능(지역별 동수 의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균등할 1명 + (대구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결정 시 효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지역이 1명 더 많</li> </ul>

기관	구분	장점	단점	
	경북 총 인구 약 516만명/인구할 100만명) 5명 • 총 7명		아 의결 주도 가능성 (현 263만)	
단체장	임기	4년	• 업무 지속성 높음	• 겸직 시 단체장 부담 높음
		2년	• 겸직 시 단체장 부담 낮음	• 업무 지속성 낮음
	선출 방식	겸직	• 지역 정책 이해 높음	• 겸직 단체장 부담 높음
		외부인사	• 구성 단체장 부담 낮음	• 지역 정책 이해 낮음 • 외부인사 후보군 선정 비용

#### □ 조직체계

- 본 연구에서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계를 다음과 같이 4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검토함
  - 1국 4개 과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국: 총무과, 통합신공항과, **광역교통과, 광역문화관광과**
  - 1국 6개 과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국: 총무과, 통합신공항과, **광역철도과, 광역도로과, 광역문화과, 광역관광과**
  - 1국 5개 과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국: 총무과, 통합신공항과, **광역철도과, 광역도로과, 광역문화관광과**
  - 1실 2국 12개 과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1) **기획실**: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통합신공항정책과, 2) **교통국**: 교통정책과, 버스운영과, 도로과, 철도과, 3) **문화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유산과,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과, 동해안정책과
- 각 대안별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국 4개 과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국: 총무과, 통합신공항과, **광역교통과, 광역문화관광과**
    - 장점: 1개 국 단위 4개 과이기 때문에 통솔 범위가 적정하고, 기능 동질

성이 중간 이상 수준으로 확보됨

- 단점: 광역교통과 내 철도와 도로 관련 업무가 과다함. 또한 광역문화관광과 내 문화와 관광 관련 업무가 과다함
- 1국 6개 과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국: 총무과, 통합신공항과, **광역철도과, 광역도로과, 광역문화과, 광역관광과**
- 장점: 각 기능별로 과가 분화되어 기능 동질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단점: 광역문화과와 광역관광과의 업무는 다른 과에 비해 과소할 가능성이 높음
- 1국 5개 과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국: 총무과, 통합신공항과, **광역철도과, 광역도로과, 광역문화관광과**
- 장점: 1개 국 단위 5개 과이기 때문에 통솔 범위가 적정하고, 1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능별 분화가 이루어져 기능 동질성이 중간 이상임
- 단점: 다른 과에 비해 광역문화관광과의 업무가 과다하여 향후 기능 분리의 필요성이 높음
- 1실 2국 11개 과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1) **기획실**: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통합신공항정책과, 2) **교통국**: 교통정책과, 버스운영과, 도로과, 철도과, 3) **문화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유산과,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과, 동해안정책과
- 장점: 1개 실, 2개 국 12개 과이기 때문에 통솔 범위가 적정하고, 기능 동질성이 중간 이상 수준으로 확보됨
- 단점: 구성 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분리가 불명확함. 또한 실·국 단위 기구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중앙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함. 특히 기구 수 및 통솔 범위로 인해 구성 자치단체 내 조직 재설계가 필요할 수 있음

〈표 4-31〉 조직체계 설계 대안별 장단점

구분	내용	장점	단점
1국 4개 과	총무과, 통합신공항과, 광역교통과, 광역문화관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 동질성 중간 수준 (문화와 관광 결합)</li> <li>• 통솔 적정성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교통 업무 과다 가능</li> <li>• 문화관광 업무 과다 가능</li> </ul>
1국 6개 과	총무과, 통합신공항과, 광역철도과, 광역도로과, 광역문화과, 광역관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 동질성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관광 업무 과소 가능</li> <li>• 통솔 적정성 낮음</li> </ul>
1국 5개 과	총무과, 통합신공항과, 광역철도과, 광역도로과, 광역문화관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 동질성 중간 수준</li> <li>• 통솔 적정성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문화관광 기능 분리 필요</li> </ul>
1실 2국 11개 과	<p>1) <b>기획실:</b>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통합신공항정책과</p> <p>2) <b>교통국:</b> 교통정책과, 버스운영과, 도로과, 철도과</p> <p>3) <b>문화관광국:</b>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유산과,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과, 동해안정책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 동질성 높음</li> <li>• 통솔 적정성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 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 간 분리 불명확</li> <li>• 실·국 기구 수 제한</li> <li>• 구성 자치단체 조직 재설계 가능성</li> </ul>

## □ 재원조달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원은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내 ‘초광역협력사업군’ 지원, 분담금, 국고보조금, 사업수익으로 구성함<sup>10)</sup>
- 재원조달 방안의 경우 조달 현실성과 재원 충분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고, 위의 재원 확보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실 가능한 방향을 모색해야 함

10) 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이후 논의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방안에서는 지방교부세를 통한 지원 역시 검토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이 확정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진행함

〈표 4-32〉 자원조달 설계 요약

구분		제도	내용
재원확보	현행	특별교부세	설립 소요재원 및 시범사업 지원
	신규	균특회계 계정설치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 역협력 사업군' 관리
재원배분	총무비	균등화의 원칙에 따른 동등한 예산분담	
	사업비	인구할(50%), 현재 지방비 분담(50%)	

□ 소결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4-33〉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계 요약

구분		구분		
명칭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대구경북 광역연합	대구 특별지방자치단체	대경 광역연합
사무소 위치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인동시)	대구광역시 광역교통 + 경상북도 광역관광 분리 위치	-
관장사무	협력사무 중심 관장사무	협력사무 + 연관사무 중심 관장사무	4개 기능(통합신공항, 광역교통, 광역관광, 광역문화) 부서 이동	-
기관구성	의회	임기	인원	인원
		4년	2년(교체)	<p>균등할 1명 + (대구와 경북 총 인구 약 516만명/인구할 100만명) 5명 + 보정인원 1명으로 총 8명</p> <p>균등할 1명 + (대구와 경북 총 인구 약 516만명/인구할 100만명) 5명으로 총 7명</p>
조직체계	단체장	임기	신출방식	
		4년	2년(교체)	<p>겸직</p> <p>1국 5개 과 -사무국: 총무과, 통합신공항과, 광역철도과, 광역도로과, 광역문화과, 광역관광과</p> <p>1국 6개 과 -사무국: 총무과, 통합신공항과, 광역철도과, 광역도로과, 광역문화과, 광역관광과</p> <p>1국 4개 과 -사무국: 총무과, 통합신공항과, 광역교통과, 광역문화관광과</p> <p>1국 5개 과 -사무국: 총무과, 통합신공항과, 광역철도과, 광역도로과, 광역문화관광과</p> <p>1실 2국 12개 과 -1) 기획실: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통합신공항정책과 -2) 교통국: 교통정책과, 버스운영과, 도로과, 철도과 -3) 문화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유산과, 관광정책과, 문화유산과, 관광정책과,</p>

구분	구분		관광미케팅과, 동해안정책과
재원조달	<p><b>재원확보 방안</b></p> <p>- 자체수입: 분담금, 사업수입</p> <p>- 지원: 특별교부세, 군특회계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 국고보조금 상향 지원</p>	<p><b>재원배분 방안</b></p> <p>- 총무비: 균등할</p> <p>- 분야별 사업비: 인구할(50%) + 현재 지방비 분담(50%)</p>	

## 제5장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 제1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로드맵
- 제2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전략
- 제3절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제4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정책제언



## 제1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로드맵

## 1.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로드맵

- 대경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기반 및 추진체계 마련) 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준비 및 대구경북 광역행정 기획단을 구성함
  - (광역사업 및 내·외부 환경 조성) 대구경북 광역행정 기획단을 운영하며 대경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준비를 마무리함
  -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통합신공항, 광역교통, 광역관광 등 광역사무를 수행하며, 이외에도 지역 간 협력사업을 추진함

〈표 5-1〉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로드맵

구분	기반 및 추진체계 마련	광역사업 및 내·외부 환경 조성	특별지자체 출범
내용	-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안) 구성	-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안) 운영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준비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운영
세부과제	- 한시기구 승인	-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규약(안) 준비 -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조직체계 구성	- 광역사업 추진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세부 추진 로드맵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추진체계 구성·운영의 경우 기반 및 추진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 2022년 1월 이후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구경북 한뿌리상생위원회 산하 사무국을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으로 통합함
  -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은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이후 특별 지자체 내 사무국으로 전환함
  - 둘째, 특별지방자치단체 준비·설립·운영의 경우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이 수행주체가 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내용을 토대로 규약안을 제정하여 승인받음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이후에는 특별지자체가 통합신공항, 교통, 관광 등 핵심분야에 대한 광역사업을 추진함
  - 기존의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은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내 사무국으로 전환함

〈그림 5-1〉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세부 추진 로드맵

구분	기반 및 추진체계 마련	광역사업 및 내·외부 환경 조성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시기	21년 6월	22년 1월 ~	22년 중반기
추진체계 구성·운영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화단 구성·운영 : 대구경북 한부리상생위원회 시무국 통합	대구경북 특별자치체 내 시무국으로 전환
세부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안부 한시기구 승인</li> </ul>	
특별지방자치단체 준비·설립·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협력사업 추진</li> <li>• 특별자치체 출범 준비: 규약안 제정 및 승인</li> </ul>	대구경북 특별자치체 내 시무국으로 전환
세부과제	대구경북 특별자치체 설치방안 연구	광역안 제정 및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신공항, 교통, 관광 분야 광역사업 추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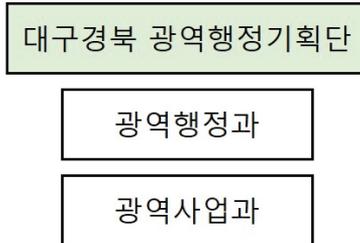
## 2. 세부 추진 로드맵 실행전략

### 1) 추진체계 구성·운영

#### □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 구성·운영

-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대구경북의 협력사업을 추진함
  - 행정안전부로부터 한시기구 승인을 받아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을 구성하고, 대구경북 한뿌리상생위원회의 사무국을 편입함
  -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 추진을 위한 기구·인력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받음<sup>11)</sup>
  - 추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시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은 특별지자체 내 사무국으로 전환함

〈그림 5-2〉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 조직체계



-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함
  - 기존 대구경북 한뿌리상생위원회의 사무국의 협력사업을 추진함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준비를 위해 규약안을 제정하여 승인을 준비함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을 준비함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직체계를 구성함
-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은 대구와 경북의 의회 중 빠른 시일 내에 회의 소

11) 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내 포함

집이 가능한 의회에서 조례로서 통과하여 시행함

- 동남권의 경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하여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준비함
- 부산·울산·경남 중 의회가 가장 빨리 열리는 부산광역시 의회에서 추진단 설립을 조례로 통과시켜, 현재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산하 한시기구로 존재함

## 2)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준비·설립·운영

### □ 규약(안) 제정 및 승인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해 규약(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준비함
  - 특별지자체 규약(안)을 마련한 후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따라서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을 마련한 후 대구광역시 의회와 경상북도 의회에 각각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표 5-2〉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규정

관련 조항	법률 내용	조항
제2조 제3-4항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제1항	특별지방자치단체 법적 지위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제199조 제1항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제199조(설치)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별지자체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 199조에 의해 목적, 명칭, 구성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사무소 위치, 사무,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을 담아야 함
- 구체적인 규약사항은 아래의 <표 5-3>과 같음

**<표 5-3>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사항 및 근거법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규약사항
관련조항	법률내용	
제12장 제199조- 제2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li> <li>• 설치권고</li> <li>• 구역</li> <li>• 규약 등</li> <li>• 기본계획 등</li> <li>• 의회의 조직 등</li> <li>• 집행기관의 조직 등</li> <li>• 경비의 부담</li> <li>• 직접청구</li> <li>• 사무처리상황 등의 통지</li> <li>• 가입 및 탈퇴</li> <li>• 해산</li> <li>•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li> <li>• 다른 법률과의 관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li> <li>•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li> <li>• 구성 지방자치단체</li> <li>•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li> <li>•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위치</li> <li>•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li> <li>•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li> <li>•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임방법</li> <li>•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방법</li> <li>•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li> <li>•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개시일</li> <li>•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li> </ul>

자료: 금창호 외., 2021: 17; 연구자 재구성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5-4〉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

## 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99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상호협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적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이하 “특별지방자치단체”라 한다)라 한다.

**제3조(구성 및 관할구역)**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구성원(이하“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원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전체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는 ○○○ 관내에 둔다.

### 제2장 사무

**제5조(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공항 건설 등 항공공항 연관사무
2. 광역철도, 광역도로, 광역환승제 등 광역교통 연관사무
3. 문화, 관광, 홍보마케팅 등 연계·협력 사무

4. 기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제①항의 사무 이외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국가사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 제3장 의회

**제7조(구성 및 자격)** ①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회를 둔다.

②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인으로 구성하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4조 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의회와 경상북도 의회 의원 각 4인으로 한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의원을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즉시 새로운 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의장 및 부의장)**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선출하여 윤번제로 하며, 그 임기는 ○○○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궐위 또는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보궐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의결사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의 개정안
2.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특별지방자치단체 장의 선임
4. 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의 승인
5. 결산검사를 위한 감사위원의 선임
6.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을 요하는 주요 사항
7. 그 밖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서 의회의 심의·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4/4분기 중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회는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정족수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회가 심의·의결할 안건이 1개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관계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2분의 1 이상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행정사무감사)** ①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는 매년 1회(10월 중)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는 5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의회사무기구 등의 설치)** ①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사무기구에는 직원을 둔다.

② 사무직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 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제4장 집행기관

**제14조(단체장)**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에는 단체장을 두며,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되,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③ 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총괄한다.

**제15조(사무기구)**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직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기구와 정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5장 재무

**제16조(경비부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으로 부담한다.

② 부담금의 비율은 ○○○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경비에 대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국가가 위임한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예산·회계 등)** ① 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② 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재무회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결산)** ① 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장 가입·탈퇴 및 해산

**제19조(가입 및 탈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입 또는 탈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또는 탈퇴의 신청을 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입하거나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는 법 제199조를 준용한다.

**제20조(해산)** ① 법 제209조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하여야 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그 재산을 처분하고 사무와 직원의 재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시·도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재산의 처분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유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무회계 및 물품관리 관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며, 필요시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의한다.

**기타**

**제22조(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리 개시일)** 이 규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이후에는 통합신공항, 광역교통, 광역관광 분야에서 광역사업을 추진함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설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5-5〉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계(안)

구분		구분		
명칭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대구경북 광역연합	대구 특별지방자치단체	대구 광역연합
사무소 위치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안동시)	대구광역시 광역교통 + 경상북도 광역관광 분리 위치	-
관장사무	협력사무 중심 관장사무	협력사무 + 연관사무 중심 관장사무(연구진 검토인)	협력사무 + 연관사무 중심 관장사무(부서장 검토인)	4개 기능(통합신공항, 광역교통, 광역관광, 광역문화) 부서 이동
기관구성	의회	임기	인원	
		4년	2년(교체)	<p>관등할 1명 + (대구와 경북 총 인구 약 516만명/인구할 100만명) 5명 + 보장인원 1명으로 총 8명</p> <p>관등할 1명 + (대구와 경북 총 인구 약 516만명/인구할 100만명) 5명으로 총 7명</p>
조직체계	단체장	임기	선출방식	
		4년	2년(교체)	<p>겸직</p> <p>1국 5개 과 -사무국: 총무과, 통합신공항과, 광역철도과, 광역도로과, 광역문화관광과</p> <p>1국 6개 과 -사무국: 총무과, 통합신공항과, 광역철도과, 광역도로과, 광역문화관광과</p> <p>1국 4개 과 -사무국: 총무과, 통합신공항과, 광역교통과, 광역문화관광과</p> <p>1국 2국 12개 과 -1) 기획실: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통합신공항정책과 2) 교통국: 교통정책과, 버스운영과, 도로과, 철도과</p>

구분		구분	
구분			3) 문화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유산과,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과, 동해안정책과
재원조달	재원확보 방안		재원배분 방안
	- 자체수입: 분담금, 사업수입 - 지원: 특별교부세, 군특회계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 국고보조금 상향 지원		- 총무비: 균등할 - 분야별 사업비: 인구할(50%) + 현재 지방비 분담(50%)

## 제2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전략

### 1. 특별지방자치단체 설계변수별 실행방안

#### 1) 관장사무

##### □ 관장사무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 교통, 관광 등 대구와 경북이 추진하던 협력과제 및 연관사무로 구성된 관장사무 대안 중 결정함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자치단체의 합의 하에 중장기적으로 관장사무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음
  - 간사이 광역연합 사례에서는 설립 당시에 비해 운영 과정에서 새롭게 관장사무가 추가됨
  - 대표적인 사무로는 광역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스포츠진흥업무가 추가되었고, 광역산업진흥 분야에서 농수산 관련 사무가 추가됨(금창호 외., 2021)
  - 향후 관장기능이 확대될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능 이관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국가위임사무

-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연구에서는 국가로부터 광역교통 관련 사무를 위임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힘
  - 광역교통 관련 사무는 크게 5가지로, 1)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심의, 3) 시계의 버스노선, 광역버스 관련 협의·인가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운영, 5) 간선급행버스체계개발계획의 수립임
  - 해당사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간선급행버스법」 등을 근거법으로 하여,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음

〈표 5-6〉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국가위임사무 중 광역교통 관련 사무

구분	사무	근거법령	내용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 위임 요청사무의 현재 사무수행 주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위임 요청 사유: 자치단체의 권한 및 자율성 확대,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 사업 추진 가능
광역교통시설투자금 사용계획 심의	광역교통시설투자금 사용계획 심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 3	- 위임 요청사무의 현재 사무수행 주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위임 요청 사유: 자치단체의 권한 및 자율성 확대,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 사업 추진 가능
시계의 버스노선, 광역버스 관련 협의·인가에 관한 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제5조(협의·조정신청 등)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시명령을 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및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1. 23., 2014. 7. 29.>	- 위임요청사유: 인접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상충 및 조율 필요

구분	사무	근거법령	내용
		<p>1.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p> <p>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직행 좌석형·좌석형·일반형 상호 간 운행형태의 전환</p> <p>나. 관할 시·도 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변경(불이상의 시·도지사가 공동배차 하는 노선은 제외한다)</p> <p>다. 다른 시·도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도로·다리의 개설·확충 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운행경로의 변경으로 거리가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라. 제3항에 따른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그 대책에 따른 사항</p> <p>2.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p> <p>가. 관할 시·도 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단축이나 운행경로의 변경(관계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다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해당 운행계통을 운행하고 있거나 운행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노선을 신설하거나 연장함으로써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에 기점 또는 종점이 있게 되는 경우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기점 또는 종점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다.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일반형에서 직행형으로 또는 직행형에서 고속형으로 전환</p>	

구분	사유	근거법령	내용
		<p>대중교통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운영</p>	<p>라. 운행형태가 직행형·일반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 변경(관할 시·도 구역 밖으로 운행계통이 걸쳐 있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의 변경은 제외한다)</p>
	<p>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p>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p>	<p>- 위임요청사유: 지자체 간 협업체 외거 환승기준 및 교통카드시스템 개선 가능 필요</p>
	<p>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수립</p>	<p>제5조(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종합계획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체계건설사업별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의 체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위임 요청사유의 현재 사무수행 주체: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 위임요청사유: 광역버스 및 2개 이상의 지자체를 연결하는 BRT를 신설할 경우 지자체 간 협의 필요</p>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장사무 중 국가로부터 위임받을 사무는 광역교통 분야이며, 구체적인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해당 사무의 경우 대부분 지역여건을 반영하거나, 일반복합 환승센터 구축 운영 관련한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인 현황을 고려하여 국가로부터 위임이 필요함
  - 해당사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8조 제 2항에 근거하여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음

〈표 5-7〉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 중 국가위임사무

구분	사무	수행 주체	근거법
광역 교통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 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 3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시계외 버스노선, 광역버스 관련 협의·인가에 관한 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대중교통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운영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수립		「간선급행버스법」 제5조 제1항

#### □ 추후 관장사무 관련 추가 연구 필요

-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7대 분야 31개 사무 62개 사업을 발굴·정리함
  - 관장사무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후 수행할 초광역협력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별 사업현황 조사·분석, 실무부서 간 회의·조정 과정을 필요로 함
  - 따라서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역시 출범 후 수행하고자 하는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관련 정밀한 준비를 위해 별도의 연구과제를 발주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때,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관련 조례 개정 작업과 연계하여 긴밀히 추진해야 함

## 2) 기관구성

### □ 의회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구성원은 앞서 언급했던 대안들 중 각 지역별 정수 또는 1명의 보정인원을 고려한 수로 선출함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원 선출 방식은 각 구성 자치단체별 의회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간접선거로 선출함
  - 대구경북 광역행정 기획단이 구성된 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전에 대구와 경북 지역별로 의회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을 선출함
  - 추후 이렇게 구성된 의원들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함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원 임기가 4년일 경우 위와 같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전에 1회 구성하면 되나, 임기가 2년일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후 2년이 경과하기 전 90일 사이에 각 구성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의원을 선출함. 이때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함

### □ 단체장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안은 크게 구성 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겸직하거나 외부인사 중 선출하는 방안임
  - 두 가지 방안 모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구성되면 의원들이 선출함
  - 다만, 외부인사 중에서 단체장을 선출하는 경우 후보 등록 이후 의회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에 관한 공약을 제출할 필요가 있음
    - 외부인사 후보군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노력이 필요함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의 임기는 2년 또는 4년으로 함

- 2년: 구성 자치단체의 장 중 선출할 경우, 각 구성 자치단체의 장이 2년씩 임기를 맡고, 순번만을 정하면 됨. 이에 비해 외부인사 중 선출할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후 2년이 경과하기 전 90일 사이에 한 차례 더 선출해야 함
- 4년: 구성 자치단체의 장 또는 외부인사 중 선출할 때 모두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가 구성된 후 의원들이 선출함

### 3) 조직체계

#### □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해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을 설립하여 운영함
- 추후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이후 사무국으로 전환함

#### □ 조직체계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검토함
  - 1국 4개 과
  - 1국 6개 과
  - 1국 5개 과
  - 1실 2국 12개 과
- 조직체계(안)을 마련한 후 각 구성 자치단체에서 파견할 인력과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새롭게 배정할 인력을 마련함
  -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력을 60%, 파견인력을 40%로 구성함
- 중앙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준비

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조정 시 지역현안수요 및 국가정책수요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인력을 고려할 수 있음

○ 조직체계(안)이 마련되면,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이후 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확정함

-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에 따라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음
- 또한 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 3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함
- 따라서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내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과 3항에 따라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고 본회의에서 위원을 선임함

## □ 기구설치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를 위해서 기구설치 기준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인구규모에 따라 시도 본청의 기구(실·국) 규모의 범위가 제한됨
- 현재 대구와 경북 본청의 기구(실·국) 규모는 각각 11-13개, 10-12개이며 현재 해당 규모를 모두 충족하고 있음
- 추후 중앙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필요로 하는 실·국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표 5-8〉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구분		실·국·본부 수
서울특별시		16-18개
광역시	인구 350만 이상 400만 미만	14-16개
	인구 300만 이상 350만 미만	13-15개
	인구 250만 이상 300만 미만	12-14개
	인구 200만 이상 250만 미만	11-13개
	인구 200만 미만	10-12개
세종특별자치시		6-8개
도	경기도	20-22개
	인구 300만 이상 400만 미만	11-13개
	인구 200만 이상 300만 미만	10-12개
	인구 100만 이상 200만 미만	9-11개

#### □ 정원검토

- 정원검토를 위해 크게 3단계에 걸쳐 인력 규모를 추산함
- 1단계, 하향식 방법으로 관장사무의 규모를 고려하여 인력 규모를 추산함
  - 관장사무의 경우 구성 자치단체에서 이관하는 사무와 국가위임사무로 구성됨
  - 구성 자치단체 이관사무의 경우,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함께 이동하고, 국가위임사무의 경우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기관 내 인력과 동일한 규모로 추산함
- 2단계, 상향식 방법으로 구성 자치단체에서 파견 가능한 인력 규모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인력 규모를 합산함
  - 1단계에서 구성 자치단체 이관사무를 담당하던 인력의 경우 담당인력별 실질업무를 고려하여 추산함
    - 1명의 담당자가 여러 가지의 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인력 추산 시 인력/사무로 산출 필요
    - 예를 들어 구성 자치단체 이관사무 중 A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A 사

- 무 말고도 2가지의 사무를 할 때 인력은  $1/3=0.33$ 으로 산출함
- 앞서 조직체계 부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조정 결과를 반영함
- 3단계, 1단계와 2단계 간 조정을 통해 최종 인력 규모를 확정하고, 부서별 인력을 배치함
  - 부서별 인력의 경우 관장사무를 담당하던 구성 자치단체의 인력 수준을 고려하여 배치함
  - 예를 들어 구성 자치단체 이관사무 중 광역도로 건설을 2명의 인력이 담당했다면, 특별지방자치단체 내 부서에서도 동일 사무에 대해 2명의 인력을 배치함

#### 4) 재원조달

##### □ 재원구성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크게 자체수입과 중앙의 지원으로 구성됨
  - 자체수입은 분담금과 사업수입이며, 중앙의 지원은 큰 틀에서 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내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짐

##### □ 중앙의 지원

- 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따르면, 권역별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함
  - 구체적으로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을 신설하여 지원함
  -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소요재원 및 시범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분권협약을 통해 국가사무를 적극적으로 위임하여 사무에 해당하는 재원도 함께 위임됨
  - 이외에도 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이후 논의되고 있는 특별

-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방안에서는 지방교부세를 통한 지원 역시 검토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지역에 재정, 사업, 규제, 세제 등 지원 특례를 맞춤형으로 설계함
- 따라서 중앙의 지원은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 국고 보조금 상향 지원, 각종 지원 특례라 할 수 있음

#### □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대부분 구성 자치단체의 분담금으로 구성됨
- 따라서 각 구성 자치단체별로 분담금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함
- 앞서 재원배분 방안으로 총무비는 균등할, 분야별 사업비는 인구할 50%와 현재 지방비 분담 50%로 구성함
  - 예를 들어 광역교통 분야 사업비가 100억원 소요된다면, 50억원은 각 구성 자치단체별 인구에 따라 비례하여 분담하며, 나머지 50억원은 각 구성 자치단체별 지방비로 분담함
  - 대구경북 광역행정 기획단이 구성되면, 관장사무별 사업비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 분담금 소요규모를 추산해야 함

### 제3절    관련 제도 개선방안

#### 1. 관계법령 개정방향

##### □ 재원확보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사항

- 현재 발표된 중앙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내 균특회계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 계정 설치, 특별교부세 지원, 국고보조금 상향 지원 등은 현재 법률 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임
  - 균특회계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 계정은 지역지원계정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상에서도 지역지원계정에 포함되는 세부 항목은 적시되지 않아 별도의 법령 개정은 필요하지 않음
  - 특별교부세를 통한 지원 역시 「지방교부세법」 제3조에 지방교부세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고, 제9조 제1항의 3호에 시책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해당 법률 내에서 운용 가능함. 다만 동법 시행령 제9조의 2항 1호에 초광역협력 관련 항목이 포함되면 더욱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임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시 기구·인력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내에 별도의 명시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항에 따르면 시·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사항이 규정됨. 따라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별도의 특례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표 5-9〉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관계법령

구분	관계법령	현 조항
균특회계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 계정 설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2조	제32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특별교부세 지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9조의 2항 1호	제9조의2(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안정, 지방행정기능 강화, 국가적 행사 관련 시책,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또는 그 밖의 주요 시책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기구·인력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	제9조의2(시·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① 시·도는 별표 1에 따른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국·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는 제1항에 따라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삭제 또는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그 설치 내용,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조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2. 관련조례 개정

### □ 대구경북 조례 현황

- 대구광역시 조례는 크게 2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89개임
  - 대구광역시 조례는 크게 편,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별로 편재됨

〈표 5-10〉 대구광역시 조례 구성

편	조례 수
제1편 의회	42
제2편 대변인	1
제3편 홍보브랜드	6
제4편 경제산업분석	2
제5편 감사	19
제6편 기획조정	102
제7편 시민안전	35
제8편 경제	52
제9편 일자리투자	36
제10편 혁신성장	19
제11편 도시재창조	57
제12편 미래공간개발본부	2
제13편 통합신공항추진	2
제14편 자치행정	129
제15편 복지	56
제16편 시민건강	32
제17편 여성청소년교육	62
제18편 문화체육관광	68
제19편 녹색환경	57
제20편 교통	56
제21편 소방안전	29
제22편 공무원교육	6
제23편 보건환경연구	2
제24편 농업기술	3
제25편 상수도사업	14
<b>총계</b>	<b>889</b>

- 경상북도 조례는 크게 2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61개임
- 경상북도 조례는 조직별로 편제되어 있으며, 각 조직별로 분야를 나누어 조례를 구성함

〈표 5-11〉 경상북도 조례 구성

편	조례 수
대변인	6
감사관	22
미래전략기획단	7
통합신공항추진단	1
투자유치실	5
청년정책관	4
기획조정실	100
재난안전실	44
일자리경제실	82
과학산업국	22
아이여성행복국	39
자치행정국	145
문화관광체육국	72
농축산유통국	65
환경산림자원국	61
복지건강국	86
건설도시국	67
소방본부	33
직속기관	18
환동해지역본부	49
사업소	9
자치경찰위원회	1
의회	23
<b>총합계</b>	<b>961</b>

□ 특별지방자치단체 연관성 검토

- 위의 지역별 조례들을 대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운영 시 연관되는 조례들을 검토함
  - 연관성 검토는 실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운영 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조례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향후 운영 시에 검토가 필요한 조례로 구분하여 판단함
- 대구광역시 조례 중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조례는 총 76개로 판단됨

〈표 5-12〉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조례명-대구

구분	조례명
제6편 기획조정	대구광역시 대구경북 한부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대구광역시 사무전결 규칙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사무분장 규정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재정보전금 배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편 시민안전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11편 도시재창조	대구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구분	조례명
제13편 통합신공항추진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제14편 자치행정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대구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대구광역시 공무원직근로자 관리 규정
	대구광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대구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정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대구광역시 인사관리 규정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	
제18편 문화체육관광	대구광역시 문화바우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대구광역시 예술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지역 문화유산 등 낙뢰피해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지원 등에 관한 규정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구분	조례명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대구광역시 대구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관광자문단운영규정
제20편 교통	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대구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대구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 규칙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시행규칙
<b>총계</b>	<b>76</b>

○ 대구광역시 조례 중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향후 운영 시에 검토가 필요한 조례는 총 57개임

〈표 5-13〉 향후 운영 시 검토 필요 조례명-대구

구분	조례명
제1편 의회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구분	조례명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대구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대구광역시의회공인조례
	대구광역시 의회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대구광역시 의회 청원심사 규칙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대구광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대구광역시 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규정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위임전결 규정
	대구광역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대구광역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대구광역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제3편 홍보브랜드
대구광역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에 관한 규정	
대구광역시 홍보자문단 운영 규정	
대구광역시공보발행규정	
제5편 감사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옹호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대구광역시 일상감사 규정
제6편 기획조정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법제업무 운영 규칙

구분	조례명
제10편 혁신성장	대구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대구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1편 도시재창조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업무처리 지침
	대구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제14편 자치행정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시행규칙
아간·공휴일민원처리지침	
제18편 문화체육관광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b>총계</b>	<b>57</b>

○ 경상북도 조례 중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조례는 총 88개로 판단됨

〈표 5-14〉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조례명-경북

구분	조례명
통합신공항추진단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기획조정실	경상북도 경북대구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규칙

구분	조례명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경상북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배정 및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경상북도 공무원근로사 및 청원경찰 정수관리규정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중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인력 관리규정
	경상북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경상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경상북도 수입증지 조례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경상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자리경제실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경상북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감독규정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국	경상북도 공인조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경상북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경상북도 공인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근무규칙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경상북도 시·군공무원인사사무처리규정
	경상북도 인사관리규정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경상북도 물품관리조례
	경상북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구분	조례명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경상북도 물품조달규정
문화관광체육국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도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문화재 명예관리인 임명규정
	경상북도 문화재기술위원회운영규정
	문화재 지정신청요령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
	경상북도 관광홍보관설치및운영조례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건설도시국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구분	조례명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환동해지역본부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
	경상북도 독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의회	경상북도 의회공인조례
총계	88

○ 경상북도 조례 중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향후 운영 시에 검토가 필요한 조례는 총 26개임

〈표 5-15〉 향후 운영 시 검토 필요 조례명-경북

구분	조례명
대변인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감사관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
	경상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기획조정실	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규정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의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구분	조례명
	경상북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의회 회의운영 조례
	경상북도 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경상북도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의회 회의규칙
	경상북도 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경상북도 의회청원심사규칙
	경상북도 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b>총계</b>	<b>26</b>

## 제4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정책제언

### 1. 중앙정부의 지원방안

#### □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실행

- 중앙정부는 지난 10월 14일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운영 등 초광역협력 방안을 지원하기로 약속함
  - 정부의 지원전략은 크게 제도·행정·재정적 기반,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 국토교통·산업·인재양성 지원의 세 가지 틀로 구성됨
  - 각 지원 방안마다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명시함

〈표 5-16〉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구분	내용	세부내용
제도·행정·재정적 기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 발전계획 등 명시	
	예산 전 주기 재정지원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 조정</li> <li>•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사업군’</li> <li>• 초광역사업평가체계 및 결과-예산 연계</li> </ul>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가칭)’ 신설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시 특별교부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요재원 및 시범사업 특별교부세 지원 / 가구인력 보강</li> <li>• 분권협약을 통한 적극 위임 / ‘초광역특별협약’ 도입</li> </ul>
국토교통·산업·인재양성 지원	광역자치단체 간 자율적 행정통합 TF 구성	
	단일의 경제·생활권 조성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교통망 조성: 광역철도, 광역 BRT 및 환승센터, 광역도로</li> <li>• 소외지역 맞춤형 교통체계</li> <li>• 광역교통 중심지 인재-자본-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지역 거점 육성</li> </ul>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광역권 단위의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범부처종합 지원체계 마련</li> <li>• 초광역 단위의 산업기반 구축 및 기술인력 양성체계 도입/산업거점과 혁신거점 간 연계 강화</li> </ul>

구분	내용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투자촉진법」 제정 검토</li> </ul>
	초광역형 인재양성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 수립 /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도입</li> <li>• 지역혁신플랫폼을 초광역형으로 단계적 전환</li> <li>• 범부처 초광역 인재양성 협업 거버넌스 구축</li> </ul>

- 이러한 지원방안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무·인력·재정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추후 구체화 작업을 통해 지원방안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음
  - 우선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분야에서는 국가위임사무의 이양 절차를 명시하여 현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는 지역에 일괄적으로 사무 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 인력 분야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기획단(안) 등을 추진하는 지역에 한시기구 승인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추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시 기구·인력의 지원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는 실제 지역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계를 미리 준비하는 데에서 필수적임
  -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야에서는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사업군’ 지원과 특별교부세 지원의 범위를 명시하여 실제 관장사무 수행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는 구성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초광역협력을 이룰 수 있는 필수 전략요인임

## 2. 지속적인 중앙-특별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틀 마련

###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준비 단계 협력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광역행정기획단(안)을 구성·운영할 때 중앙

정부와의 협의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광역행정기획단(안) 내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는 방안으로서 구성 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논의하는 틀을 필요로 함
- 이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구체화하는 틀로서도 유효하다고 판단됨

#### □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단계 협력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행정대응체제의 일환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야 할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함
  - 향후 「지방이양일괄법」 추진과정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중앙으로부터 위임받을 권한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의 사무 위임 논의를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내 ‘초광역특별협약’의 경우 이를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틀을 마련하여, 내부에서 위임사무를 결정하여 적극적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 범위를 확장할 때에도 이 틀을 활용하여 논의할 수 있음



## 1. 국내문헌

- 강수철 외(2013). 교통사고 조사관의 적정 사고처리 건수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3(3), 143-162.
- 강인호(2019).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촉진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용 방안. 국토, 20-25.
- 국토연구원(2020). “인구의 지역별 격차와 불균형”, 「균형발전 모니터링&이슈 브리프」 제1호.
- 금창호(2018a).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
- 금창호(2018b). 광역연합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 금창호 외(2005).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 방안. 한국행정학회.
- 금창호 외(2021).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
- 김길수(2008). 광역행정 實效化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 자치행정학보, 22(2), 425-445.
- 김병국 외(2013). 통합청주시 4개 구 구역획정 및 청사 위치선정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예성·하혜영(2021). 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김현호(2019). 포용적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구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 권오혁(2002). 도청 이전의 당위성과 대상지 선정의 기준. 「지방포럼」, 1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2021).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세입구조 분석: 미국과 독일 사례. 분권레터.

- 문태현(1997). 공공기관 후보지 결정과정의 성공요인 분석: 경북도청과 충남도청 이전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7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박관규·주윤창(2021).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재정구조 분석: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사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박재희 외(2021).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정책연구. 행정안전부 수탁과제.
- 박종화 외(2018). 도시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 부울경(2021).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부문별계획 최종보고서.
- 신원부 외(2019). 기록물관리기관 소요 인력 산출 기준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62), 77-107.
- 안권국(2021.05.27.). 동남권광역연합 추진경험과 향후 과제: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광역연합모형의 제안배경을 중심으로 [발표자료]. 광역지자체간 상생협력 활성화 세미나,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 이광형 외(2016). 미래전략 뉴노멀 시대의 성장전략.
- 이정석(2019). 부울경 광역권 형성 촉진방안: 광역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현안연구, 부산연구원.
- 조성호 외(2020).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경기연구원.
- 조성호(2019). 수도권 광역행정청 설립방안 연구. 정책연구 2019-10, 경기연구원.
- 주재복·우병창(2017).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에 관한 특별법(안) 마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 최용환(2019). 특별광역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충청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99-522.
- 최환용(2021.04.26.). 일본의 특별지방공공단체 광역연합에 대한 검토: 칸사이광역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자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자치분권 확대 방안(일본 사례) 전문가 자문회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하혜수 외(2008). 재정력이 낮은 지방정부의 전략적 재원확보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울릉군 사례. 한국행정논집, 20(2), 469-500.
- 한국정책평가연구원(2012).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복지지원체계 연구용역 최종보

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06.09.).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발표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재우 외(2021).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경남연구원/부산연구원/울산연구원.

## 2. 해외문헌

Die Bundesregierung. (2020.03.18.) Mehr Mittel für attraktiven Nahverkehr.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regionalisierungsmittel-1688876>

Humes, S., & Martin, E. (1969). Th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The Hague,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

Ministerium für Verkehr Baden-Württemberg & Verband Region Stuttgart. (2021.04.08.). Mehr Zuschüsse für mehr S-Bahnen und besseres Angebot für die Fahrgäste. <https://www.region-stuttgart.org/index.php?eID=dumpFile&t=f&f=9262&token=ed9ab88f954af34fb0599829cd96c33aa3f483f0>

## 3. 기타

### [홈페이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n.d.a). 인사말.

[https://www.gfez.go.kr/kor/sub05\\_0201.do](https://www.gfez.go.kr/kor/sub05_0201.do)

\_\_\_\_\_. (n.d.b). 조직도.

[https://www.gfez.go.kr/kor/sub05\\_020601.do](https://www.gfez.go.kr/kor/sub05_020601.do)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n.d.a). BJFEZ 개념.

<https://www.bjfez.go.kr/00212/00214/00228.web>

\_\_\_\_\_. (n.d.b). 조직안내.

<https://www.bjfez.go.kr/00212/00215.web>

関西広域連合. (n.d.a.). 広域連合委員会について.

<https://www.kouiki-kansai.jp/koikirengo/rengoiinkai/238.html>

\_\_\_\_\_. (n.d.b.). 組織圖.

<https://www.kouiki-kansai.jp/koikirengo/koikirengo/soshiki/152.html>

### [법령]

공직선거법 (타법개정안) 제22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0조 제2항, 제43조 제1항, 제109조, 제202조, 제204조, 제205조, 제206조

지방교부세법 제1조, 제2조, 제3조

Gesetz über die Errichtung des Verbands Region Stuttgart [GVRS] (2020. 12.17.) ([https://www.landesrecht-bw.de/jportal/portal/t/1b28/page/bsbawueprod.psml?pid=Dokumentanzeige&showdoccase=1&js\\_pid=Trefferliste&documentnumber=1&numberofresults=1&fromdocctodoc=yes&doc.id=jlr-RegStuttgGBWrahmen&doc.part=X&doc.price=0.0#focuspoint](https://www.landesrecht-bw.de/jportal/portal/t/1b28/page/bsbawueprod.psml?pid=Dokumentanzeige&showdoccase=1&js_pid=Trefferliste&documentnumber=1&numberofresults=1&fromdocctodoc=yes&doc.id=jlr-RegStuttgGBWrahmen&doc.part=X&doc.price=0.0#focuspoint))

Gesetz zur Regionalisierung des öffentlichen Personennahverkehrs [Regionalisierungsgesetz, RegG] (2021.07.16.) (<http://www.gesetze-im-internet.de/regg/BJNR239500993.html>)

Landesplanungsgesetz [LplG] (2018.11.28.) (<https://www.landesrecht-bw.de/jportal/?quelle=jlink&query=LPlG+BW&psml=bsbawueprod.psml&max=true&aiz=true>)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17.07.13.) (세계법제정보센터 국문번역본,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CTS\\_SEQ=37924&AST\\_SEQ=1145&ETC=1](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CTS_SEQ=37924&AST_SEQ=1145&ETC=1))

関西広域連合規約 第8条, 第9条 (2010.12.01.)

([https://www1.g-reiki.net/kouiki-kansai/reiki\\_honbun/u188RG0000001.html#e000000376](https://www1.g-reiki.net/kouiki-kansai/reiki_honbun/u188RG0000001.html#e000000376))



## 부록: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 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99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상호협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적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이하 “특별지방자치단체”라 한다)라 한다.

**제3조(구성 및 관할구역)**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구성원(이하“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원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전체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는 ○○○ 관내에 둔다.

#### 제2장 사무

**제5조(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공항 건설 등 항공공항 연관사무
2. 광역철도, 광역도로, 광역환승제 등 광역교통 연관사무
3. 문화, 관광, 홍보마케팅 등 연계·협력 사무
4. 기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

- ② 제①항의 사무 이외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국가사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

### 제3장 의회

**제7조(구성 및 자격)** ①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회를 둔다.

- ②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인으로 구성하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4조 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의회와 경상북도 의회 의원 각 4인으로 한다.
- ③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의원을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즉시 새로운 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의장 및 부의장)**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선출하여 윤번제로 하며, 그 임기는 ○○○년으로 한다.

-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결위 또는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보궐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의결사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의 개정안
2.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특별지방자치단체 장의 선임
4. 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의 승인
5. 결산검사를 위한 감사위원의 선임
6.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을 요하는 주요 사항
7. 그 밖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서 의회의 심의·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4/4분기 중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회는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정족수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회가 심의·의결할 안건이 1개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관계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2분의 1 이상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행정사무감사)** ①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는 매년 1회(10월 중)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는 5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의회사무기구 등의 설치)** ①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사무기구에는 직원을 둔다.
- ② 사무직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 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제4장 집행기관

- 제14조(단체장)**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에는 단체장을 두며, 임기는 〇〇〇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되,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직 할 수 있다.
- ③ 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총괄한다.

- 제15조(사무기구)**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둔다.
- ② 사무직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기구와 정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5장 재무

- 제16조(경비부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〇〇〇으로 충당한다.
- ② 분담금의 비율은 〇〇〇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 ③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경비에 대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④ 국가가 위임한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17조(예산·회계 등)** ① 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심의·확

정하여야 한다.

- ② 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재무회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결산)** ① 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장 가입·탈퇴 및 해산

**제19조(가입 및 탈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입 또는 탈퇴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또는 탈퇴의 신청을 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입하거나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는 법 제199조를 준용한다.

**제20조(해산)** ① 법 제209조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하여야 한다.

-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그 재산을 처분하고 사무와 직원의 재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

는 시·도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  
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재산의 처분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유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무회  
계 및 물품관리 관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며, 필요시 구성 지  
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의한다.

### 기타

**제22조(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리 개시일)** 이 규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